



전라남도 도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제 2021-33호 2021년 8월 5일 (목)

발행 : 전라남도 / 편집 : 대변인실
홈페이지 www.jeonnam.go.kr



목 차

◆ 고 시

- 전라남도 고시 제2021-353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 전라남도 고시 제2021-354호 나무병원 등록 고시
- 전라남도 고시 제2021-355호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 승인 고시
- 전라남도 고시 제2021-356호 하천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전라남도 고시 제2021-357호 하천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고시
- 전라남도 고시 제2021-358호 하천의 지정 및 변경 고시
- 전라남도 고시 제2021-359호 공공하수도 설치 인가 고시
- 전라남도 고시 제2021-362호 지방하천 정비사업 준공 고시
- 전라남도 고시 제2021-363호 지방하천(통안천) 하천재해예방사업 시행계획(변경) 고시
- 전라남도 고시 제2021-364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인가 고시
- 전라남도 고시 제2021-365호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사업계획 변경 고시
- 전라남도 고시 제2021-366호 전라남도 지정문화재 지정 고시
- 전라남도 고시 제2021-367호 비관리청 향만공사 시행허가 고시

◆ 공 고

- 전라남도 공고 제2021-773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 등록 공고
- 전라남도 공고 제2021-789호 건설기술엔지니어링업 등록 공고
- 전라남도 공고 제2021-791호 도시가스 공급규정 개정 공고
- 전라남도 공고 제2021-792호 2021년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 조정 공고
- 전라남도 공고 제2021-796호 「전라남도 지식정보문화 기업유치 보조금 지원사업 시행지침」 개정에 따른 행정예고 공고
- 전라남도 공고 제2021-798호 발굴 매장문화재 소유자 유·무 확인 공고

◆ 시군행정

- 목포시 고시 제2021-131호 목포 도시계획시설(주차장 34호)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순천시 고시 제2021-158호 순천 도시계획시설(유수지)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 순천시 공고 제2021-1791호 순천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완료 공고

광양시 고시 제2021-300호	광양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사항과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광양시 고시 제2021-304호	광양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제101호)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광양시 고시 제2021-305호	광양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제211호)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고흥군 고시 제2021-109호	고흥 군계획시설(소공원, 도로, 주차장)사업 토지 세목 고시
고흥군 공고 제2021-1482호	고흥 군관리계획(광장) 결정(변경)(안) 주민 공람 공고
화순군 고시 제2021-100호	화순 군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해남군 고시 제2021-132호	해남 화완농협 체험·판매장 설치를 위한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무안군 고시 제2021-145호	무안 군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무안군 고시 제2021-147호	무안 군계획시설(근린광장)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무안군 공고 제2021-788호	무안 군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함평군 공고 제2021-781호	함평 군계획시설(중도3-905호선)사업 실시계획인가 열람 및 사업안정에 관한 의견청취 공고
영광군 고시 제2021-85호	‘영광 이퍼스트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조성에 따른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신안군 고시 제2021-59호	신안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전라남도 고시 제2021-353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도로법」 제25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 8. 5.

전라남도지사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 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⑨ 주요통과지	⑩ 총연장(km)
기정	지방도	805호선	장산-영광	신안군 지도읍	123,907	지도읍 탄동리 2156	지도읍 탄동리 1550-1	탄동제	3.3
변경	지방도	805호선	장산-영광	신안군 지도읍	123,907	지도읍 탄동리 2156	지도읍 탄동리 1550-1	탄동제	3.3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증도~지도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사업기간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가. 당초 : 2013. 3. 1.~ 2021. 9. 30.

나. 변경 : 2013. 3. 1.~ 2024. 9. 6.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변경없음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고시일로부터 1개월

나. 열람장소: 전라남도 도로교통과(☎ 061-286-7445)

신안군 안전건설과(☎ 061-240-8478)

* 전라남도 고시 제2018-333(2017. 11. 8.)호에 대한 변경임

전라남도 고시 제2021-354호

나무병원 등록 고시

「산림보호법」 제21조의9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6의 규정에 따라 나무병원으로 등록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8. 5.

전라남도지사

법 인 명	대 표 자	등록번호	나무병원의 종 류	등 록 연월일	소재지
유한회사 태광나무병원	최*영	T-전남2021-003	1종 나무병원	2021. 7. 28.	전남 해남군

전라남도 고시 제2021-355호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 승인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3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 8. 5.

전라남도지사

- 1. 실시계획 승인 연월일 : 2021. 7. 29.
- 2. 매립면허취득자
 - 가. 성 명 :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 나. 주 소 : 전남 목포시 통일대로 130
- 3. 매립면허사항

구 분	매립목적	매립위치	매립면적	공사기간
수품항(국가어항)	어항시설용지 (어항 기본 및 기능시설 부지조성)	전남 진도군 의신면 금갑리 수품항 일원	15,615㎡	' 21. 7. 29. ~ ' 26. 3. 28. (56개월)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고시 제2021-356호

하천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지방하천 약곡천 등 4개 하천에 대한 「하천법」 제10조, 제12조에 따라 하천구역의 결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하니 관계인은 전라남도 자연재난과 및 해당 시·군에 비치된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을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1. 8. 5.

전라남도지사

○ 하천구역

하천명	하천 등급	하 천 구 간			구분	면적 (㎡)	결정일	사유
		기점	종점	거리 (km)				
약곡천	지방	전남 무안군 몽탄면 약곡리 128-1번지선	전남 무안군 몽탄면 영산강(국가) 합류점	2.76	하천구역 결정	111,886	고시일	기본계획 재수립
해운천	지방	전남 무안군 현경면 해운리 산126번지선 해운제 방수로 하단	전남 무안군 현경면 해운 해안	2.42	하천구역 결정	79,817	고시일	기본계획 재수립
용정천	지방	전남 구례군 용방면 용정리 747-38번지선	전남 구례군 용방면 서시천(지방) 합류점	2.00	하천구역 결정	104,943	고시일	기본계획 재수립
별교천	지방	전남 보성군 별교읍 별교리 156번지선	전남 보성군 별교읍 별교해안	1.42	하천구역 결정	130,932	고시일	기본계획 재수립

열람서류 : 1.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을 적은 서류
2. 하천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전라남도 고시 제2021-357호

하천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고시

지방하천 약곡천 등 4개 하천에 대한 「하천법」 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을 수립 및 변경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8. 5.

전라남도지사

1. 하 천 명 : 약곡천 등 4개 하천
2. 하천기본계획의 수립목적 및 변경목적
 - 하천의 효율적인 관리·이용·보전을 위하여 장래 하천개수에 대한 제방축조 및 하천시설물 등 시설 기준제시
3. 연평균 강우량 및 하천 수자원의 부존량에 관한 사항 : 다음
4. 하천유역의 지역별 및 홍수방어시설별 홍수배분계획 : 다음
5. 하천의 주요 지점별 기본홍수량, 계획홍수량, 계획홍수위 및 계획하폭에 관한 사항 : 다음
6. 하천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보전지구·복원지구 또는 친수지구에 관한 사항 : 다음
7. 하천기본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 : 다음

가. 하천기본계획의 수립목적 및 변경목적

하천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하천 구역의 경우, 하천의 유량, 하도특성, 환경, 수자원개발 및 이용현황 등 하천의 홍수관리, 용수공급, 하천 환경보전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조사 분석하여 하천에 관한 종합적인 정비 및 보전에 이용되도록 당해 하천에 대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이고 일관된 하천관리의 지침으로 활용하고자 함.

□ 하천기본계획 수립구간

하천명	구 간		연 장 (km)	비 고
	기 점	종 점		
약곡천	전남 무안군 몽탄면 약곡리 128-1번지선	전남 무안군 몽탄면 영산강(국가) 합류점	2.76	재수립
해운천	전남 무안군 현경면 해운리 산126번지선 해운제방수로 하단	전남 무안군 현경면 해운 해안	2.42	재수립
용정천	전남 구례군 용방면 용정리 747-38번지선	전남 구례군 용방면 서시천(지방) 합류점	2.00	재수립
별교천	전남 보성군 별교읍 별교리 156번지선	전남 보성군 별교읍 별교해안	1.42	재수립

주) 용정천 및 별교천은 일부구간 수립

나. 연평균 강우량 및 하천 수자원의 부족량에 관한 사항

하천명	유역면적 (km ²)	연평균 강우량 (mm)	수자원 총량 (백만m ³ /년)	유출량 (백만m ³ /년)			손실량 (백만m ³ /년)
				홍수시	평상시	계	
약곡천	4.92	1138.2	5.60	2.01	1.10	3.11	2.49
해운천	9.10	1138.2	10.36	3.70	2.05	5.75	4.60
용정천	14.95	1,180.6	17.65	7.33	2.45	9.77	7.88
별교천	73.94	1,530.8	113.19	53.30	21.07	74.37	38.82

다. 하천유역의 지역별 및 홍수방어시설별 홍수배분계획

하 천 명	주 요 지 점	유역면적 (km ²)	유로연장 (km)	기본홍수량 (m ³ /s)	계획홍수량 (m ³ /s)
약곡천	영산강 합류점	4.92	3.70	101	102
	적동천(소) 합류후	4.62	3.13	102	102
	적동천(소) 합류전	2.61	3.13	53	55
	약곡4교 지점	2.39	2.44	55	55
	개야세천 합류후	2.04	2.12	48	48
	개야세천 합류전	1.82	2.12	42	42
	약곡6교 지점	1.30	1.87	31	31
	약곡8교 지점	1.07	1.41	27	27
	약곡마을 지점	0.42	0.94	11	11

하천명	주요지점	유역면적 (km ²)	유로연장 (km)	기본홍수량 (m ³ /s)	계획홍수량 (m ³ /s)
해운천	해운천 하구	9.10	4.82	191	196
	산음천(소) 합류후	9.08	4.69	196	196
	산음천(소) 합류전	2.29	4.64	54	56
	해운동세천 합류후	2.12	3.77	56	56
	해운동세천 합류전	1.78	3.77	47	47
	해운5교 지점	1.61	2.86	46	46
	해운저수지 지점	1.34	2.31	40	40
용정천	서시천합류점	14.95	6.27	233	233
	죽정천합류후	14.22	5.02	233	233
	죽정천합류전	10.32	5.02	182	182
	신도천합류후	10.31	4.82	182	182
	신도천합류전	4.10	4.82	62	62
별교천	별교천 하구	73.94	14.09	860	830
	낙안천 합류전	29.01	11.46	381	385
	구치천 합류전	12.04	7.68	188	190

라. 하천의 주요 지점별 계획홍수량·계획홍수위 및 계획하폭에 관한 사항

하천명	주요지점	계획 규모 (년)	계획 홍수량 (m ³ /s)	계획 홍수위 (EL.m)	하 폭 (m)		비 고 (No.)
					현재	계획	
약곡천	영산강 합류점	80	102	2.92-3.44	6-68	23-68	0+000-0+560
	적동천(소) 합류점	〃	55	3.44-6.54	3-12	12-26	0+560-1+250
	약곡4교 지점	〃	55	6.54-9.24	3-12	4-19	1+250-1+570
	개이세천 합류점	〃	42	9.24-11.40	4-9	4-16	1+570-1+820
	약곡6교 지점	〃	31	11.40-20.19	3-15	9-18	1+820-2+285
	약곡8교 지점	〃	27	20.19-35.35	3-35	5-35	2+285-2+757
해운천	해운천 하구	80	196	3.90-4.68	32-76	32-76	0+000-0+150
	산음천(소) 합류점	〃	56	4.68-10.26	10-76	17-76	0+150-1+050
	해운동세천 합류점	〃	47	10.26-20.22	10-16	17	1+050-1+950
	해운5교 지점	〃	46	20.22-26.31	4-17	9-17	1+950-2+424
용정천	서시천합류점	80	233	42.17-49.37	32-79	32-79	0+000-1+350
	죽정천합류점	〃	182	49.37-49.84	12-34	12-34	1+350-1+500
	신도천합류점	〃	62	49.84-67.85	8-15	8-15	1+500-2+000

하천명	주요지점	계획 규모 (년)	계 획 홍수량 (m ³ /s)	계 획 홍수위 (EL.m)	하 폭 (m)		비 고 (No.)
					현재	계획	
별교천	별교천 하구	80	830	3.43-5.22	54-144	54-144	0+000~1+417
	낙안천 합류전	〃	385	-	-	-	과업구간 외
	구치천 합류전	〃	190	-	-	-	과업구간 외

마. 하천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보전·복원·친수지구에 관한 사항

하천명	보전지구	복원지구	친수지구	비고
약곡천	0+000 ~ 0+402	0+402 ~ 2+545 2+693 ~ 2+757	2+545 ~ 2+693	우안
	0+000 ~ 0+440	0+440 ~ 2+545 2+693 ~ 2+757	2+545 ~ 2+693	좌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공시설물 설치를 지양하고 훼손되지 않은 자연상태와 하천경관 유지를 위한 보전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치수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수환경을 개선하여 하천의 자정능력 증대를 위한 복원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수단면 확대를 통한 친수안정성을 확보하고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이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친수공간으로 관리 	관리 계획
해운천	0+000 ~ 1+014	1+014 ~ 2+424	-	우안
	0+000 ~ 1+014	1+014 ~ 2+424	-	좌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공시설물 설치를 지양하고 훼손되지 않은 자연상태와 하천경관 유지를 위한 보전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치수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수환경을 개선하여 하천의 자정능력 증대를 위한 복원계획 수립 	-	관리 계획
용정천	0+000 ~ 1+000	1+000 ~ 2+000	-	우안
	0+000 ~ 1+000	1+000 ~ 2+000	-	좌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공시설물 설치를 지양하고 훼손되지 않은 자연상태와 하천경관 유지를 위한 보전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치수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수환경을 개선하여 하천의 자정능력 증대를 위한 복원계획 수립 	-	관리 계획
별교천	-	-	0+000 ~ 1+417	우안
	-	-	0+000 ~ 1+417	좌안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재 조성된 자연친화적 주민이용 시설을 보존하고, 일부구간에 대해 부족한 여유고 확보를 위한 홍수 방어벽 계획민을 수립 	관리 계획

바. 하천기본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

하천기본계획 도서와 하천시설관리대장은 관계기관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열람장소 : 전라남도 자연재난과 및 각 시·군별 해당부서)

하천명	해당 사군청	해당부서
약곡천	무안군	무안군 안전총괄과
해운천	무안군 함평군	무안군 안전총괄과 함평군 안전건설과
용정천	구례군	구례군 건설과
별교천	보성군	보성군 안전건설과

전라남도 고시 제2021-358호

하천의 지정 및 변경 고시

지방하천 약곡천, 해운천에 대한 하천의 지정(변경)을 「하천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지방하천으로 지정(변경)하고 같은법 제7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변경)합니다.

2021. 8. 5.

전라남도지사

1. 하천의 지정(변경) 내역

하천명	하천 등급	당초 변경	구 간			변경사유
			기 점	종 점	연 장 (km)	
약곡천	지방 하천	당초	전남 무안군 몽탄면 약곡리 436번지선	전남 무안군 몽탄면 영산강(국가) 합류점	2.80	기본계획 재수립으로 지형 측량을 반영한 하천연장 감소
		변경	전남 무안군 몽탄면 약곡리 128-1번지선	전남 무안군 몽탄면 영산강(국가) 합류점	2.76	
해운천	지방 하천	당초	전남 무안군 현경면 해운리 469번지선 해운제 방수로	전남 무안군 현경면 해운 해안	2.50	기본계획 재수립으로 시점 조정 및 지형측량을 반영한 하천연장 감소
		변경	전남 무안군 현경면 해운리 산126번지선 해운제 방수로 하단	전남 무안군 현경면 해운 해안	2.42	

2. 지정(변경) 사유

- 1) 기수립 하천기본계획 및 하천의 지정 고시에 따라 하천구간 및 연장을 재조사한 결과 변동사항이 있어 하천의 시·종점을 연속지적도에 의거하여 명확히 지정(변경)하고자 함.
- 2) 과거 지방하천 지정 당시는 유로의 중심으로 연장을 결정한 반면, 금회는 하천의 중심으로 연장으로 연장을 결정하여 하천연장이 변경.

전라남도 고시 제2021-359호

공공하수도 설치 인가 고시

생활하수의 적정처리를 통한 공중위생 향상 및 공공수역 수질 보전 등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하수도법」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공공하수도(함평군 주포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설치인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8. 5.

전라남도지사

□ 인가내용

사업의 목적		생활오수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고자 함	
시설의 명칭		함평군 주포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사업시행자	성명	함평군수	
	주소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중앙길 200	
사업시행지	위치	함평군 함평읍 석정리 일원	
	면적	2,645㎡(처리장 1,926㎡, 관로 719㎡)	
사업내용		오수관로 4.354km, 시설용량 250㎡/일 등	
처리공법		BRC공법, ECO-SBR 공법	
처리구역 및 배수구역		처리구역	배수구역
		70ha	청학천
사업시행기간		2021년 ~ 2023년	

※ 관계 도서 열람 장소: 함평군 환경상하수도과(061-320-1848)

전라남도 고시 제2021-362호

지방하천 정비사업 준공 고시

전라남도지사는 『의신천 하천재해 예방사업』이 완료되어 「하천법」 제27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준공 고시합니다.

2021. 8. 5.

전라남도지사

- 1. 사 업 명: 의신천 하천재해예방사업
- 2. 사업목적: 지방하천을 정비하여 가옥 및 농경지 침수피해예방
- 3. 사업개요

사 업 명	위 치	사업량 (km)	사업비 (백만 원)	사업기간
의신천 하천재해예방사업	진도군 의신면 돈지라-연주리	2.72	32,592	2017. 4. ~ 2020. 12.

- 4. 시 행 자: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라남도지사
- 5. 편입토지 세목조서 : 다음
- 6. 준공된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진도군 및 한국농어촌공사 이관
- 7. 하천구역에 관한 축척 1/1,500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 진도군 건설교통과에서 열람 가능
- 8. 기타사항
 - 관계도면 및 토지 지장물 편입용지조서 열람
 - 진도군 건설교통과 (061-540-3472)

편입 토지 조서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소유권 이전 현황		비고
					당 초	최 종	
1	의신면 둔자리	53-2	천	258	입향	전라남도	
2	의신면 둔자리	82-23	답	175	박기본	전라남도	
3	의신면 둔자리	52-2	천	631	박호환	전라남도	
4	의신면 둔자리	82-22	답	184	박기본	전라남도	
5	의신면 둔자리	82-21	답	212	이병원	전라남도	
6	의신면 둔자리	82-20	답	32	조정희	전라남도	
					조형	전라남도	
					조경태	전라남도	
7	의신면 둔자리	83-12	답	614	박흥식	전라남도	
					박인식	전라남도	
					박삼식	전라남도	
8	의신면 둔자리	910-2	천	400	조명	전라남도	
9	의신면 둔자리	48	천	1,304	조영	전라남도	
10	의신면 둔자리	83-11	답	516	박복심	전라남도	
11	의신면 둔자리	72-1	답	453	이기덕	전라남도	
12	의신면 둔자리	83-10	답	292	박복심	전라남도	
13	의신면 둔자리	83-9	답	437	박병락	전라남도	
14	의신면 둔자리	83-8	답	90	이기덕	전라남도	
15	의신면 둔자리	83-7	답	15	조정식	전라남도	
16	의신면 둔자리	84	답	1,100	이기덕	전라남도	
17	의신면 둔자리	72	답	253	이기덕	전라남도	
18	의신면 둔자리	80-27	답	878	이진규	전라남도	
19	의신면 둔자리	80-26	답	517	이진규	전라남도	
20	의신면 둔자리	80-25	답	168	채성일	전라남도	
21	의신면 둔자리	50-2	천	1,458	조정희	전라남도	
22	의신면 둔자리	51-2	천	2,215	이남수	전라남도	
					이남원	전라남도	
					이남환	전라남도	
23	의신면 둔자리	1042-3	답	919.3	조규창	전라남도	
24	의신면 둔자리	1042-4	답	91.8	박흥식	전라남도	
25	의신면 둔자리	1043-21	답	1,031.6	박흥식	전라남도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소유권 이전 현황		비고
					당 초	최 종	
26	의신면 둔자리	1043-22	답	224.2	박흥식	전라남도	
27	의신면 둔자리	1043-23	답	860.9	박준현	전라남도	
28	의신면 둔자리	1043-24	답	881.4	박승우	전라남도	
29	의신면 둔자리	1043-25	답	821.5	허태관	전라남도	
30	의신면 둔자리	1043-26	답	506.5	허태관	전라남도	
31	의신면 둔자리	1043-27	답	257	허태관	전라남도	
32	의신면 둔자리	1043-28	답	533.7	이순예	전라남도	
33	의신면 둔자리	1043-29	답	352.1	채성일	전라남도	
34	의신면 둔자리	1043-30	답	146	채성일	전라남도	
35	의신면 둔자리	1043-31	답	231.9	채성일	전라남도	
36	의신면 둔자리	1043-32	답	190.3	채성일	전라남도	
37	의신면 둔자리	1043-33	답	282.9	채성일	전라남도	
38	의신면 둔자리	1043-34	답	373.6	홍옥례	전라남도	
39	의신면 둔자리	1043-35	답	125.6	홍옥례	전라남도	
40	의신면 둔자리	1043-36	답	53.2	홍옥례	전라남도	
41	의신면 둔자리	14	천	179	조석황	전라남도	
42	의신면 둔자리	신98-1	임	198	박병정	전라남도	
					박병선	전라남도	
43	의신면 둔자리	83-6	답	660	박흥식	전라남도	
					박인식	전라남도	
					박삼식	전라남도	
44	의신면 둔자리	80-23	답	596	이진규	전라남도	
45	의신면 둔자리	80-22	답	594	이진규	전라남도	
46	의신면 옥대리	37-24	답	65	박명우	전라남도	
47	의신면 옥대리	37-23	답	63	박명우	전라남도	
48	의신면 옥대리	37-25	답	530	김희곤	전라남도	
49	의신면 옥대리	38-25	답	36	박두극	전라남도	
50	의신면 옥대리	1146	답	46	김상현	전라남도	
51	의신면 옥대리	38-26	답	1,139	박경선	전라남도	
52	의신면 옥대리	1135	천	1,202	서기문	전라남도	
53	의신면 옥대리	39-22	답	1,478	윤영희	전라남도	
54	의신면 옥대리	39-25	답	52	김봉현	전라남도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소유권 이전 현황		비고
					당 초	최 종	
55	의신면 옥대리	39-26	답	27	김봉현	전라남도	
56	의신면 옥대리	39-24	답	2	김봉현	전라남도	
57	의신면 옥대리	40-28	답	26	주현철	전라남도	
58	의신면 옥대리	40-29	답	1,527	채성원	전라남도	
59	의신면 옥대리	41-26	답	1,571	김재광	전라남도	
60	의신면 옥대리	41-20	답	517	김재광	전라남도	
61	의신면 옥대리	41-24	답	18	김재광	전라남도	
62	의신면 옥대리	41-25	답	8	김재광	전라남도	
63	의신면 옥대리	42-14	답	53	진도농지 개량조합	전라남도	
64	의신면 옥대리	42-15	답	159	곽경자	전라남도	
65	의신면 옥대리	42-16	답	1,985	곽경자	전라남도	
추가	의신면 옥대리	42-12	답	1,154	곽경자	전라남도	
66	의신면 옥대리	43-27	답	44	김서임	전라남도	
67	의신면 옥대리	43-28	답	187	박경진	전라남도	
68	의신면 옥대리	43-29	답	84	김창영	전라남도	
69	의신면 옥대리	43-30	답	91	김창영	전라남도	
70	의신면 옥대리	43-31	답	183	정춘심	전라남도	
71	의신면 옥대리	43-32	답	127	채성일	전라남도	
72	의신면 옥대리	43-33	답	147	채성일	전라남도	
73	의신면 옥대리	43-34	답	305	이원기	전라남도	
74	의신면 옥대리	43-35	답	103	김영학	전라남도	
75	의신면 옥대리	43-36	답	1,416	김영학	전라남도	
76	의신면 옥대리	1409	천	32,965	진도토지 개량조합	전라남도	
77	의신면 옥대리	1410	제	4,056	진도토지 개량조합	전라남도	
78	의신면 옥대리	55-18	답	3,484	소연숙	전라남도	
79	의신면 옥대리	55-17	답	1,562	김애신	전라남도	
80	의신면 옥대리	55-16	답	1,785	황순일	전라남도	
81	의신면 옥대리	55-15	답	2,127	김재권	전라남도	
82	의신면 옥대리	55-14	답	838	김재권	전라남도	
83	의신면 옥대리	55-13	답	1,030	채성일	전라남도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소유권 이전 현황		비고
					당 초	최 종	
84	의신면 옥대리	55-12	답	1,360	채성일	전라남도	
85	의신면 옥대리	55-11	답	570	한국농어촌공사	전라남도	
86	의신면 옥대리	55-10	답	2,064	한국농어촌공사	전라남도	
87	의신면 옥대리	55-9	답	2,641	김희태	전라남도	
88	의신면 옥대리	55-5	답	3,578	김대수	전라남도	
89	의신면 옥대리	55-4	답	1,827	채성원	전라남도	
90	의신면 옥대리	55-3	답	2,054	채성원	전라남도	
91	의신면 옥대리	55-2	답	453	채성원	전라남도	
92	의신면 옥대리	55-1	답	1,688	채성원	전라남도	
93	의신면 옥대리	1139	답	863	채성원	전라남도	
94	의신면 옥대리	1138	전	1,005	박수현	전라남도	
95	의신면 옥대리	1136	천	93	박태중	전라남도	
96	의신면 옥대리	신89-1	임	83	주종렬	전라남도	
97	의신면 옥대리	45-25	답	922	김준영	전라남도	
추가	의신면 옥대리	45-26	답	284	김준영	전라남도	
98	의신면 옥대리	45-24	답	139	김준영	전라남도	
99	의신면 옥대리	45-23	답	30	채성원	전라남도	
100	의신면 옥대리	45-25	답	167	김준영	전라남도	
101	의신면 옥대리	1408	제	12,992	진도토지 개량조합	전라남도	
102	의신면 옥대리	1310-11	답	2,168	홍금자	전라남도	
103	의신면 옥대리	1310-10	답	21	채영관	전라남도	
104	의신면 옥대리	1311-9	답	2,164	채성원	전라남도	
105	의신면 옥대리	1312-8	답	2,170	박근성	전라남도	
106	의신면 옥대리	1313-9	답	8	최말례	전라남도	
107	의신면 옥대리	1313-10	답	1,105	주현석	전라남도	
108	의신면 옥대리	1310-5	답	1,110	홍금자	전라남도	
109	의신면 옥대리	1313-6	답	1,276	박숙례	전라남도	
110	의신면 옥대리	1314-13	답	1,311	박종월	전라남도	
111	의신면 옥대리	1314-9	답	1,024	박종월	전라남도	
112	의신면 옥대리	1419-2	답	210	김해영	전라남도	
113	의신면 옥대리	1411	구	890	진도토지 개량조합	전라남도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소유권 이전 현황		비고
					당 초	최 종	
114	의신면 옥대리	1321-10	답	240	허중석	전라남도	
115	의신면 옥대리	1321-11	답	251	김봉태	전라남도	
116	의신면 옥대리	1321-9	답	1,862	김봉태	전라남도	
117	의신면 옥대리	1322-6	답	194	이귀심	전라남도	
118	의신면 옥대리	1322-1	답	2,518	김종석	전라남도	
119	의신면 옥대리	1323-18	답	324	이현배	전라남도	
120	의신면 옥대리	1323-1	답	2,262	이제신	전라남도	
121	의신면 옥대리	1311-6	답	962	채성원	전라남도	
122	의신면 옥대리	1315-14	답	40	채성원	전라남도	
123	의신면 옥대리	1315-15	답	741	채영봉	전라남도	
					채성원	전라남도	
124	의신면 옥대리	1315-11	답	1,702	박종록	전라남도	
125	의신면 옥대리	1316-16	답	75	김춘영	전라남도	
126	의신면 옥대리	1316-17	답	2,298	최복임	전라남도	
127	의신면 옥대리	1317-1	잡	70	진도토지 개량조합	전라남도	
128	의신면 옥대리	1318-19	답	189	채성원	전라남도	
129	의신면 옥대리	1318-20	답	2,168	채성원	전라남도	
130	의신면 옥대리	1319-19	답	2,400	홍금자	전라남도	
131	의신면 옥대리	1319-17	답	1,100	홍금자	전라남도	
132	의신면 옥대리	1320-17	답	2,257	박연일	전라남도	
133	의신면 옥대리	1318-16	답	526	채성원	전라남도	
134	의신면 옥대리	1320-22	답	26	채성원	전라남도	
135	의신면 옥대리	1316-14	답	702	최복임	전라남도	
136	의신면 옥대리	38-23	답	666	박경선	전라남도	
137	의신면 연주리	931-17	답	852	채성일	전라남도	
138	의신면 연주리	931-25	답	1,144	채성일	전라남도	
139	의신면 만길리	1783-11	답	2,289	채성일	전라남도	
140	의신면 만길리	1783-12	답	300	김애신	전라남도	
141	의신면 만길리	1784-11	답	2,604	이정옥	전라남도	
142	의신면 만길리	1784-12	답	161	박석준	전라남도	
143	의신면 만길리	1783-1	답	271	채성일	전라남도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소유권 이전 현황		비고
					당 초	최 종	
144	의신면 만길리	1785-1	답	740	채성일	전라남도	
145	의신면 만길리	1785-12	답	1,786	채성일	전라남도	
146	의신면 만길리	1786-1	답	2,504	채성원	전라남도	
					채영근	전라남도	
147	의신면 만길리	1787-17	답	238	채성원	전라남도	
					채영은	전라남도	
148	의신면 만길리	1787-1	답	2,116	채성원	전라남도	
					채영은	전라남도	
149	의신면 만길리	1788-24	답	729	이일철	전라남도	
150	의신면 만길리	1788-1	답	1,231	박현일	전라남도	
151	의신면 만길리	1784-1	답	432	이정옥	전라남도	
152	의신면 만길리	1781-1	답	373	허범교	전라남도	
153	의신면 만길리	1785-2	답	761	채성일	전라남도	
154	의신면 만길리	1731	제	18,863	진도토지 개량조합	전라남도	
155	의신면 만길리	1781-16	답	2,331	허범교	전라남도	
156	의신면 만길리	1733	천	29,931	진도토지 개량조합	전라남도	
157	의신면 만길리	1781-17	답	240	박종단	전라남도	
158	의신면 만길리	1782-1	답	2,148	이진옥	전라남도	
159	의신면 만길리	1782-16	답	555	채성원	전라남도	
160	의신면 옥대리	1131	임	386	옥대리	옥대리	
161	의신면 옥대리	55-19	답	1666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162	의신면 옥대리	37-21	답	452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163	의신면 둔지리	100	구	381.8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164	의신면 둔지리	111	구	395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165	의신면 둔지리	112	도	176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166	의신면 둔지리	95	구	786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167	의신면 둔지리	105	구	286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168	의신면 둔지리	106	제	468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169	의신면 둔지리	107	천	1099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170	의신면 둔지리	1045	도	275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171	의신면 둔지리	1046	구	78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소유권 이전 현황		비고
					당 초	최 종	
172	의신면 둔자리	1048-2	구	427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173	의신면 둔자리	1052	도	274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174	의신면 둔자리	1049	도	1793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175	의신면 둔자리	1050	구	846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176	의신면 둔자리	1051	도	85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177	의신면 둔자리	1053	구	50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178	의신면 옥대리	1147	제	446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179	의신면 옥대리	1148	구	288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180	의신면 옥대리	1149	제	64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181	의신면 옥대리	1150	구	98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182	의신면 옥대리	1151	도	152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183	의신면 옥대리	1152	구	63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184	의신면 옥대리	1155	구	111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185	의신면 옥대리	1156	도	143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186	의신면 옥대리	1157	구	69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187	의신면 옥대리	1160	천	967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188	의신면 옥대리	1158	구	125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189	의신면 옥대리	1159	도	134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190	의신면 옥대리	1187	천	144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191	의신면 옥대리	1161	구	370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192	의신면 옥대리	1162	제	1645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193	의신면 옥대리	1163	천	3274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194	의신면 옥대리	1164	제	787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195	의신면 옥대리	1165	구	665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196	의신면 옥대리	1186	천	468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197	의신면 옥대리	1184	제	1813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198	의신면 옥대리	1185	천	1157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199	의신면 옥대리	1310-8	구	173.7	농림수산부	농림수산부	
200	의신면 옥대리	1170	도	433.6	농림수산부	농림수산부	
201	의신면 옥대리	1171	구	262.3	농림수산부	농림수산부	
202	의신면 옥대리	1310-6	구	104	농림수산부	농림수산부	
203	의신면 옥대리	1311-8	도	148.1	농림수산부	농림수산부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소유권 이전 현황		비고
					당 초	최 종	
204	의신면 옥대리	1311-7	구	107.9	농림수산부	농림수산부	
205	의신면 옥대리	1312-7	도	167.3	농림수산부	농림수산부	
206	의신면 옥대리	1313-8	도	120.4	농림수산부	농림수산부	
207	의신면 옥대리	1313-7	구	110.5	농림수산부	농림수산부	
208	의신면 옥대리	1314-10	구	111.6	농림수산부	농림수산부	
209	의신면 옥대리	1321-5	도	569.3	농림수산부	농림수산부	
210	의신면 옥대리	1310-7	도	131.6	농림수산부	농림수산부	
211	의신면 옥대리	1321-4	구	500.3	농림수산부	농림수산부	
212	의신면 옥대리	1322-5	도	113.9	농림수산부	농림수산부	
213	의신면 옥대리	1323-16	구	144.4	농림수산부	농림수산부	
214	의신면 옥대리	1323-17	도	159.1	농림수산부	농림수산부	
215	의신면 옥대리	1315-13	도	115.7	농림수산부	농림수산부	
216	의신면 옥대리	1315-12	구	123.3	농림수산부	농림수산부	
217	의신면 옥대리	1316-15	구	124.4	농림수산부	농림수산부	
218	의신면 옥대리	1318-18	도	126.2	농림수산부	농림수산부	
219	의신면 옥대리	1318-17	구	103.1	농림수산부	농림수산부	
220	의신면 옥대리	1319-18	구	96.5	농림수산부	농림수산부	
221	의신면 옥대리	1320-19	도	134.6	농림수산부	농림수산부	
222	의신면 옥대리	1320-18	구	111.1	농림수산부	농림수산부	
223	의신면 옥대리	1320-21	구	122.9	농림수산부	농림수산부	
224	의신면 연주리	931-18	도	39.5	농림수산부	농림수산부	
225	의신면 만길리	1782-15	도	140.3	농림수산부	농림수산부	
226	의신면 만길리	1783-10	구	124.5	농림수산부	농림수산부	
227	의신면 만길리	1784-9	도	171.2	농림수산부	농림수산부	
228	의신면 만길리	1784-10	구	109.6	농림수산부	농림수산부	
229	의신면 만길리	1786-11	구	135.5	농림수산부	농림수산부	
230	의신면 만길리	1787-16	도	137.3	농림수산부	농림수산부	
231	의신면 만길리	1787-15	구	54.5	농림수산부	농림수산부	
232	의신면 만길리	1788-18	구	95	농림수산부	농림수산부	
233	의신면 만길리	1788-19	도	43.3	농림수산부	농림수산부	
234	의신면 만길리	1781-15	구	96.7	농림수산부	농림수산부	
235	의신면 만길리	1782-13	구	182.9	농림수산부	농림수산부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소유권 이전 현황		비고
					당 초	최 종	
236	의신면 옥대리	1295	도	287	건설부	건설부	
237	의신면 옥대리	1259-12	천	18009.2	건설부	건설부	
238	의신면 연주리	1033	제	905.6	건설교통부	건설교통부	
239	의신면 연주리	1034	천	2294.9	건설교통부	건설교통부	
240	의신면 둔지리	1055	천	493.5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241	의신면 둔지리	1033-2	도	29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242	의신면 둔지리	1054	천	220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243	의신면 둔지리	1029	천	13048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244	의신면 옥대리	1296-2	천	371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245	의신면 옥대리	1296	도	459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246	의신면 옥대리	1296-3	천	351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247	의신면 둔지리	1043-37	답	34.7	전라남도	전라남도	
248	의신면 옥대리	1131-3	천	6148	전라남도	전라남도	
249	의신면 옥대리	1134	천	711	전라남도	전라남도	
250	의신면 옥대리	1142	천	1542	전라남도	전라남도	
251	의신면 옥대리	1140	천	56	전라남도	전라남도	
252	의신면 옥대리	1132	천	800	진도군	진도군	
253	의신면 옥대리	1128	천	474	진도군	진도군	
254	의신면 옥대리	1137	천	122	진도군	진도군	
255	의신면 옥대리	46-15	도	295.7	진도군	진도군	
256	의신면 옥대리	1310-9	도	37	진도군	진도군	
257	의신면 옥대리	1321-6	도	305	진도군	진도군	
258	의신면 연주리	931-24	답	51	진도군	진도군	
259	의신면 연주리	931-23	답	73	진도군	진도군	
260	의신면 연주리	931-22	답	23	진도군	진도군	
261	의신면 연주리	931-21	답	82.2	진도군	진도군	
262	의신면 만길리	1788-21	답	119	진도군	진도군	
263	의신면 만길리	1788-22	답	8.2	진도군	진도군	

전라남도 고시 제2021-363호

지방하천(통안천) 하천재해예방사업 시행계획(변경) 고시

전라남도는 “통안천 하천재해예방사업”에 대해 「하천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방하천 정비사업 시행계획 변경 고시합니다.

2021. 8. 5.

전라남도지사

1. 사업목적 : 상습침수 하천을 정비하여 가옥 및 농경지 침수피해예방
2. 시행자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라남도지사
3. 사업개요
 - 가. 사업명 : 통안천 하천재해예방사업
 - 나. 위치 : 장성군 황룡면 금호리 ~ 황룡면 아곡리 일원
 - 다. 사업량 : 2.00km
 - 라. 사업비 : 10,564백만원
 - 마. 사업기간 : 당초) 2017. 10. ~ 2020. 1. 변경) 2017. 10. ~ 2021. 12.
 - 바. 변경사유 : 토지수용절차 이행을 위한 사업기간 연장
4.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상
5. 관계도면 및 토지, 지장물조서 열람
 - 장성군 재난안전실(061-390-7488)
6. 토지, 지장물조서 (변경없음)

구분	대상토지				편입현황		소유자		관계인		관리관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지번	편입면적 및 수량 (㎡,주,식)	성명	주소	성명	주소	
토지	황룡면 금호리	33	전	586	33-1	619	김정임	장성군 황룡면 백비길24			○
토지	황룡면 금호리	33	전	436	33	436	김정임	장성군 황룡면 백비길24			○
토지	황룡면 금호리	158-1	답	37	158-11	37	서필경	장성군 황룡면 금호리 259			○
토지	황룡면 금호리	158-10	답	10	158-14	38	김성관	장성군 황룡면 홍길동로 574			

구분	대상토지				편입현황		소유자		관계인		관리관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지번	편입면적 및 수량 (㎡, 주, 식)	성명	주소	성명	주소	
토지	황룡면 금호리	158-3	답	62	158-12	65	박영구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111-12			○
토지	황룡면 금호리	158-4	답	56	158-13	58	인제이씨숙경공파종중	인제이씨숙경공파종중			
토지	황룡면 금호리	167-12	대	5	167-16	8	김성관	장성군 황룡면 홍길동로 574			
토지	황룡면 금호리	172-1	대	2	172-4	3	김성관	장성군 황룡면 홍길동로 574			
토지	황룡면 금호리	174-2	도	26	174-2	26	백장흥	장성군 황룡면 금호리 501			
토지	황룡면 금호리	174-3	답	715	174-6	730	박래범	장성군 황룡면 금호초지길 43-5			
토지	황룡면 금호리	174-3	답	407	174-3	407	박래범	장성군 황룡면 금호초지길 43-5			
토지	황룡면 금호리	174-5	답	576	174-5	576	박래범	장성군 황룡면 금호초지길 43-5			
토지	황룡면 금호리	175-1	대	20	175-3	20	김병남	장성군 황룡면 금호리 177			
토지	황룡면 금호리	176-1	대	18	176-1	18	임종길	광주시 광신구 첨단중앙로181번지길88-21, 109동102호 (첨단대우)			
토지	황룡면 금호리	178-2	답	32	178-2	32	유희범	장성군 황룡면 아곡리 365			
토지	황룡면 금호리	179-1	답	625	179-10	601	유희범	장성군 황룡면 아곡리 365			
토지	황룡면 금호리	179-2	답	69	179-11	73	유희범	장성군 황룡면 아곡리 365			
토지	황룡면 금호리	179-3	답	33	179-12	23	전희숙	장성군 황룡면 하사2길 16			
토지	황룡면 금호리	180-1	답	7	180-16	7	김복남	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로57길53, 201동 1112호 (답십리동, 청솔우성APT)			
토지	황룡면 금호리	180-10	답	55	180-25	53	오광열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848-25			
토지	황룡면 금호리	180-11	답	40	180-26	32	임한규	광주시 북구 각화대로 33, 2동 806호 (각화동, 금호타운)			

구분	대상토지				편입현황		소유자		관계인		관리 관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지번	편입면적 및 수량 (㎡,주,식)	성명	주소	성명	주소	
토지	황룡면 금호리	180-12	답	33	180-27	30	기우길	광주시 북구 운암동 69 벽산블루밍메가씨티아파트 308-1204			
토지	황룡면 금호리	180-13	답	17	180-28	12	김성희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동69-2 운암APT53동401호	북광주 세무서, 광주시북구	광주 북구 금호로 70 광주시 북구 우치로 77	입류
토지	황룡면 금호리	180-2	답	25	180-17	25	김요일	장성군 서삼면 금계리 47			
토지	황룡면 금호리	180-3	답	49	180-18	48	김희수	순천시 해룡면 상삼리 693 부영아파트 1002-1201			
토지	황룡면 금호리	180-4	답	58	180-19	56	김희수	순천시 해룡면 상삼리 693 부영아파트 1002-1201			
토지	황룡면 금호리	180-5	답	177	180-20	169	박호인	장성군 황룡면 금호리 35			
토지	황룡면 금호리	180-6	답	109	180-21	99	박내섭	장성군 황룡면 금호리 107			
토지	황룡면 금호리	180-7	답	163	180-22	157	박태열	장성군 황룡면 아곡리 489	박년무, 박태열	장성 황룡 아곡 288 장성 황룡 아곡 489	
토지	황룡면 금호리	180-8	답	132	180-23	124	김장기	장성군 장성읍 매화8길 28			
토지	황룡면 금호리	180-9	답	34	180-24	33	김장기	장성군 장성읍 매화8길 28			
토지	황룡면 금호리	181-1	답	1111	181-3	1106	박래일	장성군 황룡면 금호초지길 48			
토지	황룡면 금호리	181-2	천	50	181-2	50	박춘구	장성군 황룡면 금호리 107			
토지	황룡면 금호리	182-2	답	742	182-5	784	김대연	경남 창원시 상남동 44-1대동APT 118-706			
토지	황룡면 금호리	182-3	답	48	182-6	49	심재성	장성군 황룡면 금호리18			
토지	황룡면 금호리	182-4	천	109	182-4	109	심재성	장성군 황룡면 금호리18			
토지	황룡면 금호리	199	답	198	199-1	191	박영식	장성군 황룡면 금호리 568			
토지	황룡면 금호리	199	답	77	199-1	77	박영식	장성군 황룡면 금호리 568			

구분	대상토지				편입현황		소유자		관계인		관리 관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지번	편입면적 및 수량 (㎡,주,식)	성명	주소	성명	주소	
토지	황룡면 금호리	200-1	답	52	200-8	53	이백오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120,10동105호 (대치동,개포1차우성APT)	이백오(3/2), 신경희(3/1)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120,10동105호 (대치동, 개포1차우성APT)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169-1	
토지	황룡면 금호리	217	답	104	217-16	106	변갑섭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18길 14-5,비01호(개포동)			
토지	황룡면 금호리	217-1	답	22	217-17	20	임석환	장성군 동회면 남평리 342			
토지	황룡면 금호리	217-11	답	24	217-21	21	임석환	장성군 동회면 남평리 342			
토지	황룡면 금호리	217-12	답	503	217-22	519	장윤진	장성군 황룡면 금동길 60-9			
토지	황룡면 금호리	217-6	답	133	217-18 217-19	40 130	변갑섭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8길 14-5, 비01호 (개포동)			
토지	황룡면 금호리	217-8	답	83	217-20	90	변갑섭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18길 14-5,비01호(개포동)			
토지	황룡면 금호리	217-9	답	440	217-9	440	임석환	장성군 동회면 남평리 342			
토지	황룡면 금호리	218	답	496	218	496	백운봉	광주시 북구 풍향동585-35			
토지	황룡면 금호리	219-1	답	17	219-1	17	장윤진	장성군 황룡면 금동길 60-9			
토지	황룡면 금호리	219-5	잡	80	219-8	69	장윤진	장성군 황룡면 금동길 60-9			
토지	황룡면 금호리	219-6	잡	25	219-9	23	장윤진	장성군 황룡면 금동길 60-9			
토지	황룡면 금호리	219-7	답	63	219-10	76	장윤진	장성군 황룡면 금동길 60-9			
토지	황룡면 금호리	23-1	답	624	23-4	578	백래천	장성군 황룡면 백비길17			
토지	황룡면 금호리	23-2	천	149	23-2	149	백래천	장성군 황룡면 백비길17			
토지	황룡면 금호리	23-3	답	-	23-5	57	백래천	장성군 황룡면 백비길17			
토지	황룡면 금호리	30-6	답	391	30-21	415	이득선	장성군 황룡면 금호리53			

구분	대상토지				편입현황		소유자		관계인		관리 관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지번	편입면적 및 수량 (㎡,주,식)	성명	주소	성명	주소	
토지	황룡면 금호리	31-1	답	20	31-12	26	박복실	장성군 황룡면 금호리 59-5			
토지	황룡면 금호리	31-11	구	38	31-11	38	국	한국농어촌공사			
토지	황룡면 금호리	31-3	답	743	31-13	745	기우근	광주시 북구 중흥동802-89			
					31-14	6					
토지	황룡면 금호리	32-1	답	965	32-5	973	박래열	광주시 서구 천변좌로 112-9(양동)			
토지	황룡면 금호리	32-2	답	568	32-6	580	이득선	장성군 황룡면 금호리 53			
토지	황룡면 금호리	32-3	답	565	32-7	538	차두환	광주 광산구 월계동 763-6 첨단호반2차APT 207-502			
토지	황룡면 금호리	442	답	256	442-1	264	살판원	장성군 서삼면 추암리 57			
토지	황룡면 금호리	443	답	391	443-1	390	임란숙	장성군 황룡면 금동길 53-8			
토지	황룡면 금호리	444	답	614	444-1	636	강후자	장성군 황룡면 금호리 456			
토지	황룡면 금호리	445-2	답	10	445-6	9	송환	광주시 서구 상무누리로 33,104동902호 (치평동,갤러리303APT)			
토지	황룡면 금호리	453	공장	79	453-1	85	송환	광주시 서구 상무누리로 33,104동902호 (치평동,갤러리303APT)			
토지	황룡면 금호리	455	답	9	455-1	5	송환	광주시 서구 상무누리로33,104동902호 (치평동,갤러리303APT)			
토지	황룡면 금호리	456	대	111	456-1	105	김용경	장성군 황룡면 금호리 282			
토지	황룡면 금호리	457-3	답	17	457-4	15	김석중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916-20			
토지	황룡면 금호리	458	답	79	458	79	장윤진	장성군 황룡면 금동길 60-9			
토지	황룡면 금호리	524-6	대	147	524-9	154	송환	광주시 서구 상무누리로 33,104동902호 (치평동,갤러리303APT)			
토지	황룡면 금호리	524-7	전	209	524-10	216	송환	광주시 서구 상무누리로 33,104동902호 (치평동,갤러리303APT)			
					524-11	268					

구분	대상토지				편입현황		소유자		관계인		관리 관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지번	편입면적 및 수량 (㎡,주,식)	성명	주소	성명	주소	
토지	황룡면 금호리	524-8	전	242	524-12	316	송환	광주시 서구 상무누리로 33,104동902호 (치평동,갤러리303APT)			
토지	황룡면 금호리	28	묘지	77	28-1 28-2	9 72	국	장성군			
토지	황룡면 아곡리	178-1	답	299	178-16	308	행주기씨거 산문중	행주기씨거산문중			
토지	황룡면 아곡리	178-14	구거	48	178-19	52	국	한국농어촌공사			
토지	황룡면 아곡리	178-2	답	138	178-17	138	양미경	장성군 황룡면 아곡리18			
토지	황룡면 아곡리	180-18	구거	3	180-28	3	국	한국농어촌공사			
토지	황룡면 아곡리	180-7	답	605	180-25	627	임희성	장성군 황룡면 아곡리 18			
토지	황룡면 아곡리	189-7	답	252	189-18	259	김이순	광주광역시 북구 우치로1번길 5-6(중흥동)			
토지	황룡면 아곡리	191-11	대	158	191-16	150	국	한국농어촌공사			
토지	황룡면 아곡리	191-4	답	127	191-14	130	기우석	장성군 황룡면 아곡리 189			
토지	황룡면 아곡리	194-6	답	333	194-11	342	김필숙	광주시 북구 오치동10003 주공APT105-411			
토지	황룡면 아곡리	196-5	답	378	196-12	397	김향희	장성군 장성읍 매화4길 22-5			
토지	황룡면 아곡리	199-7	답	160	199-11	166	김명식	광주광역시 북구 금호로67번길 17(운암동)			
토지	황룡면 아곡리	200-6	답	98	200-11	97	김만식	장성군 북이면 오동길 42-7			
토지	황룡면 아곡리	202-5	답	483	202-13	485	심재원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두루봉로33-37 105동1901호			
토지	황룡면 아곡리	204	답	524	204	524	김소영	광주시 북구 우산동631-1 현대APT102동103호			
토지	황룡면 아곡리	204-2	천	51	204-2	51	김소영	광주시 북구 우산동631-1 현대APT102동103호			
토지	황룡면 아곡리	206-15	답	76	206-20 206-21	31 39	홍문선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356-29			

구분	대상토지				편입현황		소유자			관계인		관리 관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지번	편입면적 및 수량 (㎡,주,식)	성명	주소	성명	주소		
토지	황룡면 아곡리	421-5	답	57	421-14	58	임옥수	장성군 황룡면 아곡리 367				
토지	황룡면 아곡리	421-6	답	109	421-15	102	장언식	광주시 광산구 월계757-5 첨단모아아파트 101-1006				
토지	황룡면 아곡리	421-7	답	102	421-16	96	이한진	장성군 황룡면 아곡리 379				
토지	황룡면 아곡리	421-8	답	341	421-17	332	김종남	장성군 황룡면 아곡리 462				
임야	황룡면 아곡리	120-1	임야	315	120-2	43	행주기씨거 산문중	행주기씨거산문중				
					120-3	1129						
임야	황룡면 아곡리	121	임야	1091	121	1091	김종원	장성군 황룡면 아곡리 74	김인덕	장성군 황룡면 추암로 121-38		
토지	북하면 단전리	186-21	답	100	186-21	100	김지훈	광주시 서구 내방로349,1327호 (화정유타유블레스)				
토지	서삼면 대덕리	206-1	답	715	206-1	715	농업법인 주식회사 부농	강원 속초시 동해대로4236,1810호 (교동,아남프라자)				
토지	황룡면 금호리	30-7	구거	38	30-22	69	국	농림축산식품부				
토지	황룡면 금호리	30-8	구거	56	30-23	88	국	농림축산식품부				
토지	황룡면 금호리	180-14	구거	188	180-29	186	국	농림축산식품부				
토지	황룡면 아곡리	178-5	구거	57	178-18	57	국	농림축산식품부				
토지	황룡면 아곡리	180-8	도로	34	180-26	34	국	농림축산식품부				
토지	황룡면 아곡리	180-9	도로	18	180-27	34	국	농림축산식품부				
토지	황룡면 아곡리	189-9	도로	62	189-19	80	국	농림축산식품부				
토지	황룡면 아곡리	189-11	구거	21	189-20	23	국	농림축산식품부				
토지	황룡면 아곡리	191-5	구거	42	191-15	47	국	농림축산식품부				
토지	황룡면 아곡리	194-8	구거	19	194-12	19	국	농림축산식품부				

구분	대상토지				편입현황		소유자		관계인		관리 관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지번	편입면적 및 수량 (㎡,주,식)	성명	주소	성명	주소	
토지	황룡면 아곡리	194-9	도로	35	194-13	37	국	농림축산식품부			
토지	황룡면 아곡리	196-6	구거	19	196-13	18	국	농림축산식품부			
토지	황룡면 아곡리	199-8	구거	14	199-12	13	국	농림축산식품부			
토지	황룡면 아곡리	199-9	구거	32	199-13	34	국	농림축산식품부			
토지	황룡면 아곡리	200-7	구거	87	200-12	102	국	농림축산식품부			
토지	황룡면 아곡리	200-8	도로	199	200-13	177	국	농림축산식품부			
토지	황룡면 아곡리	200-8	도로	199	200-14	39	국	농림축산식품부			
토지	황룡면 아곡리	421-9	도로	18	421-18	19	국	농림축산식품부			
토지	황룡면 아곡리	421-10	구거	16	421-19	16	국	농림축산식품부			
토지	황룡면 아곡리	421-11	도로	14	421-20	13	국	농림축산식품부			
토지	황룡면 금호리	512-2	도로	385	512-8	402	국	국토교통부			
토지	황룡면 금호리	512-2	도로	385	512-9	425	국	국토교통부			
토지	황룡면 금호리	519	도로	152	519-3	150	국	국토교통부			
토지	황룡면 금호리	519	도로	152	519-4	136	국	국토교통부			
토지	황룡면 금호리	519-2	도로	159	519-5	114	국	국토교통부			
토지	황룡면 금호리	519-2	도로	159	519-6	155	국	국토교통부			
토지	황룡면 아곡리	503-43	전	881	503-113	213	국	전라남도			
토지	황룡면 아곡리	503-43	전	881	503-114	918	국	전라남도			
토지	황룡면 아곡리	510-1	도로	72	510-3	491	국	국토교통부			

지장물 조서

번호	소재지		지 번	단위	수량	편입물건				비 고
						당 초		변 경		
						물건명	규격	물건명	규격	
1	황룡면	아곡리	199-7	주	2	느릅나무		느릅나무		
2	황룡면	아곡리	503-43	㎡	85	퇴비사	철재7.8*10.9	퇴비사	철재7.8*10.9	
					23	축사(건사)	철재7.6*3	축사(건사)	철재7.6*3	
				식	1	건사		건사		
				m	35	울타리		울타리		
				주	2	감나무		감나무		
				㎡	8	소나무		소나무		
				주	39	오기피		오기피		
				주	16	층층나무		층층나무		
				m	5	개나리울타리		개나리울타리		
				㎡	24	초석잠		초석잠		
				주	8	산수유나무		산수유나무		
				주	3	철쭉		철쭉		
3	황룡면	금호리	204	주	295	매실나무		매실나무		
					95	무궁화울타리		무궁화울타리		
					3	미류나무		미류나무		
				주	5	밤나무		밤나무		
4	황룡면	금호리	30-6	주	9	매실나무		매실나무		
					2	은행나무		은행나무		
					22	감나무		감나무		
					1	고욤나무		고욤나무		
					4	배롱나무		배롱나무		
					2	엄나무		엄나무		
5	황룡면	금호리	31-5	㎡	17	창고	(철콘스라브) 4.1*4.1	창고	(철콘스라브) 4.1*4.1	
					1	집수정		집수정		
					5	감나무		감나무		
6	황룡면	금호리	181-1	주	113	사과나무		사과나무		
					1	소형관정		소형관정		
7	황룡면	금호리	217-10외	주	3	히말리아시다		히말리아시다		
					3	느티나무		느티나무		

번호	소재지		지 번	단위	수량	편입물건				비고
						당 초		변 경		
						물건명	규격	물건명	규격	
8	향릉면	금호리	217-7	주	3	히말리아시다		히말리아시다		
9	향릉면	금호리	174-5	주	1	대추나무		대추나무		
10	향릉면	금호리	179-3	식	1	콘테이너		콘테이너		
				㎡	38	창고	(철파이프강판) 5.5*6.9	창고	(철파이프강판) 5.5*6.9	
				m	10	울타리	(철파이프철망)	울타리	(철파이프철망)	
				주	72	드릅나무		드릅나무		
				주	2	살구나무		살구나무		
				주	2	복숭아나무		복숭아나무		
				주	5	감나무		감나무		
				주	1	꾸지뽕나무		꾸지뽕나무		
				주	6	매실나무		매실나무		
				주	1	옷나무		옷나무		
				주	1	산수유나무		산수유나무		
				주	2	자두나무		자두나무		
				주	3	대추나무		대추나무		
				주	1	밤나무		밤나무		
				주	1	골단초		골단초		
				주	2	뽕나무		뽕나무		
11	향릉면	금호리	180-3	주	4	감나무		감나무		
12	향릉면	금호리	180-4	주	3	감나무		감나무		
13	향릉면	금호리	180-8	㎡	34	관리사	판넬조판넬 8.5*3.3+2*2.9	관리사	판넬조판넬 8.5*3.3+2*2.9	
				㎡	72	관리사차양	철파이프비닐 9.0*8.0	관리사차양	철파이프비닐 9.0*8.0	
				㎡	3	창고	판넬조판넬 2*1.5	창고	판넬조판넬 2*1.5	
				식	1	건사	철파이프판넬	건사	철파이프판넬	
				식	1	모터함	조적조	모터함	조적조	
				식	1	물탱크	1톤	물탱크	1톤	
				㎡	36	쇄석		쇄석		
				식	1	cctv		cctv		

번호	소재지		지 번	단위	수량	편입물건				비 고
						당 초		변 경		
						물건명	규격	물건명	규격	
				식	1	화단	자연석	화단	자연석	
				주	1	동백나무		동백나무		
				주	1	지두나무		지두나무		
				주	2	살구나무		살구나무		
				주	18	단풍나무		단풍나무		
13	황룡면	금호리	180-8	주	2	복숭아나무		복숭아나무		
				주	1	매실나무		매실나무		
				주	3	벗나무		벗나무		
				주	4	무궁화		무궁화		
				주	1	층층나무		층층나무		
				주	1	배나무		배나무		
				주	1	각시꽃나무		각시꽃나무		
				주	10	철쭉		철쭉		
				주	4	장미		장미		
				주	1	사과나무		사과나무		
				주	1	키위나무		키위나무		
				주	1	포도나무		포도나무		
				주	1	깽깽이		깽깽이		
				주	1	쥐똥나무		쥐똥나무		
				주	3	앵두나무		앵두나무		
				주	1	자귀나무		자귀나무		
14	황룡면	아곡리	191-4	주	285	황금편백묘목		황금편백묘목		
				주	55	황금실편백		황금실편백		
				주	35	황금편백		황금편백		
				주	200	옥향		옥향		
					17	감나무		감나무		
					15	배나무		배나무		
15	황룡면	아곡리	421-5	주	3	감나무		감나무		
16	황룡면	아곡리	421-6	주	1	감나무		감나무		
17	황룡면	금호리	458	주	6	사과나무		사과나무		
				식	1	간판	철재	간판	철재	

번호	소재지		지 번	단위	수량	편입물건				비 고
						당 초		변 경		
						물건명	규격	물건명	규격	
18	황룡면	금호리	217-12		21	저온저장고	차양 및 바닥포함	저온저장고	차양 및 바닥포함	
				식	1	정화조	관로포함	정화조	관로포함	
				주	36	사과나무		사과나무		
				주	21	웃나무		웃나무		
				주	18	감나무		감나무		
				주	6	드릅나무		드릅나무		
				주	1	느티나무		느티나무		
19	황룡면	금호리	218		505	연		연		
					2	배롱나무		배롱나무		
20	황룡면	금호리	456	m	26	울타리	철파이프능형망	울타리	철파이프능형망	
				식	1	철계단		철계단		
21	황룡면	금호리	524-8	m	50	울타리		울타리		
22	황룡면	금호리	524-6	m ²	17	블록10*1.4		블록10*1.4		
				식	1	견사		견사		
				주	4	감나무		감나무		
22	황룡면	금호리	443	m	40	울타리		울타리		
				주	1	감나무		감나무		
				주	33	아로니아		아로니아		
				주	3	사과나무		사과나무		
				주	7	매실나무		매실나무		
				주	2	골단초		골단초		
				주	1	헛개나무		헛개나무		
				주	1	태산목		태산목		
				주	1	참빗살나무		참빗살나무		
				주	1	수국		수국		
				주	3	웃나무		웃나무		
				주	2	목련		목련		
				주	2	대추나무		대추나무		
				주	1	뽕나무		뽕나무		

전라남도 고시 제2021-364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인가 고시

도시침수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우수를 적정하게 처리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하수도법」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여수시 도원사거리 일원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 설치인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8. 5.

전라남도지사

인가내용

사업의 목적		도시침수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우려로 우수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도민위생 향상에 기여	
시설의 명칭		도원사거리 일원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	
사업시행자	성명	여수시장	
	주소	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로 1 (학동)	
사업시행지	위치	전라남도 여수시 도원사거리 일원	
	면적	8,699㎡(빗물펌프장 3,994㎡, 관로 4,705㎡)	
사업내용		빗물펌프장 및 우수관로 정비 (빗물펌프장 : Q=300㎡/분, 관로개량 L=4.1km)	
처리구역 및 배수구역		처리구역	배수구역
		265ha	남해(가막만)
사업시행기간		2021년 ~ 2023년	

※ 관계 도서 열람 장소: 여수시 하수도과(061-659-4986)

전라남도 고시 제2021-365호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사업계획 변경 고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장흥군 지적재조사지구 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1. 8. 5.

전라남도지사

1. 대 상 사 업 : 2021년 장흥군 지적재조사사업
2. 사업시행자 : 장흥군수
3. 사업지구 변경내용

사군	지구명	위 치	변경내용				비 고 (증감률%)
			구 분	당 초	변 경	증·감	
장흥군	관산 외동 (관흥)지구	장흥군 관산읍 외동리 748-5번지 일원	필지수	327	341	증 14	증 4.3
			면적(㎡)	127,813	130,719	증 2,906	증 2.3

4. 변경사유 : 사업지구 필지 추가로 인한 필지수 및 면적 변경
5. 토지조서 : 도보게재 생략 (해당 시·군청에 비치)
6. 지정도면 : 도보게재 생략 (해당 시·군청에 비치)
7. 열람부서 : 장흥군청 민원봉사과 지적팀 ☎ 061-860-5641
8. 기 타 :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전라남도 고시 제2021-366호

전라남도 지정문화재 지정 고시

「문화재보호법」 제70조와 「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제5조, 제16조에서 제18조, 동 조례 시행규칙 제10조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라남도 지정문화재(문화재자료) 지정을 고시합니다.

2021. 8. 5.

전라남도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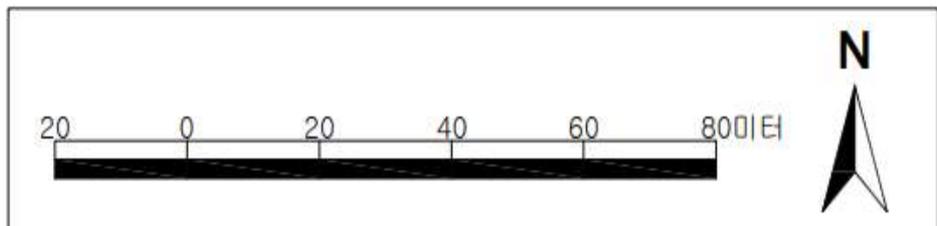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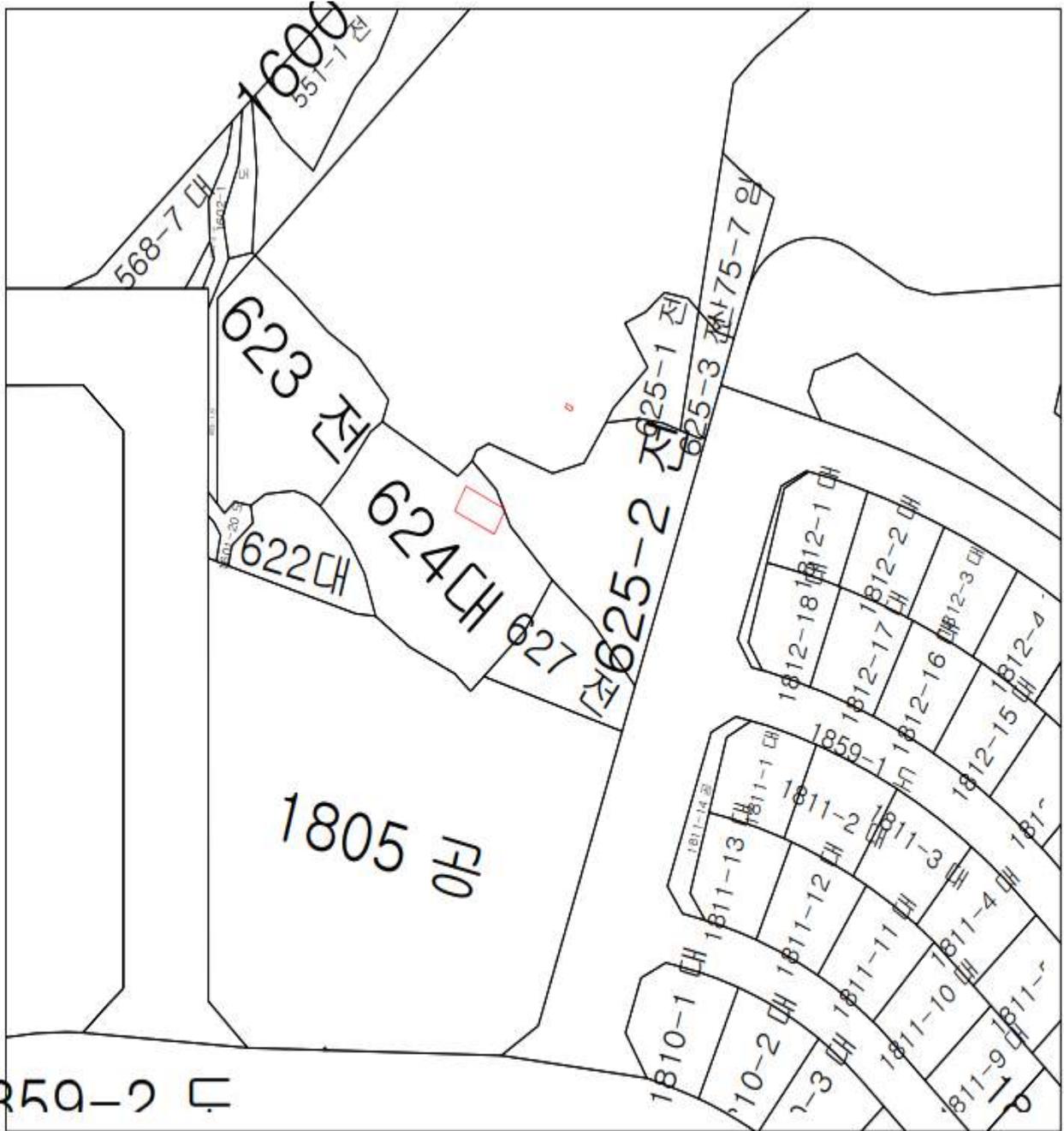
- 1. 고 시 명 : 전라남도 지정문화재 지정 고시
- 2. 고 시 일 : 2021. 8. 5
- 3. 고시내용

- 문화재명 : 여수 오충사와 이순신 자당 기거지(麗水 五忠祠와 李舜臣 慈堂 起居址)
- 지정종별 :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295호
- 소재지 : 전라남도 여수시 웅천로 354(웅천동 624) 일원
- 시대 : 오충사(1923년 복설), 정대수 비(1881년), 이순신 자당 기거지(조선)
- 면적 : 3필지, 964.56㎡
- 소유자(관리자) : 압해정씨월천공파종친회, 여수시
- 지정사유
 - 1847년 가곡사로 설립한 뒤 1868년 훼손되었고, 1923년 현 위치에 오충사(정면 3칸, 측면 1칸)로 재건립하여 충무공 이순신, 정철, 정린, 정춘, 정대수 등 다섯 충신을 배향한 호국 유적. 영의정 홍순목이 비문을 지어 1881년 세운 정대수 비는 임진·정유 난 때 참전 행적을 자세히 기록한 금석문 자료
 - 이순신의 모와 가솔들이 압해정씨 집안의 도움을 받아 약 4년간 피난 생활을 했던 ‘이순신 자당 기거지’ 는 이순신의 지극한 효심을 알 수 있고, 오충사와 관련된 역사유적
- 지정구역 지번별 면적 조서(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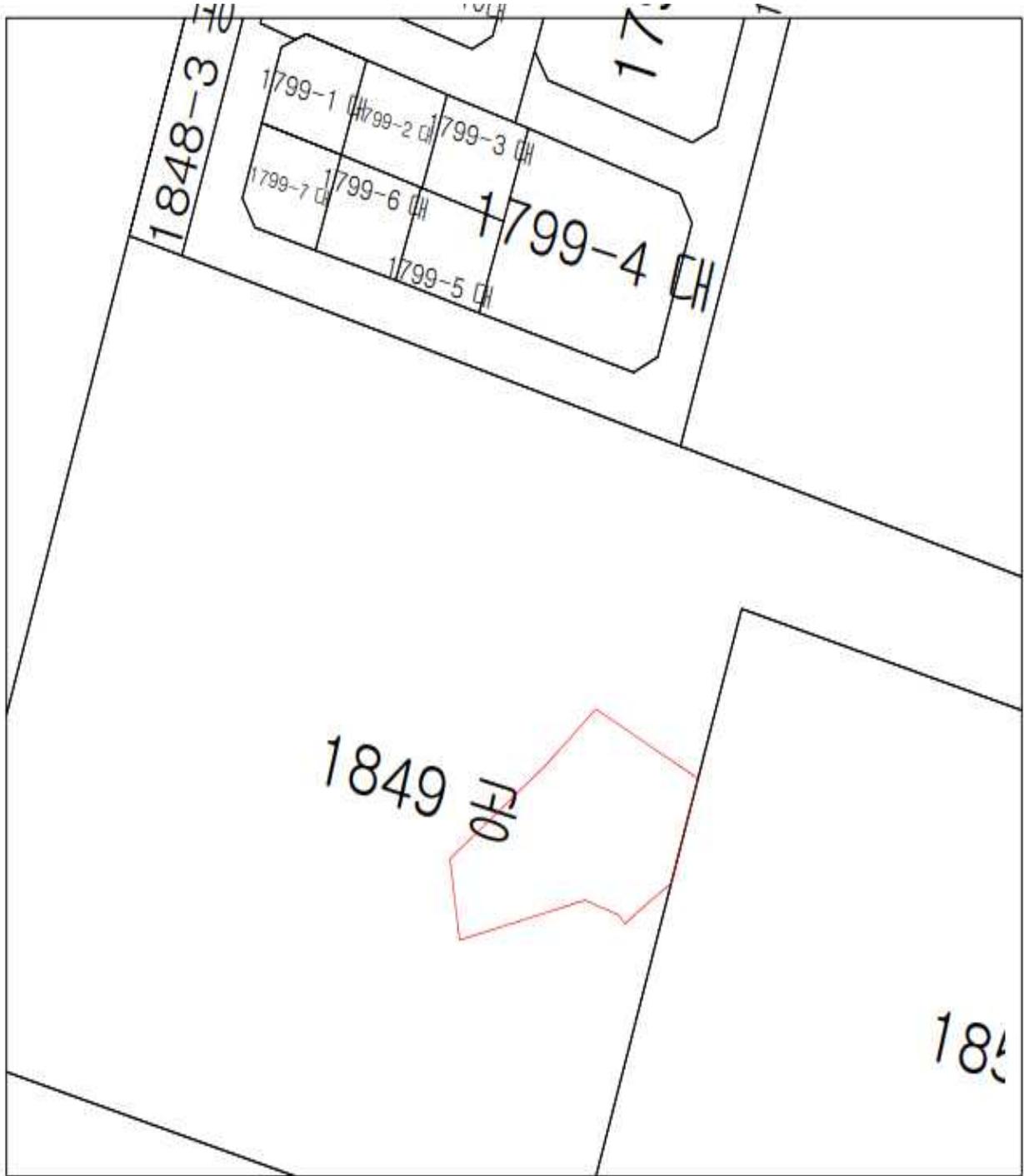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관리자	
						성명	주소
계				33,340	964.56		
1	여수시 웅천동	624	대	922	33.76	창원정씨월천공파 종친회	여수시 웅남길 6-3
2	여수시 웅천동	산75-1	임	12,917	0.8	〃	〃
3	여수시 웅천동	1849	공원	19,501	930	여수시	여수시 시청로 1

○ 지정구역 도면

[오층사 구역]



[이순신 차당 기거지 구역]



◇ 범례 ◇

문화재구역

연속지적도

20 0 20 40 60 80미터

N

A scale bar showing 0, 20, 40, 60, and 80 meters. To the right is a north arrow pointing upwards, labeled 'N'.

전라남도 고시 제2021-367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 허가 고시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비관리청 항만공사에 대해 시행을 허가하고 같은 법 제9조제9항에 따라 시행허가를 고시합니다.

2021. 8. 5.

전라남도지사

-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고흥군수(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고흥군청로1)
- 항 만 명 : 녹동신항
- 공사의 명칭 : 녹동신항 생활밀착형숲(정원) 조성
- 공사시행 목적 : 녹동신항 내 친수시설 생활밀착형숲(정원) 조성으로 항만이용자에게 쾌적한 환경 제공
- 공사시행 장소 :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봉암리 3909-2번지
- 공사개요(규모) : 생활밀착형숲(정원) 3,145.5㎡
- 공 사 기 간 : ' 21. 7. ~ ' 21. 12.
- 총 공 사 비 : 394백만원

전라남도 공고 제2021-773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 등록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등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1. 8. 5.

전라남도지사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사항】

등록번호	단체명	소재지	대표자	주요사업	비고
제2021-1- 전라남도-08호	21세기전남교육사랑협회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신남로 229	강윤례	- 인간교육프로그램 연구·개발 - 학교안전교육사업 - 우리역사 바르게 알기 교육 및 경연대회 - 진로체험활동 프로그램 지원 - 그 밖의 협회의목적달성에 부합되는	단체명칭 변경

전라남도 공고 제2021-789호

건설기술엔지니어링업 등록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아래 업체를 건설기술엔지니어링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등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1. 8. 5.

전라남도지사

상호명	대표자	등록번호	영업 소재지	전문분야	등록일
주식회사 하론	권정윤	전남-2-325호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40, 6층 604-5호 (빛가람동, 한빛타워주1동)	설계·사업관리 (설계등용역 일반) *계획·조사·설계 포함	2021. 7. 30.

전라남도 공고 제2021-791호

도시가스 공급규정 개정 공고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에 따라 전라남도 도시가스 공급규정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공고합니다.

2021. 8. 5.

전라남도지사

1. 관련근거 :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공급규정)
2. 개정내용 : 다음
3. 적용일시 : 2021. 7. 1.

도시가스 공급규정 일부개정(안)

도시가스 공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온압보정장치에 대한 검침에 의하여 가스사용자의 해당월분 사용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를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온압보정장치에 대한 검침에 의하여 가스사용자의 해당월분 사용량(㎥)을 결정해야 한다” 로, “별표 6 온압보정계수를 적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를 “전라남도지사가 고시한 온압보정계수를 적용하여 결정해야 한다” 로 한다.

제17조제6항 중 “별표 6을” 을 “전라남도지사가 고시한 온압보정계수를” 로 한다.

제19조의 본문 중 “산업용” 을 “산업용(I · II · III · IV)” 로, “연료전지용” 을 “연료전지용(I · II)” 로 한다.

제19조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0. 연료전지용 I 요금은 연료전지용 II 요금의 용도를 제외한 가정용 등 연료전지에 적용한다.

제19조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1. 연료전지용 II 요금은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라 연료전지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발전사업용 연료전지에 적용한다.

별표 3은 별지와 같다.

별표 6은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1장 총 칙

- 제1조 (목적)
- 제2조 (의무)
- 제3조 (적용)
- 제4조 (용어의 정의)

제2장 사용신청 및 계약

- 제5조 (가스사용 및 변경신청)
- 제6조 (계약의 성립, 변경 및 시설분담금)
- 제7조 (승낙의 의무)
- 제8조 (계약의 준수)
- 제9조 (해약)
- 제10조 (계약소멸후의 관계)

제3장 공사 및 검사

- 제11조 (공사시행)
- 제12조 (공급전안전점검 및 연소기 등의 연결)
- 제13조 (가스계량기)
- 제13조의2 (온압보정장치)
- 제14조 (공사비)

제4장 검침 및 사용량 산정

- 제15조 (검침)
- 제16조 (계량의 단위)
- 제17조 (사용량의 산정)

제5장 요 금

- 제18조 (요금)
- 제19조 (가스요금 용도 구분)
- 제20조 (요금의 수납)
- 제21조 (요금의 납기와 수납방법)
- 제22조 (10원단위 미만처리)
- 제23조 (이의 신청)
- 제24조 (요금계산의 정정)

제25조 (보증금)

제6장 공 급

제26조 (공급가스의 열량 등)

제27조 (공급 또는 사용의 제한)

제28조 (공급중지)

제29조 (공급중지 등의 해제)

제7장 안 전

제30조 (가스사용자의 안전관리 책임)

제31조 (가스공급자의 안전관리 및 개인정보의 보호)

제8장 기 타

제32조 (문서보관)

제33조 (사용장소의 출입)

[별표 1] 가스계량기의 등급별 표준가스소비량

[별표 2-1] 시설분담금

[별표 2-2] 시설분담금(일반, 취사전용, 수요가부담)

[별표 3] 가스요금표

[별표 4] 가스계량기 교체비용

[별표 5] 해제수수료

[별표 6] 도시가스회사별 온압보정계수

[별표 7] 도시가스 요금 경감대상 사회복지시설

[별표 8] 도시가스 요금 경감대상 사회적 배려대상자

[별지 1] 듀얼설비 설치(변경) 통지서 양식

[별지 2] 도시가스 공급 신청(계약)서

[별지 3] 도시가스 사용 신청(계약)서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전라남도내 일반도시 가스사업자(목포도시가스(주), 대화도시가스(주), 전남도시가스(주), (주)해양에너지) (이하 “회사” 라 한다)가 가스사용자 또는 가스사용신청자의 요청에 따라 도시가스 (이하 “가스” 라 한다)를 공급함에 있어 안전관리·가스요금·공사비 및 그 밖의 가스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의 징수방법 및 공급조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1. 15.>

제2조(의무) ① 회사는 가스 공급사업이 공익사업임을 명심하여 고객에게 친절하고 성실하게 봉사한다.

② 이 규정을 적용·시행함에 있어 회사는 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과 그 밖의 관계법규 및 행정지시를 철저히 준수하며 이에 따른 보고·점검실시·기록보존·검사협조 등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③ 회사는 자체적으로 고객전담부서(고객봉사실)를 설치하여 각종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즉시 민원인에게 통지하며, 민원접수대장을 비치하여 그 처리결과를 기록관리한다.

④ 회사는 신속하고 안전한 가스 공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관계법규와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사유를 들어 부당하게 가스 공급을 거절하거나 가스 공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1. 00.>

제3조(적용) 이 규정은 전라남도지사가 고시한 공급권역내 회사와 가스 사용자 또는 가스사용 신청자, 가스시설설치 시공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6. 1. 1.>

제4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열량” 이라 함은 온도 섭씨 0도 및 압력 101.325kPa(10,332mmAq)의 상태에서 건조한 가스 1m³의 총열량을 말한다.
2. “최저열량” 이라 함은 가스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가스열량의 최저치를 말한다.
3. “최고열량” 이라 함은 가스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가스열량의 최고치를 말한다. <신설 2012. 7. 1.>
4. “월간가중평균열량” 이라 함은 한국가스공사가 측정한 열량과 공급량을 월간으로 가중 평균하여 계산한 열량을 말한다. <신설 2012. 7. 1.>
5. “기준열량” 이라 함은 천연가스 열량제도 도입에 따라 변화하는 천연가스 열량에 상응한 계량기 등급산정 및 표준소비량 환산에 적용되는 열량을 말한다. <신설 2012. 7. 1.>
6. “압력” 이라 함은 가스사용자에게 공급되는 가스를 정압기 출구·가스공급시설의 끝 부분의 배관 또는 연소기 입구에서 측정한 계기압력을 말한다.
7. “최고압력” 이라 함은 가스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가스압력의 최고치를 말한다.
8. “최저압력” 이라 함은 가스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가스압력의 최저치를 말한다.
9. “가스시설공사” 라 함은 공급 및 사용시설의 신설·개조·보수·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10. “가스사용자” 라 함은 가스사용 시설의 사용자·소유자·관리자를 말한다.

11. “수요자” 라 함은 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12. “공급의 중지” 라 함은 가스사용자의 신청 또는 회사 직권에 의한 가스공급의 일시중단을 말한다.
13. “지역정압기” 라 함은 다수인의 가스사용자에 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회사가 설치하는 정압기를 말한다.
14. “전용정압기” 라 함은 단독사용자 또는 특정한 가스사용자가 가스를 공급받기 위하여 설치하는 정압기를 말한다.
15. “수요자의 시간당 표준가스소비량” 이라 함은 각 연소기의 명판에 표시된 시간당 표준가스소비량의 합계를 말한다.
16. “응급조치” 라 함은 돌발적인 사고에 의한 가스배관의 손상으로 가스가 누출되거나 누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고예방을 위한 가스공급의 제한·중지 등의 임시조치를 말한다.
17. “인입배관” 이라 함은 도로와 병행하는 배관으로부터 가스사용자 소유의 토지 경계까지의 배관을 말한다.
18. “시설분담금” 이라 함은 가스사용신청자 또는 변경신청자가 가스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것으로써 일반시설분담금, 취사전용시설분담금,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등으로 구분되며, 도시가스 시설분담금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전라남도 고시)에서 정한 분담금을 말한다. <신설 2011. 12. 20.>
19. “일반계량기” 라 함은 사용량 측정을 목적으로 하는 계량기를 말한다. <신설 2016. 1. 1.>
20. “특수계량기” 라 함은 사용량 측정 기능 외 계량값을 유선이나 리드스위치 또는 무선모뎀 등을 활용하여 가스를 자동으로 차단할 수 있거나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계량기를 말한다. <신설 2016. 1. 1.>
21. “폐지” 라 함은 가스사용자의 신청 또는 안전관리를 위하여 회사가 인입배관의 임의지점을 절단하고 CAP 등으로 용접, 용착 등 마감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7. 9. 1.>
22. “해지” 라 함은 전출 등의 사유로 가스사용자의 신청 또는 안전관리를 위하여 회사가 인입배관의 절단 없이 가스공급을 중지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7. 9. 1.>
23. “듀얼연료설비” 란 하나의 공정에서 도시가스 외에 다른 연료의 사용이 가능한 설비를 말한다. <신설 2019. 11. 15.>
24. “연료대체” 란 한국가스공사의 요청으로 듀얼연료설비에 도시가 대신하여 다른 연료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9. 11. 15.>

제2장 사용신청 및 계약

- 제5조(가스사용 및 변경신청) ① 가스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 또는 가스사용 상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문서 또는 기타 방법으로 회사에 신청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수요자로부터 가스공급 또는 사용변경신청을 받은 때에는 수요자의 시간당 표준가스소비량 및 장래 가스사용 예정량을 고려하여 별표 1에 정한 기준에 따

라 가스계량기의 등급을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가스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 또는 가스사용 상황을 변경하고자 신청을 한 경우 공동 주택을 제외하고는 사용시설의 고객(소유자) 명의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요금 및 기타 채무에 대하여 고객(소유자)의 보증이 있거나 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예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고객(가스사용자 또는 소유자) 명의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의 성립, 변경 및 시설분담금) ① 가스공급과 사용에 관한 계약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회사와 신청자간 공급계약을 체결한 때에 성립하며, 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분담금 납부일은 계약의 체결일로 한다.

②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자는 별표 2-1에서 정한 시설분담금 또는 전라남도지사가 고시한 별표 2-2의 시설분담금을 공급 계약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와 협의하여 가스공급 개시 전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0.>

③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해약 후 동일 장소에 다시 가스사용을 신청하는 자로서 월 사용예정량이 해약 전의 표준가스 소비량을 초과할 경우 초과된 가스소비량에 대한 시설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인입배관이 폐지된 경우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신청자와 동일한 것으로 보며 시설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급 및 사용시설에 변동이 없는 한 시설분담금은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7. 9. 1.>

④ 제1항에 따라 신규 공급계약 및 계약을 변경 체결할 경우 가스 수급의 안정성을 위해 가스사용자와 협의하여 월별 사용량에 대한 약정물량을 체결 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천연가스 공급규정에 준하여 $\pm 10\%$ 이내로 한다. <개정 2017. 9. 1.>

제7조(승낙의 의무) ① 회사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하여야 하며,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영업일기준)에 공급가능여부 및 공급예정시기를 신청자에게 서면(전자적 방법에 의한 서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가스공급 승낙 통지 시에는 사용계약 가능 시기 및 계약조건 등 필요사항을 함께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00.>

② 회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사용신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낙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00.>

1. 가스 수급의 불균형, 공급압력 저하 등으로 가스의 안정적 공급 또는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경우나 신규 공급관 설치를 요하는 지역으로서 제1항에 따라 가스공급 승낙 및 공급 예정시기를 통지 받지 않고 공사를 시행한 경우. <개정 2020. 11. 00.>
2. 인근배관으로부터 신규 공급관 설치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동시신청 수요자가 공급관(인입공급관 포함) 연장 100m당 30가구(난방용 계량기 설치기준)에 미달하는 지역. 다만, 해당 지역에 대한 시설분담금이 고시된 경우에는 별표 2-2의 시설분담금을 납부하면 가스공급을 승낙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 12. 1., 2011. 12. 20., 2012. 4. 13.>

3. 제2호 단서의 최소 세대수는 해당 공급신청지역의 신청세대수가 아닌 잠재 수요세대수를 말하며, 수요가부담시설분담금(별표 2-2)을 산정하여 3년간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만, 잠재수요세대수는 공급신청 지역 내에 미신청 세대(심야전기, 폐가 제외)와 건축허가 및 건축물 공사 중인 토지를 말한다. <신설 2018. 4. 11.>
4. 법 또는 그 밖의 관계법규에서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공사가 제한되어 있을 때
5. 가스사용 신청 장소가 철도, 상·하수도, 하천, 암반 등 지형이 특수하여 가스공급시설 설치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시설의 안전 확보가 곤란한 경우
-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공익상 가스공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사는 가스를 공급한다. <개정 2007.12. 1., 2016. 1. 1.>

제8조(계약의 준수) ① 가스사용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가스요금 및 그 밖의 이 규정에 정한 제 징수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2. 가스공급 및 사용시설의 관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다음의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5.>
 - 가. 가스공급 및 사용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
 - 나. 듀얼연료설비의 설치, 변경 또는 폐쇄
3. 가스공급 및 사용시설이 속한 건축물이 매매·임대·상속 등의 사유로 가스사용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가스사용자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또는 전화로 회사에 가스사용자 명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하며, 가스사용자 명의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 회사는 이전 가스사용자의 체납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법원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물건의 경우 소유권 이전일 이전 사용자의 체납요금은 변경된 가스사용자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5. 그 밖의 이 규정에 정한 사항
-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회사는 가스 공급중지 예고 안내를 하고, 미납한 가스요금에 대하여 월 2%의 가산금을 일할 계산하여 요금납부 시까지 연간 2회까지 미납원금에 부과하며, 가산금을 부과하는 미납원금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07. 12. 1., 2008. 5. 20., 2009. 5. 15., 2015. 1. 1., 2016. 1. 1., 2018. 4. 11.>

* 연체료 : 미납원금×(2/100)×(체납일수/납기일이 속한 달의 일수) <개정 2017. 9. 1.>
-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의 부당행위에 대한 위약금을 징수하며, 이로 인해 가스안전사고 등의 위해가 발생하는 경우 가스사용자는 그에 상응한 책임을 진다.
 1. 사용료를 감면할 목적으로 계량기 임의조작 및 파손, 무단교체 등 : 계량기 교체비용 + 전년 동월사용료의 5배
 2. 봉인파손사용 : 전년 동월사용료의 3배
 3. 당사의 승인 없이 무단사용 : 전년 동월사용료의 5배
 4. 계량기 이전배관 불법 연결사용 : 전년 동월사용료의 5배
 5. 계량기 무단이설 : 전년 동월사용료의 3배

6. 부정시공사용 : 전년 동월사용료의 5배

7. 미납요금을 면탈할 목적으로 동일고객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고객명으로 변경 신청시 : 미납요금의 1배

단, 전년 동월 사용료를 계측할 수 없을 때에는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사용료를 월사용료로 하여 적용하며, 전년 동월 및 최근 3개월 이내 평균 사용량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사용료의 산정은 가스연소기의 총 최대가스 소비량에 의거 산정한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라 듀얼연료설비를 보유한 사용자는 회사와 별도의 연료대체 계약을 체결하고, 연료대체 시행 관련 다음의 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1. 15.>

1. 듀얼설비의 설치 및 변경 또는 폐쇄 시 [별지 1]에 따른 통지
2. 연료대체 제도 운영을 위한 필요 자료 제출
3. 한국가스공사의 연료대체 요청에 따른 연료대체 시행 참여
4. 기타 시행 관련 사항은 한국가스공사 연료대체 시행 지침에 따라 시행

제9조(해약) ① 가스사용자가 가스사용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폐지예정일 3일 이전에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는 폐지예정일에 폐지하고, 그 폐지일을 해약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 없이 회사가 그 폐지일 이후에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접수한 날을 해약일로 한다.

② 가스사용자가 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하고 가스사용을 폐지한 경우에는 회사가 가스공급을 종료시키기 위한 조치를 행한 날을 해약일로 한다.

③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가스공급을 중지한 후 6개월 이내에 가스사용자가 중지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한 경우는 가스공급중지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을 해약일로 한다.

④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체납이 승계되지 않도록 가스사용자가 가스사용시설이 설치된 건축물을 매매한 경우 또는 임대차 계약에 따라 신규 임차인이 사용할 경우 매매일과 임차일을 전 가스사용자와의 해약일로 한다. <신설 2018. 4. 11.>

⑤ 회사는 고객이 요금을 납기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약일 10일전까지 고객에게 요금납부를 최고한 후 공급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⑥ 가스사용계약이 해지된 고객이 미납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다른 장소에서 가스 사용을 신청하는 경우, 회사는 가스공급을 거절할 수 있다. 다만, 미납요금 납부 시에는 즉시 가스를 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5. 20.>

제10조(계약소멸후의 관계) ① 계약기간중의 요금 및 그 밖의 채권 채무사항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해약 후에도 소멸하지 아니한다.

②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해약 후에도 회사 소유로 설치되어 있는 공급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는 설치 장소의 토지점유자 또는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그 장소에 계속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된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안전하게 폐쇄조치 할 수 있다.

제3장 공사 및 검사

제11조(공사시행) ① 수요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 경계선 밖의 가스공급시설의 설치·변경 공사는 회사가 시행하고, 수요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 경계선 안의 가스공급시설(사용자공급관) 및 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는 수요자가 자율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시공자를 선정하여 시행한다. 수요자가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 시공자는 제7조제1항에 따라 회사로부터 가스공급 승낙 및 공급 예정시기를 통지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5. 20., 2020. 11. 00.>

② 시공자는 제1항에 따른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기존 관로로부터의 분기점 및 분기일시 등 착공 전 필요한 사항을 회사와 사전에 협의하고, 회사 직원 입회하에 분기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회사는 입회 요청이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공급전안전점검 및 연소기 등의 연결) ① 사용자공급관 또는 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가 끝나면 수요자 또는 시공자는 회사에 가스공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는 법정검사 대상인 시설에 대하여는 법정검사 합격 여부 확인 후에, 법정검사 비대상 시설의 경우에는 안전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적합할 경우 즉시 가스를 공급하여야 한다. 만일 회사의 공급전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가스사고는 사용자에게 책임이 있다. <개정 2016. 1. 1., 2020. 11. 00.>

② 제1항에 따른 가스 공급 개시 전 연소기 설치자(제조사 포함)가 임시 가스공급을 요청하여 회사에서 임시로 사용을 허용하는 경우는 가스 공급을 개시한 것으로 보지 않으며, 이때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연소기 설치자(제조사 포함)가 책임을 진다. <신설 2016. 1. 1.>

③ 공급전안전점검의 기준, 절차 등 세부사항은 안전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0. 11. 00.>

제13조(가스계량기) ① 가스계량기의 설치는 1인(주택인 경우 1세대)의 가스 사용자에게 1개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가스사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와 용도별, 공정별 분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가스계량기를 각각 분리하여 2개 이상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5. 1. 1.>

② 가스계량기는 수요자가 당해 가스사용시설의 최고사용압력 및 최대가스사용량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도시가스사업법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맞도록 정확히 계량할 수 있고, 점검·검사·취급 등 안전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40등급 초과 대용량 계량기의 최초 설치 시에는 회사와 수요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고장이나 검정,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인하여 교체 설치할 때에는 회사가 가스계량기를 선정하여 설치하되, 추가 비용부담이 발생하는 경우 반드시 수요자의 의사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00.>

③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검정유효기간 도래 주택용 가스계량기(7등급 이하)의 검정교체는 회사가 실시하고, 주택용 계량기를 제외한 그 밖의 계량기(특수계량기)의 교체에 대해서는 가스사용자와 협의하여 매월 가스요금고지서에 별도 합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④ 10등급이상 계량기와 가정용 특수계량기를 설치하고 교체 비용을 매월 부담한 소비자가 계량기를 철거하거나 등급변경으로 인해 교체한 경우 회사는 기 납부한 비용을 전액 환급한다. 사업자는 공급계약 체결시 동 조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 4. 11.>

⑤ 가스사용자는 회사에 가스계량기의 성능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검사 결과 계량기의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용공차를 초과할 때에는 회사의 비용으로 신속하게 이를 교체 또는 수리한다. 가스사용자가 외부기관에 계량기 성능검사를 의뢰한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가스사용자가 부담한다. 다만 검사결과 사용공차를 초과 할 때에는 회사의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16. 1. 1.>

⑥ 주택용 계량기 중 일반 계량기가 아닌 특수한 계량기 설치시 회사는 일반계량기 관리기준에 준해 처리하며, 가스사용자가 특수한 계량기를 계속 사용하고자 할 경우 고장 및 유효기간 만료 등에 따른 계량기의 수리 또는 교체 비용은 가스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16. 1. 1.>

⑦ 제6항에 따른 특수계량기의 교체 또는 수리 비용은 가스사용자와 협의하여 가스요금 고지서에 별도 계상하여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

제13조의2 (온압보정장치)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가스사용자가 온압보정 장치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가스시설의 안전과 측정의 정확성 제고를 위하여 회사에 사전 통지하여야 하며, 가스사용자는 유지관리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4조(공사비) ① 회사는 시공자 또는 수요자로부터 공사위탁을 받은 경우 수요자가 부담하는 공사비를 건설표준품셈의 일위대가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② 가스계량기를 포함한 사용시설 공사비와 공동주택 등 토지경계선내의 가스사용자 소유의 공급시설 공사비는 수요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도로와 병행한 공급관 및 지역정압기 설치공사비는 회사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경제성 미달지역에서 수요자가 도시가스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2규정에 의거 수요자가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17. 9. 1.>

④ 인입배관 및 가스차단장치 공사비는 회사와 수요자간 협의에 의하여 50%범위 내에서 수요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11. 12. 20., 2012. 7. 1., 2012. 4. 13., 2015. 1. 1., 2017. 9. 1.>

1) 공사비는 m 별로 산출(압력별, 재질별, 관경별, 도로종류별) 적용한다.

2) 공사비 산정의 경우 건설표준품셈의 일위대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산정하되 배관부설에 필요한 자재, 폐기물 및 잔토처리, 되메우기, 인건비, 안전관리비, 도로 재포장 복구조건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3) 공사중 암반 및 지장물로 인해 추가 공사비가 소요될 경우 회사와 수요자가 상호 협의하여 할증 부분을 증감할 수 있다.

4) 신규 공급관과 병행하여 시행되는 인입배관의 공사비는 도로별 중앙을 기준으로 거리를 적용한다. 다만, 공사 완료 후 인입배관의 공사비는 실 거리를 기준으로 한다.

- ⑤ 공동주택 등의 토지경계선내의 가스사용자 소유의 공급시설 및 가스사용자 시설의 검사, 보수, 교체, 개량 및 관련법규 개정으로 인한 시설보강에 소요되는 비용은 가스사용자가 부담한다. 다만, 가스누설로 인한 누설부 차단 및 임시조치에 소요되는 응급조치비용은 회사가 부담하며, 응급조치 후 시설의 보강, 개·보수, 교체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가스사용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7. 9. 1.>
- ⑥ 가스사용자에 의하거나 굴착공사로 인하여 파손·멸실·변경을 요하는 공급시설의 복구 및 변경공사비는 원인행위자가 부담한다.
- ⑦ 수요자는 수요자의 요청에 의해 공사를 중지한 경우에는 이미 소요된 비용 및 공사의 중지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회사에 배상하여야 한다.
- ⑧ 수요자의 공사비부담으로 공급요청이 있을 경우 회사와 수요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도로와 병행한 공급관 공사비 및 수요가시설분담금에 대해서는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수요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12. 4. 13.>

제4장 검침 및 사용량 산정

제15조(검침) ① 가스사용량 검침과 요금고지서 송달은 회사가 매월 또는 격월 정례일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가스계량기가 실내에 설치된 경우 가스 사용자가 자가 검침을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취사용의 경우 가스사용자와 협의하여 분기, 반기로 검침 및 요금고지서 송달 주기를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2. 7. 1., 2015. 1. 1., 2018. 4. 11., 2019. 11. 15.>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별도 검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가스사용이 개시 또는 폐지되었을 때
2. 가스사용자의 변동이 있을 때
3. 가스계량기의 교체 또는 등급을 변경할 때
4. 사용량의 현저한 변동이 있어 가스사용자의 신청이 있을 때

③ 가스계량기가 실내에 설치되어 자가검침을 실시하는 경우 안전점검을 통해 계량기 지침이 상이하거나, 가스계량기 고장(3개월 지침 미변동 포함) 또는 가스사용자의 실수나 고의로 인한 임의기재 등으로 검침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회사는 확인 검침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

④ 원격검침계량기 등 특수한 계량기를 통해 요금을 고지할 때에 계량부와 지시부의 사용량이 다를 경우 계량부의 사용량을 우선 적용하며, 계량부와 지시부의 오차로 인한 요금 정산은 정산시점의 가스 요금표에 의한 단가를 적용하여 정산한다. <개정 2016. 1. 1.>

제16조(계량의 단위) 사용량의 계량단위는 노말세제곱미터(Nm³)로 하며 검침시 소수점 이하의 단위는 절사한다. <개정 2007. 12. 1., 2012. 4. 13.>

제17조(사용량의 산정) ① 회사는 가스사용자의 가스계량기에 대한 검침 또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온압보정장치에 대한 검침에 의하여 가스사용자의 해당월분 사용량(m³)을 결정해야 한다. 다만 제26조제1항 규정에 의한 최고압력 이하의 가스사용자중

별도의 보정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검침량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공하는 해당지역의 전라남도지사가 고시한 온압보정계수를 적용하여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07. 12. 1., 2009. 5. 15., 2013. 3. 1., 2016. 1. 1., 2021. 7. 30.>

* 사용량 = 검침량 × 온압보정계수

② 열량요금 사용량(MJ)은 제1항의 사용량(Nm³)에 한국가스공사에서 공지하는 해당 기간의 월간가중평균열량(MJ/Nm³)을 곱하여 산정한다. <신설 2012. 7. 1.>

③ 회사는 가스사용자의 부재로 검침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전년 동월 사용량 또는 전월 사용량을, 가스계량기의 고장 등 그 밖의 사유로 사용량을 명확히 계측할 수 없을 때에는 전년 동월 포함 전후 1개월(3개월)간의 월평균 사용량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월 용도별 사용량 또는 월 사용예정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사용량은 익월 검침 시에 정산하고, 인정고지 등에 대한 사용량 정산은 정산하는 달의 요금 고지기준(사용기간, 열량, 단가)으로 정산한다. <개정 2016. 1. 1.>

⑤ 제26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최고압력을 초과하여 공급되는 경우의 사용량은 아래의 산정식으로 계산하거나 또는 별도의 압력, 온도 등의 보정장치를 설치하여 산정할 수 있다.

$$V = \frac{V1 \times (101,325 + P)}{101,325 + 980.7}$$

V =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산정사용량(m³)
 P = 최고압력을 초과하여 공급하는 압력(Pa)
 V1 = 가스계량기의 검침량(m³)

$$V = \frac{V1 \times (10,332 + P)}{10,332 + 100}$$

V =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산정사용량(m³)
 P = 최고압력을 초과하여 공급하는 압력(mmAq)
 V1 = 가스계량기의 검침량(m³)

⑥ 온압보정장치의 고장으로 보정 지침의 확인이 어려울 경우 제17조제5항에 따라 계산할 수 있다. 단, 저압의 경우 전라남도지사가 고시한 온압보정계수를 적용한다. <신설 2017. 9. 1., 개정 2021. 7. 30.>

제5장 요 금

제18조(요금) ① 가스요금은 수요자가 가스를 사용하기 시작한 날로부터 시작 되며 사용요금은 전라남도지사가 승인·고시한 별표 3의 요금표를 적용한다.

- ② “도시가스요금 원료비 연동제” (1998. 8. 1. 시행)에 따라 도매요금이 변동된 때에는 회사는 소비자 요금에 자동으로 반영한다.
- ③ 원료비(도매요금)를 제외한 타 사유로 공급비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한다. <개정 2007. 7. 1.>
- ④ 가스요금이 변동되는 경우 회사는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 고지서 또는 기타 방법으로 요금표와 요금변동 유무를 기재하여 수요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 ⑤ 가스요금 조정시 별도의 검침을 실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월 사용량을 요금조정 전후의 가격에 따라 사용일수에 비례하여 적용한다.
- ⑥ 가스요금의 산정은 산업통상자원부의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 1.>

제19조(가스요금 용도 구분) 가스요금은 사용용도에 따라 주택용(취사·난방), 업무난방용, 일반영업용1, 일반영업용2, 냉난방공조용, 산업용(I·II·III·IV), 열병합용, 열전용설비용, 수송용 및 연료전지용(I·II)으로 분류하고 각 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이 적용한다. 다만, 단일 계량기를 통해 복수의 용도로 공급되는 가스는 용도구분에 관한 특별 계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사용 용도를 적용한다. <개정 2008. 5. 20., 2011. 12. 20., 2015. 1. 1., 2017. 9. 1., 2021. 7. 30.>

1. 주택용 요금은 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 및 준주택에서 취사 또는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스에 적용한다. <개정 2011. 12. 20.>
2. 업무난방용 요금은 지방세법 제10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서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스에 적용한다. 다만, 타용도의 요금으로 구분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1. 12. 20.>
3. 일반영업용1 요금은 1호, 2호 및 4호 내지 9호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가스에 적용한다.
4. 일반영업용2 요금은 목욕탕,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사용하는 가스에 적용한다.
5. 냉난방공조용 요금은 지방세법 제104조제2호에 의한 건축물에서 냉난방 공조기기를 설치하고 하절기(5월~9월)에는 냉방용으로, 동절기 및 기타 월에는 난방용으로 동시에 사용되는 가스에 적용한다. 단 냉방기를 설치하고 하절기(5월~9월)에 냉방용으로 사용되는 가스는 하절기에만 공조용 요금을 적용한다. <개정 2015. 1. 1.>
6. 산업용 요금은 산업용 적용을 위한 형식요건(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정한 제조업체에 해당)과 내용요건(제조공정용에 가스가 사용됨)을 동시에 충족 할 경우, 동 공장시설 경계내에 있는 부대시설 전체에 대해 산업용을 적용하되, 사택은 부대시설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열병합발전에 사용되는 가스는 열전용 설비용 또는 열병합용을 적용한다. <개정 2017. 9. 1.>
7. 열병합용 요금은 열병합발전시스템에 직접 사용되는 가스로 다음 각 호의 사용자가 사용하는 가스에 적용한다. <개정 2015. 1. 1.>
 - 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 나. 전기사업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구역전기사업자

다. 기타 열병합발전시스템을 이용하여 열과 전기를 사용하는 자

8. 열전용설비용 요금은 열병합발전시스템과 연계된 열전용 보일러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 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사용하는 열전용 보일러에 사용되는 가스에 적용한다.
9. 수송용 요금은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는 가스에 적용한다.
10. 연료전지용 I 요금은 연료전지용 II 요금의 용도를 제외한 가정용 등 연료전지에 적용한다
11. 연료전지용 II 요금은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라 연료전지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발전사업용 연료전지에 적용한다. <개정 2018. 3. 1., 2021. 7. 30.>

제20조(요금의 수납) ① 회사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열량요금 사용량(MJ)에 따라 별표 3의 요금표에 의하여 산정한 요금을 납부 마감일 7일전까지 회사 소정의 납입고지서(전자납입고지서 포함)로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 1.>

② 가스사용자가 납부일까지 요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납부일 경과 후 30일 이내에 7일의 납부기간을 정한 별도의 독촉고지서를 송달하거나 익월 납입고지서에 체납요금을 별도로 표기하고 익월 요금에 합산하여 청구할 수 있다.

③ 회사는 1인의 가스사용자가 2개 이상의 가스계량기를 각각 분리하여 설치하였을 때에는 각각의 사용량에 따른 요금을 징수한다. 다만, 주 계량기를 경유하여 설치된 2개 이상의 계량기에 대하여는 별도로 사용량을 검침하지 않는다.

④ 회사는 주택용 사용자에게 대하여는 기본요금을 징수한다.

⑤ 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월중 5일 이상 공급 또는 사용을 제한한 경우
2. 최초공급, 해약 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중지로 사용일수가 월중 15일에 미달하는 경우

⑥ 공익상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법 또는 규정과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침이 있을 때에는 사용료 및 그 밖의 제 징수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시장·군수에게 신고한 별표 7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요금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을 적용한다.
2. 별표 8의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요금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에 따라 적용한다. <개정 2009. 5. 15., 2013. 7. 1.>

⑦ 분실, 훼손 등의 사유로 요금납입고지서를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요금 납입고지서를 재발급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⑧ 회사는 사용료의 수납을 목적으로 지급명령을 통해 납부를 독촉할 수 있으며, 강제집행 등 법적제반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

1. 지급명령 및 강제집행 등을 실시한 경우 법적제반 업무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 및 인건비는 사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신설 2017. 9. 1.>

제21조(요금의 납기와 수납방법) ① 요금은 매월 또는 각 고지분을 소정 납기 내까지 징수한

다. 다만, 공급중지, 폐지, 가스사용자와 협의, 부도, 회생 절차 또는 연 2회 이상의 습관적으로 미납된 수요가는 월 3회 이내에서 분할 검침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을 중지 또는 폐지하였을 때에는 수시로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 7. 1.>

② 회사는 가스사용자가 부도, 회생절차 또는 기업 파산사태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인지일 전 사용요금에 대하여 납기와 무관하게 즉시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 7. 1.>

③ 회사는 도지사의 특별한 지시가 있을 때에는 납기를 따로 정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1.>

④ 가스사용자는 당사가 지정하는 은행이나 장소 등에 납부 기한내에 요금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⑤ 가스사용자가 가스요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납부는 주택용 요금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5. 1. 1.>

제22조(10원 단위 미만처리) 요금 및 그 밖의 제 징수금의 계산 결과 10원 미만의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단위를 절사한다.

제23조(이의 신청) ① 사용료 및 그 밖의 제 징수금의 조정 또는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스사용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회사에 이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 신청에 대한 심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 하는 경우에도 납기일은 변경되지 아니한다.

④ 사용료 및 그 밖의 제 징수금의 계산 또는 적용이 잘못된 가스사용자가 그 요금의 지불을 연체하였을 경우 정당한 요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가산금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회사의 과실에 의하여 사용료 및 그 밖의 제 징수금의 계산 또는 적용이 잘못된 가스사용자가 그 요금을 납부하였을 경우 정당한 요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환불금액에 그동안의 이자를 가산하여 환불하며, 이자율은 연 5%를 적용한다. <개정 2008. 5. 20., 2015. 1. 1., 2016. 3. 1., 2018. 4. 11.>

⑤ 회사가 도시가스 공급중단 등 그 밖의 과실로 가스사용자에게 피해 또는 손해를 입혔을 경우 회사는 관련법에 따라 회사가 보상 또는 배상 의무를 진다. <신설 2016. 1. 1.>

⑥ 가스사용자가 사용자의 부주의가 아닌 옥내 가스배관 손상으로 가스누출 시에 누출량에 대한 요금을 감면 받고자 하는 경우 요금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감면신청을 회사에 하여야 하며, 회사는 요금감면 신청이 있는 경우 누출여부를 확인하여 요금을 감면하여야 한다. 누출된 월의 요금은 전년 동월 사용량, 전월사용량 순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월사용 예정량 등 합리적인 사용량을 적용하여 초과된 요금을 감면한다. <신설 2020. 11. 00.>

제24조(요금계산의 정정) 회사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가스계량기 검사결과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용공차를 초과하여 과속 또는 저속 등이 있을 때에는 그 오차분의 요금을

전년 동월 사용량의 범위내에서 정산하며, 전년 동월 사용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전년 용도별 월평균사용량 또는 월사용예정량으로 당사와 사용자간에 협의하여 정산한다. <개정 2016. 1. 1.>

제25조(보증금) ① 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스사용자 또는 건물소유자에게 공급 개시, 재공급 또는 계속공급의 조건으로 월 사용예정량의 3월분이내에 해당 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증금을 예치시킬 수 있으며 보증금의 예치기간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해약일까지로 한다. 다만, 가스사용자가 희망하는 경우 보증보험 증권 등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원룸)을 제외한 주택용수요처는 보증금 예치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9. 5. 15., 2015. 1. 1., 2017. 9. 1.>

1. 월 예정사용량이 43,050MJ/월 이상 가스사용자 <개정 2012. 7. 1.>
2. 가스사용자와 가스사용시설이 설치된 건물소유주가 상이한 가스사용자 또는 건물소유자
3.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중지의 조치를 받은 가스사용자
4. 가스요금을 년 3회 이상 연체한 가스사용자
5. 부도, 화의, 법정관리 등으로 보증설정이 필요한 가스사용자

② 제1항의 “월사용량” 은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산정한다.

1. 최근 2개년 이내 최대 사용량
2. 최근 2개년 이내 사용실적이 없는 경우 인근지역 또는 동 업종 가스사용자의 제1호 해당 사용량
3. 최초 설계시 반영된 월 예상 최대사용량 <개정 2009. 5. 15.>

③ 제1항에 따른 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통상 1년, 2년 만기 보증보험증권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보증보험증권 기간이 만료되면 보증보험증권을 재발급 받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보험증권 예치기간 중 가스요금을 체납한 경우가 없거나 가스 요금을 체납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회사와 사용자간에 협의하여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3., 2016. 1. 1.>

④ 회사는 보증금을 예치한 가스사용자가 요금의 납부일 후 30일을 경과 하고, 회사가 독촉장을 발송한 후 10일 이내에도 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와 제28조 제2항에 따른 공급중지 신청이 있을 때에는 미납된 요금(가스계량기 교체비용 포함)을 가스사용자에게 통지하고, 보증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에서 이를 충당하며, 충당 후 부족분은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⑤ 회사는 계약이 소멸된 때에는 보증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 중에서 미납 요금을 공제한 잔액을 지체 없이 반환한다.

⑥ 사용자가 현금으로 예치한 보증금 이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매년 산정 후 익년 1월 요금에 반영하여 정산한다. 다만 사용자가 전출, 해지 등 변동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변동 시점에 맞춰 정산하여 직접(계좌이체 등)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 2016. 3. 1.>

1. 보증기간이 1년 이상 확정된 경우 : 한국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변동기간별 평균 이율

2. 보증기간 미확정, 보증기간내 중도해지, 보증기간 만료 후 : 시중은행 보통예금 이율 <개정 2009. 5. 15., 2016. 3. 1.>

제6장 공 급

제26조(공급가스의 열량 등) ① 회사가 공급하는 열량은 한국가스공사가 공급하는 열량으로 하며, 압력 등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1., 2012. 4. 13., 2012. 7. 1.>

1. 열량 : 천연가스(한국가스공사 공급)

- 최고열량 : 44.4 MJ/Nm³(10,600 kcal/Nm³)

- 최저열량 : 41.0 MJ/Nm³(9,800 kcal/Nm³)

다만, 상기열량 범위내에서 해당 수급지점의 월간가중평균열량은 한국가스공사 전체 수급지점의 월간가중평균열량의 ±2% 이내이어야 한다.

2. 성분 : 천연가스(메탄 85%이상)

3. 압력(가정용)

- 최고압력 : 2,451.7Pa(250mmAq)

- 최저압력 : 980.7Pa(100mmAq)

4. 도시가스 품질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183호(2014. 10. 8.)에 따른다. 다만, 천연가스의 웨버 지수는 한국가스공사의 천연가스공급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12. 7. 1., 개정 2016. 1. 1.>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압력을 초과하는 가스의 사용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요자와 협의하여 별도로 압력을 정하여 공급할 수 있다. 다만, 이로 인한 추가비용은 수요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회사는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공급시설 부족으로 가스사용자에게 공급 중단 또는 부족이 발생되지 않고 안정공급이 되도록 수급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제27조(공급 또는 사용의 제한)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급권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급을 제한 또는 중지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비상재해 등 그 밖의 불가항력의 상황 및 굴착공사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

2. 가스공급시설에 고장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3. 가스공급시설의 수리·변경·교체 등의 공사시행을 위하여 부득이할 때

4. 관계법규 및 이 규정에 의한 경우 또는 도지사의 지시가 있을 때 <개정 2007. 12. 1.>

5. 보안 및 안전상 부득이할 때

② 회사는 제1항의에 따라 가스 공급을 제한하거나 중지하고자 할 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내용을 언론 등을 통해 알리거나 안내문을 배부하여 홍보하는 등 가스 사용자가 사전에 대비하도록 한다.

③ 회사가 공급의 제한이나 중지 시에는 가스사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시간대의 조정, 시간의 단축 등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용제한 및 중지 또는 제28조에 따른 공급중지로 인해 가스사용자 등에

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회사의 잘못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 듀얼연료설비를 사용하고 있어 연료대체 계약이 체결된 경우 <신설 2019. 11. 15.>

제28조(공급중지)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스사용자에게 공급중지일 5일전에 그 사유를 통지(SMS, FAX, 안내문, 모바일 등)하고 가스 공급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12. 7. 1., 2015. 1. 1.>

1. 요금 및 그 밖의 이 규정에 의한 제 징수금(보증금, 가스계량기교체비)을 기한내 납부하지 아니하여 2회 이상 독촉장 또는 독촉안내(SMS, FAX, 안내문, 모바일 등)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가스요금을 년 3회 이상 상습 체납하고 부도, 회생절차, 경매 등 요금 및 제 징수금 납부가 불확실한 경우 다만, 미납금의 납부가 명확히 예견되거나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스공급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 7. 1., 2016. 1. 1.>
2. 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하는 자가 행하는 점검·점검·작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방해한 때
3. 부정한 방법으로 가스를 사용한 때 또는 사용한다고 명확히 인정될 때
4.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가스공급 및 사용시설을 임의 변경(증설·이설·개조·폐지 등)한 때
5. 가스사용자의 토지내에 있는 회사 소유의 공급시설을 고의로 손상하거나 없애 회사측에 중대한 손해를 입혔을 때
6. 가스사용자 등이 2개월 이상 소재가 불분명할 때
7. 법 제26조의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회사가 가스사용자에게 한 시설개선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가스사용 상태가 위험하다고 인정될 때
8. 가스사용시설에 타연료와 동시 또는 보조용으로 전환시켜 연소시키는 공정으로 사고 발생 우려가 있을 때 <신설 2017. 9. 1.>
9. 그 밖의 안전관리와 관련한 회사의 정당한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개정 2008. 5. 20., 2017. 9. 1.>

② 제1항에 의한 정상적인 공급중지(계량기 전단밸브 차단)가 불가능하고 가스사용자에게 절차 및 제반비용이 사전 통지된 경우 회사는 공급을 제한하기 위한 행위(배관절단 등)를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요비용은 통지내용에 따라 처리한다. <신설 2017. 9. 1.>

③ 가스공급을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가스사용자는 회사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급중지기간은 6월 이내로 하되 만기 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 2017. 9. 1.>

제29조(공급중지 등의 해제) ① 제28조에 따라 가스 공급이 중지된 후 가스를 다시 공급받고자 할 경우 가스사용자는 그 사유를 해소하거나 손해를 배상한 후 회사에 공급중지 해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00.>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때 회사는 가스시설을 점검하고 가스 사용상 위해 요인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4시간 이내에 신속히 공급을 재개하여야 한다.

③ 제28조제3항에 따라 사용시설을 폐지한 후 가스사용자가 다시 공급을 원할 때에는 제5조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8. 5. 20., 2017. 9. 1.>

제7장 안전

제30조(가스사용자의 안전관리 책임) ① 가스사용자가 가스누출을 감지한 때에는 즉시 가스 계량기 전후의 밸브 및 퓨즈코를 잠그고 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

② 가스사용자 등은 가스사용시설 일체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 가스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사용 및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손해 등은 가스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16. 1. 1.>

③ 가스사용자가 고압가스등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 및 관계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설치비용은 가스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가스사용자 등은 그의 가족고용인·동거인 등의 행위에 대하여 도시 가스사업법, 민법 등 관계법령과 이 규정에 따라 책임을 진다. <개정 2008. 5. 20.>

⑤ 공동주택의 정기점검 불합격시 시설개선의 기간이 30일을 초과할 경우 재검수수료는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1.>

제31조(가스공급자의 안전관리 및 개인정보의 보호) ①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가스공급 및 사용 시설의 안전에 관한 사항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도지사에게 제출한 안전관리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7. 12. 1.>

② 회사는 가스사용 신청, 가스사용계약, 시설분담금, 요금의 청구 및 납부 등 가스의 공급 및 사용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개인 정보의 수집은 가스공급 및 사용 등 관계업무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다. <신설 2016. 1. 1.>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와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객 개인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신설 2016. 1. 1.>

- 1. 가스공급 및 사용 등 관계 업무에 직접 이용하는 경우
- 2. 법령에 의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④ 회사는 고객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직원 또는 사용자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모든 불법행위를 금지하며 이에 따른 법적책임은 회사에게 있다. <신설 2016. 1. 1.>

제8장 기타

제32조(문서보관) ① 회사는 공급비용 산정 자료 등 법 또는 도지사가 정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국세자료 보관기관과 동일하게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1., 2018. 4. 11.>

② 회사는 정당한 사유로 민원인 및 그 밖의 관계기관의 정보공개(열람 등)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11.>

제33조(사용장소의 출입) 회사는 검침·점검·조사 및 그 밖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회사 직원 및 회사의 위탁을 받은 회사의 직원을 가스사용자의 시설 설치장소에 출입하게 할 수 있으며, 가스사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출입을 승낙하여야 하며, 출입자는 사원증명서 또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부 칙 (과학기술과-11996호)

제1조 (승인일) 이 규정은 2007년 11월 28일 변경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제2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12월 1일 00:00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과학기술과-5930호)

제1조 (승인일) 이 규정은 2008년 5월 16일 변경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제2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5월 20일 00:00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환경산업과-5646호)

제1조 (승인일) 이 규정은 2009년 5월 13일 변경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제2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5월 15일 00:00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녹색에너지담당관-12026호)

제1조 (승인일) 이 규정은 2011년 12월 14일 변경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제2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2월 20일 00:00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녹색에너지담당관-4282호)

제1조 (승인일) 이 규정은 2012년 4월 9일 변경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제2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4월 13일 00:00부터 시행합니다.
제3조 (경과조치) 규정 제26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한 열량은 2012년 7월1일부터 2014년 12월31일까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표준열량 : 44.4 MJ/Nm³(10,600 kcal/Nm³)
- 최저열량 : 42.28 MJ/Nm³(9,800 kcal/Nm³)

부 칙 (녹색에너지담당관-8159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7월 1일 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 (경과조치) 규정 제26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한 열량은 2012년 7월1일부터 2014년 12월31일까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최고열량 : 44.4 MJ/Nm³(10,600 kcal/Nm³)
- 최저열량 : 42.28 MJ/Nm³(10,100 kcal/Nm³)

부 칙 (녹색에너지담당관-9142호)

제1조 (승인일) 이 규정은 2013년 7월 1일 변경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제2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7월 2일 00:00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녹색에너지담당관-8227호)

제1조 (승인일) 이 규정은 2014년 7월 1일 변경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제2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7월 1일 00:00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에너지산업과-1071호)

제1조 (승인일) 이 규정은 2015년 1월 1일 변경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제2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월 1일 00:00부터 시행합니다.

단서조항) 제8조제2항 및 제21조제5항의 적용시기 : 2015. 2. 1.

부 칙 (에너지산업과-19749)

제1조 (승인일) 이 규정은 2015년 12월 29일 변경승인을 받은 것임.

제2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 00:00부터 시행한다.

부 칙 (에너지산업과-2699)

제1조 (승인일) 이 규정은 2016년 2월 29일 변경승인을 받은 것임.

제2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 00:00부터 시행한다.

부 칙 (에너지산업과-14676)

제1조 (승인일) 이 규정은 2017년 9월 1일 변경승인을 받은 것임.

제2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9월 1일 00:00부터 시행한다.

부 칙 (에너지산업과-3529)

제1조 (승인일) 이 규정은 2018년 2월 26일 변경승인을 받은 것임.

제2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 00:00부터 시행한다.

부 칙 (에너지산업과-6457)

제1조 (승인일) 이 규정은 2018년 4월 10일 변경승인을 받은 것임.

제2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4월 11일 00:00부터 시행한다.

부 칙 (에너지신산업과-23010)

제1조 (승인일) 이 규정은 2019년 11월 8일 변경승인을 받은 것임.

제2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1월 15일 00:00부터 시행한다.

부 칙 (에너지신산업과-9295)

제1조 (승인일) 이 규정은 2020년 4월 25일 변경승인을 받은 것임.

제2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4월 1일 00:00부터 소급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가스계량기의 등급별 표준가스 소비량(제5조제2항 관련) <개정 2012. 7. 1.>

등 급	25	4	6	10	16	25	40
표준소비량(m ³ /h) (최대유량 m ³ /h)	2.5	4	6	10	16	25	40
가스미터 호칭(G)	G-1.6	G-2.5	G-4	G-6	G-10	G-16	G-25

○ 1시간당 표준가스사용량이 41m³ 이상인 경우 다음의 표준가스 소비량 산정방법에 의해 산정하고 회사와 수요자가 협의하여 가스계량기를 선정합니다. 단, 1시간당 표준가스소비량(m³/h)산정을 위한 기준열량을 42.47MJ(10,144kcal/m³)로 합니다. <개정 2017. 9. 1.>

1) 주택용 수요가

- 취사전용 수요가 : G - 1.6 (2.5m³/h)
- 취사전용 이외의 수요가 : G - 2.5 (4m³/h) 이상

2) 주택용외 수요가 : 보일러 등 각 사용시설의 총 1시간 표준가스소비량

[별표 2-1] 시설분담금(제6조제2항 관련)

(단위:천원)

등 급	25	4	6	10	16	25	40
분담금	55	75	115	195	315	495	795

증설, 개조등 신·구 계량기 용량에 따라 차액 징수

비고 - 1m³/Hr 증가시 2만원씩 가산

※ 부가가치세는 별도

[별표 2-2] 시설분담금

1. 일반 시설분담금 ⇨ 목포도시가스㈜

- 납부대상 : 전체 가스사용자
- 시 기 : 가스 최초 공급 또는 난방방식 전환 시
- 부 담 액 : 29,797원 (가스소비량 1m³/hr 기준) ⇨ 세대당 119,180원
- ※ 가정용 표준가스 소비량은 4등급(4m³/hr) 적용함

2.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 (주)해양에너지

- 납부대상 : 취사전용 가스사용자
- 시 기 : 가스 최초 공급 또는 난방방식 전환 시
- 부 담 액 : 355,300원/m³ (가스소비량 2.5m³/hr 기준) ⇨ 세대당 888,250원

3.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 목포도시가스㈜

- 납부대상 : 경제성확보 미달 지역(100m당 45세대 미만) 수요자
- 시 기 : 가스 최초 공급 또는 난방방식 전환 시
- 부 담 액 : 기준단가(원/m³) × 표준가스소비량(m³)
- 기준단가 : [(표준투자비 × 배관연장거리 × 적용률)] - (시설분담금회수액 + 요금상
감가상각비회수액) ÷ 가스사용자의 시간당 총 표준가스소비량
- 표준투자비는 291,968원/m이며, 적용률은 83.89%입니다.
- 요금상 감가상각비 회수액은 275,206원/세대입니다.
- 세대별 분담금 기준 단가

(단위 : 원, 부가세 별도)

세대수 (등급)	1세대 (4등급)	2세대 (8등급)	3세대 (12등급)	4세대 (16등급)	5세대 (20등급)	6세대 (24등급)	7세대 (28등급)	8세대 (32등급)	9세대 (36등급)	10세대 (40등급)
부담금	22,075,200	10,840,400	7,095,500	5,138,700	4,032,100	3,294,300	2,719,200	2,330,000	2,027,300	1,751,400
세대수 (등급)	11세대 (44등급)	12세대 (48등급)	13세대 (52등급)	14세대 (56등급)	15세대 (60등급)	16세대 (64등급)	17세대 (68등급)	18세대 (72등급)	19세대 (76등급)	20세대 (80등급)
부담금	1,556,300	1,393,800	1,230,300	1,114,200	1,013,600	904,600	828,100	760,200	681,700	627,900
세대수 (등급)	21세대 (84등급)	22세대 (88등급)	23세대 (92등급)	24세대 (96등급)	25세대 (100등급)	26세대 (104등급)	27세대 (108등급)	28세대 (112등급)	29세대 (116등급)	30세대 (120등급)
부담금	579,200	519,600	479,900	443,500	396,500	366,000	337,900	299,700	275,700	253,400
세대수 (등급)	31세대 (124등급)	32세대 (128등급)	33세대 (132등급)	34세대 (136등급)	35세대 (140등급)	36세대 (144등급)	37세대 (148등급)	38세대 (152등급)	39세대 (156등급)	40세대 (160등급)
부담금	221,600	202,400	184,300	157,400	141,600	126,700	103,500	90,400	78,000	57,700
세대수 (등급)	41세대 (164등급)	42세대 (168등급)	43세대 (172등급)	44세대 (176등급)	45세대					
부담금	46,700	36,200	18,300	9,000	-					

주 1) 세대별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은 주택난방용(4등급) 기준이며, 100m당 세대수에 따라 납부할 금액으로 세대별 금액은 용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4. 산정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도시가스시설분담금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에 관한 전라남도 고시에 따라 적용한다.
5. 상기 시설분담금은 부가가치세 별도금액이며, 부가가치세 포함 부과시 원단위 이하는 절사하여 고지한다.

[별표 3] 가스요금표(부가세 별도, 제18조제1항 관련) <개정 2014. 7. 1., 2015. 1. 1., 2017. 9. 1., 2018. 4. 11., 2020. 4. 1., 2021. 7. 30.>

구 분		요금체계	단 가 (원/MJ)	비 고
주택용	기본요금	주택용에 한함	770원 / 월	
	취사용	516MJ 이하	(원료비+공급비용)	
	개별난방용	516MJ 초과	(원료비+공급비용)	
	중앙난방용		(원료비+공급비용)	
업무난방용		사용량 관계없이 용도별 단일요금	(원료비+공급비용)	
열전용설비용			(원료비+공급비용)	
수송용			(원료비+공급비용)	
일반용 (영업1종)	동절기	1-3월, 12월	(원료비+공급비용)	
	하절기	6-9월	(원료비+공급비용)	
	기 타	4, 5, 10, 11월	(원료비+공급비용)	
일반용 (영업2종)	동절기	1-3월, 12월	(원료비+공급비용)	
	하절기	6-9월	(원료비+공급비용)	
	기 타	4, 5, 10, 11월	(원료비+공급비용)	
냉난방 공조용	동절기	1-3월, 12월	(원료비+공급비용)	
	하절기	5-9월	(원료비+공급비용)	
	기 타	4, 10, 11월	(원료비+공급비용)	
산업용Ⅰ	동절기	1-3월, 12월	(원료비+공급비용)	• 월 42,470TJ 이하 적용
	하절기	6-9월	(원료비+공급비용)	
	기 타	4, 5, 10, 11월	(원료비+공급비용)	
산업용Ⅱ	동절기	1-3월, 12월	(원료비+공급비용)	• 목표 : 월 42,470TJ 초과 • 대화 : 월 127,410TJ 초과 • 해양 : 월 42,470TJ 초과 또는 별도 계량이 가능한 냉난방공조기용(하절기) • 전남 : 월 42,470TJ 초과 ~ 월 127,410TJ 이하
	하절기	6-9월	(원료비+공급비용)	
	기 타	4, 5, 10, 11월	(원료비+공급비용)	
산업용Ⅲ	동절기	1-3월, 12월	(원료비+공급비용)	• 전남 : 월 127,410TJ 초과 ~ 월 297,290TJ 이하
	하절기	6-9월	(원료비+공급비용)	
	기 타	4, 5, 10, 11월	(원료비+공급비용)	
산업용Ⅳ	동절기	1-3월, 12월	(원료비+공급비용)	• 전남 : 월 297,290TJ 초과
	하절기	6-9월	(원료비+공급비용)	
	기 타	4, 5, 10, 11월	(원료비+공급비용)	
열병합용	동절기	1-3월, 12월	(원료비+공급비용)	
	하절기	6-9월	(원료비+공급비용)	
	기 타	4, 5, 10, 11월	(원료비+공급비용)	
연료전지용 Ⅰ	동절기	1-3월, 12월	(원료비+공급비용)	• 연료전지용Ⅱ 요금의 용도를 제외한 기정용 등 연료전지에 적용
	하절기	6-9월	(원료비+공급비용)	
	기 타	4, 5, 10, 11월	(원료비+공급비용)	
연료전지용 Ⅱ	동절기	1-3월, 12월	(원료비+공급비용)	•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라 연료전지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발전사업용 연료전지에 적용
	하절기	6-9월	(원료비+공급비용)	
	기 타	4, 5, 10, 11월	(원료비+공급비용)	

※ 동일 공급권역내 동일법인(자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전부를 모회사가 보유한 경우의 자회사를 포함한다)일 경우, 통합 열량으로 해당 부제 요금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별표 4] 가스계량기 교체비용(제13조제3항 관련) : 삭제 <개정 2015. 1. 1.>

[별표 5] 해제수수료(제29조제1항 관련) : 삭제 <개정 2020. 11. 00.>

[별표 6] 도시가스회사별 온압보정계수(제17조제1항 관련) : 삭제 <개정 2021. 7. 30.>

[별표 7] 도시가스요금 경감대상 사회복지시설(제20조제6항제1호 관련) <개정 2012. 7. 1., 2020. 11. 00.>

1. 장애인복지법 제58조 및 제60조에 의한 동법 시행규칙 별표 4의 장애인 생활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유료복지시설 및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2. 아동복지법 제50조 및 제52조제1항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 돌봄센터)
3. 노인복지법 제31조 내지 제39조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전문병원),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 및 재가노인복지시설(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 목욕서비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 및 제20조에 의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5.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의한 사회복지관 및 보건복지부령에 의한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를 위한 시설
6. 정신건강복지법 제22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과 동법 제26조에 의한 정신재활시설
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에 의해 지정된 감염병 관리기관 단,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의 지정)에 의한 상급종합병원은 경감대상에서 제외
8.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7조의2에 의한 보호시설
9.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의한 지원시설
10.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11.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군경 재활을 위한 복지회관
1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의한 갱생보호시설 (2012. 5.)
13.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에 의한 청소년복지시설 (2017. 1.)

[별표 8] 도시가스요금 경감대상 사회적배려대상자(제20조제6항제2호 관련) <개정 2013. 7. 1., 2015. 1. 1., 2020. 11. 00.>

1. “장애인복지법” 에서 정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한 1~3급 상이자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서 정한 기초생활수급자

5.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서 정한 차상위계층 중
-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9조제5항)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자
 - 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 2 제3호 라목)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 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 받는 자
 - 다. 장애인복지법(제49, 제50조)에 따라 장애수당을 받는 18세 이상 장애인 및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18세 미만 장애인
 - 라.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라 지원받는 모자가정, 부자가정, 조손가정
6. 다자녀가구
- 가. 일반 다자녀가구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또는 “손(孫)”이 각각 3인 이상으로 표시된 주거용 주택의 세대주.
 - 나. 위탁가정 다자녀 가구 : 가정위탁보호 확인서상 위탁아동으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동거인’ 으로 지정된 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또는 “손(孫)”인 자의 합이 각각 3인 이상인 주거용 주택의 세대주
 - ※ 단, 만 18세 미만의 ” 자(子)” 또는 “손(孫)”의 확인은 주민등록표상으로 불가능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체
 - ※ 또한, 위탁한 ” 자(子)” 또는 “손(孫)”(이하 위탁아동)이 있는 친권자(세대주)가 다자녀 경감을 신청한 경우, 위탁아동을 제외한 ” 자(子)” 또는 “손(孫)”이 3인 미만이 되는 경우 경감적용 불가 <개정 2015. 1. 1., 2020. 11. 10.>

【별지 1】 <신설 2019. 11. 15.>

듀얼연료설비 설치(변경) 통지서			
① 업체명		② 사업자번호	
③ 소재지	본 사:		
	사업장:		
④ 관리자	부 서	성 명	연 락 처
			(전 화) (휴대폰)
			(e-mail)
⑤ 통지구분	<input type="checkbox"/> 설 치 <input type="checkbox"/> 변 경 <input type="checkbox"/> 폐 쇄		⑥ 설치(변경)일자
⑦ 설치(변경) 내 용			

상기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내용을 숙지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_____ (서명, 인)

전라남도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8조(계약의 준수)제4항제1호에 따라, 듀얼연료설비 설치(변경) 사항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 ○ ○ ○ (인)

○○ 도시가스 대표이사 귀하

【별지 2】 <신설 2020. 11. 00.>

도시가스 공급 신청(계약)서
(공급규정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

신청정보	
고객유형	<input type="checkbox"/> 개인 <input type="checkbox"/> 사업자(개인) <input type="checkbox"/> 법인 <input type="checkbox"/> 공공기관 <input type="checkbox"/> 외국인
사용용도	<input type="checkbox"/> 가정용 <input type="checkbox"/> 영업용 <input type="checkbox"/> 산업용 <input type="checkbox"/> 기타 ()
소재지	
가구수	
면적	

고객정보			
*고객명(상호)		생년월일	
*주소		E-mail	
*연락처	(전화)	(휴대폰)	

* 부문은 고객 필수 기재 사항입니다.

상기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내용을 숙지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서명, 인)

상기 본인은 도시가스 공급신청과 관련하여 모든 준수사항을 인지/확인하였으며, 이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 도시가스 대표이사 귀하

주) 상기 신청서의 항목 외 신청인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계약조건 추가 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별지 3】 <신설 2020. 11. 00.>

도시가스 사용 신청(계약서)
(공급규정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

신청정보	
신청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type="checkbox"/> 전입 <input type="checkbox"/> 명의변경 <input type="checkbox"/> 자동이체 <input type="checkbox"/> 기타 ()
고객유형	<input type="checkbox"/> 개인 <input type="checkbox"/> 사업자(개인) <input type="checkbox"/> 법인 <input type="checkbox"/> 공공기관 <input type="checkbox"/> 외국인
사용용도	<input type="checkbox"/> 가정용 <input type="checkbox"/> 영업용 <input type="checkbox"/> 산업용 <input type="checkbox"/> 기타 ()
설치장소번호	

고객정보			
*고객명(상호)		생년월일	
*주 소		E-mail	
*연락처	(전화)	(휴대폰)	
*요금청구방법	<input type="checkbox"/> 문자 <input type="checkbox"/> E-mail <input type="checkbox"/> 고지서		

자동이체신청			
거래은행명	은행	*예금주명	(서명,인)
계좌번호			

*부문은 고객 필수 기재 사항입니다.

<p>상기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내용을 숙지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 (서명,인)</p>

상기 본인은 도시가스 사용신청과 관련하여 모든 준수사항을 인지/확인하였으며, 이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 도시가스 대표이사 귀하

주) 상기 신청서의 항목 외 신청인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계약조건 추가 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전라남도 공고 제2021-792호

2021년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 조정 공고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 및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2021년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 조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 8. 5.

전라남도지사

1. 관련근거

가.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2조

나.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 산업통상자원부(2020. 3. 26.)

2. 조정요금 : 붙임 참조

3. 적용일시 : 2021. 7. 1. 사용분부터

4. 요금에 대한 문의

가. 목포도시가스(주) : ☎ 061-280-6231~3

나. 대화도시가스(주) : ☎ 061-651-9485

다. (주)해양에너지 : ☎ 062-950-1217

라. 전남도시가스(주) : ☎ 061-1599-0009

2021년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 용도별 조정 결과

(단위 : 원/MJ)

회사별	용도별	주택용	일반(영업)용		업무 난방용	냉난방 공조용	산업용 I	산업용 II	산업용 III	산업용 IV	열병합용	열전용 설비용	연료 전지용 I	연료 전지용 II	수송용
			영업1	영업2											
목포	'21년	3.0403	3.9500	3.4438	3.4414	1.6946	1.5092	0.5284	-	-	-	-	0.6019	0.3518	0.4906
	'20년	3.0403	3.9500	3.4438	3.4414	1.6946	1.5092	0.5284	-	-	-	-	0.6019	-	0.4906
	증감률	0.00%	0.00%	0.00%	0.00%	0.00%	0.00%	0.00%	-	-	-	-	0.00%	(신설)	0.00%
대화	'21년	2.0121	2.0121	2.0121	1.9330	1.3167	0.8411	0.0567	-	-	1.3788	1.3788	0.6019	0.3518	0.4906
	'20년	2.0121	2.0121	2.0121	1.9330	1.3167	0.8411	0.0567	-	-	1.3788	1.3788	0.6019	-	0.4906
	증감률	0.00%	0.00%	0.00%	0.00%	0.00%	0.00%	0.00%	-	-	0.00%	0.00%	0.00%	(신설)	0.00%
해양	'21년	3.2101	4.6319	3.5619	4.0474	1.8900	2.3522	1.6464	-	-	2.0250	3.1732	0.6019	0.3518	0.4906
	'20년	3.2101	4.6319	3.5619	4.0474	1.8900	2.3522	1.6464	-	-	2.0250	3.1732	0.6019	-	0.4906
	증감률	0.00%	0.00%	0.00%	0.00%	0.00%	0.00%	0.00%	-	-	0.00%	0.00%	0.00%	(신설)	0.00%
전남	'21년	2.9124	3.4850	3.3587	3.5000	1.8999	2.0451	1.8219	1.6136	1.3757	-	-	0.6019	0.3518	0.4906
	'20년	2.9124	3.4850	3.3587	3.5000	1.8999	2.0451	1.8219	1.6136	1.3757	-	-	0.6019	-	0.4906
	증감률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	-	0.00%	(신설)	0.00%

■ 공급권역

- ▶ (주)목포도시가스 : 목포시, 영암군, 무안군, 강진군
- ▶ (주)대화도시가스 : 여수시
- ▶ 해양에너지(주) : 나주시, 화순군, 장성군, 담양군, 영광군, 해남군, 함평군, 장흥군
- ▶ (주)전남도시가스 : 순천시, 광양시,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 주택용 기본료 : 770원 (동결)

■ 용도별 요금 신설

- ▶ 연료전지용 II :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라 연료전지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발전사업용 연료전지에 적용

■ 적용시기 : 2021. 7. 1.

전라남도 공고 제2021-796호

「전라남도 지식정보문화 기업유치 보조금 지원사업 시행지침」 개정
따른 행정예고 공고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전라남도 지식정보문화 기업유치 보조금 지원사업 시행지침」 개정에 대하여 관계전문가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 예고합니다.

2021. 8. 5.

전라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전라남도 지식정보문화 기업유치 보조금 지원사업 시행지침
2. 개정목적: 효율적인 재정지원 및 보조금 관리체계 정비
3. 주요내용
 - 보조금 지원업종 정비 및 유치업종 확대(안 제2조)
 - 보조기업에 대한 환수규정 강화(안 제34조)
 - 보조기업에 대한 이행확보 조치 강화(안 제35조)
4. 개 정 안: 붙임참조
5. 행정예고기간: 2021. 8. 5. ~ 2021. 8. 25.까지(20일간)
6. 의견제출
 - 전라남도 지식정보문화 기업유치 보조금 지원사업 시행지침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 8. 25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서 : 다음
 - 의견 제출할 곳
 - 주소 : (58564)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라남도청 투자유치과
 - 전화 : 061-286-5174
 - 팩스 : 061-286-4746
 - 전자우편 : nahg2234@korea.kr
 -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전라남도 지식정보문화 기업유치 보조금 지원사업 시행지침」 개정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 지식정보문화 기업유치 보조금 지원사업 시행지침 전부개정예규안

전라남도 지식정보문화 기업유치 보조금 지원사업 시행지침 전부개정예규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전라남도 지식정보문화 기업유치 보조금 지원사업 시행지침 전부개정예규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16조 및 「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전라남도 지식정보문화 기업유치 보조금 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식정보문화산업”이란 지식·정보·문화·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에 따른 정보통신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중 별표 1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지식정보문화 기업”이란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에 주소를 두고 상시고용인원이 3명 이상으로 지식정보문화산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기업을 말한다.
3. “이전(移轉)기업”이란 2018. 7. 1. 이후에 타 시도에서 도로 법인을 이전한 지식정보문화 기업을 말한다.
4. “창업기업”이란 2018. 7. 1. 이후에 도내에 법인을 신설한 지식정보문화 기업을 말한다.
5. “지사·지점기업”이란 타 시도에 본사를 두고 있는 지식정보문화 기업이 2018. 7. 1. 이후 도내의 소재지에登記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6. “기존기업”이란 2018. 6. 30. 이전에 도내에 소재한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지식정보문화 기업을 말한다.
7. “근무인원”이란 2018. 7. 1.부터 도내에서 지식정보문화산업 업무에 종사하도록 근로계약을 체결한 신규고용 인원을 말한다. 다만, 기존기업의 경우 협약체결 이후에 추가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신규고용 인원을 말한다.
8. “시설투자금액”이란 토지매입비(임대료 포함),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부대시설 중에 지식정보문화산업 영위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근로환경 개선시설의 설치비를 말한다.

제2장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체계

제3조(운영주체 및 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라남도 지식정보문화

보조금 지원사업(이하 “보조금 지원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한다.

1. 보조금 지원사업 계획 수립
 2. 보조금 지원사업 예산 편성
 3. 보조금 지원사업 교부 결정
 4.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제재
 5. 보조금 변경신청에 대한 승인
 6. 보조금 지원사업 정산 검사 및 감독
 7. 보조금 지원사업 안내 및 홍보
 8. 제8조에 따른 고용 우수기업의 대상 여부 판단 등
 9. 그 밖에 지식정보문화 사업에 필요한 사항
- ② 시장·군수는 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한다.

1. 보조금 지원사업 수요조사
2.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서 접수
3. 보조금 지원사업 적격 여부 확인
4. 보조금 지원사업 교부 신청
5. 보조금 지원사업 변경 신청
6. 보조금 지원사업 실태점검
7. 보조금 지원사업 실적보고
8. 보조금 부정신청 등에 대한 반환
9. 보조금 지원사업 회계서류 관리
10.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지도·관리

제4조(재정 분담) ① 지식정보문화 기업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도지사과 시장·군수가 각각 50%씩 공동으로 분담한다.

② 지식정보문화 기업을 유치하려는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분담금의 규모를 예측하여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

제3장 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제5조(지원 대상) 보조금 지원사업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

1. 도내에서 지식정보문화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
2. 4대 보험 신고 및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할 것
3. 근무인원이 3인 이상일 것

제6조(지원 제외) 지식정보문화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1.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 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2. 기업이 부도 또는 휴·폐업한 경우

3. 기업 대표이사 등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등록 된 경우
4. 보조금 지원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위배된다고 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5. 지식정보문화 기업이 사업신청일 이전 1년 이내에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정리해고 등 인위적 감원을 추진한 경우
6. 「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라 고용 관련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인 경우
7. 제조업 등이 주 업종인 기업이 사업자등록증에 지식정보문화산업 업종을 추가로 등록한 경우
8. 지식정보문화 기업의 본사가 도내에 소재하지만, 타 시·도에 별도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등록하지 않고 지사·지점 등을 설치·운영한 경우

제7조(지원 기준 및 한도) ① 지식정보문화 기업의 근무인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별표 2의 지원 기준에 따르며, 보조금 예산의 범위에서 기업당 최대 5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 보조금 지원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표 3의 보조금 산출 기준에 따른다.

제8조(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특별 지원) ① 도지사는 지식정보문화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무인원이 50인을 초과하고 연관 산업 효과가 높아 전략적으로 유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고용 우수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고용 우수기업의 대상여부, 지원금액 및 범위, 시기 등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업은 이에 응해야 한다.

③ 추가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출하며, 산출한 금액 내에서 조례 제3조에 따른 전라남도 투자유치협의회(이하 “투자협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1. 근무인원 50인 초과 시 1인당 15백만원
2. 시설투자금액이 20억 원을 초과한 금액의 5% 범위에서 최대 1억 원. 다만, 기업이 도 또는 시·군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임대료는 시설투자금액에 포함하지 않음

④ 시장·군수는 제3항에 따라 추가 지원금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실태점검 일정에 따라 근무인원을 점검해야 하며,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점검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인원이 감원되어 시장·군수의 시정 조치에도 불구하고 조치하지 않은 경우
2. 휴·폐업하거나 사업장의 주소를 타 시·도로 이전한 경우
3. 기타 보조금 지원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위배되는 경우

제4장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절차

제9조(추진절차) 보조금 지원사업의 추진절차는 별표 4와 같다.

제10조(접수기간) 보조금 지원사업의 접수 기간은 2018. 7. 1.부터 2022. 6. 30.까지로 한다.

제11조(집행계획 수립 등) 도지사는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수요조사, 지원 규모 및 절차 등을 포함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시장·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2조(신청서 접수 등) ① 시장·군수는 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접수해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전라남도 지식정보문화 기업유치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서(이하 “사업신청서”라 한다)
2.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3.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계획서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법인 등기부등본(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6. 법인 인감증명서(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7.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8. 4대 보험료 완납증명서
9.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0.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기존기업,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현재까지)

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업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한 지원 대상자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전라남도 지식정보문화 기업유치 보조금 지원사업 적격여부 점검표(이하 “점검표”라 한다)를 작성해야 한다.

제13조(지원대상 선정 통보 등) ① 시장·군수는 접수된 사업신청서 사본 및 점검 결과를 도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보조금 지원사업 대상 선정 여부를 시장·군수에게 통보하고, 시장·군수는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에 따라 해당 시장·군수에게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는 5일 이내에 재조사를 시행하고 그 점검 결과를 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제14조(투자협약 체결) ① 도지사와 해당 시장·군수 및 선정기업 대표는 투자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 투자협약이 체결되지 않을 시에는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③ 투자협약은 도지사와 해당 시장·군수 및 선정기업 대표가 별지 제5호서식의 투자협약서에 서명함으로써 체결되며, 투자협약은 일반적으로 서면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다만, 선도기업 유치 등 도지사의 판단에 따라 대면 등의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다.

④ 투자협약 일정은 도지사가 해당 시장·군수 및 선정기업의 일정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15조(개시신고서 접수) 시장·군수는 투자협약 체결 이후 선정기업이 제5조에 따른 지원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면, 선정기업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접수해야 한다.

1. 별지 제6호서식의 전라남도 지식정보문화 기업유치 보조금 지원사업 개시신고서(이하

“개시신고서” 라 한다)

2. 근로자고용정보현황
3.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4. 표준근로계약서

제16조(사업개시 승인 등) ① 시장·군수는 개시신고서를 접수하고 5일

이내에 신고서 및 검토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도지사는 특별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되면 시장·군수에게 사업 개시를 통보하고, 시장·군수는 그 결과를 선정기업에 알려야 한다.

② 사업개시가 승인된 선정기업(이하 “보조기업” 이라 한다)의 보조금 지원기간은 개시신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3년으로 하고, 보조금 지원이 완료한 날부터 2년간 도내에서 보조금 지원사업을 지속해서 이행해야 한다.

③ 시장·군수는 선정기업이 투자협약 체결 전이라도 보조금 지원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판단되면 제15조에 따른 서류를 접수하고 사업 개시를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 지원사업 기간은 투자협약 체결 전이라도 개시신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산정한다.

제17조(실태점검 실시) ① 시장·군수는 보조기업이 개시신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5년간 연 2회 이상 별지 제7호서식의 전라남도 지식정보문화 기업유치 보조금 지원사업 정기 점검표에 따라 실태점검을 시행하고 보조금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② 시장·군수는 자체 계획에 따라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보조기업의 사업영위 여부, 인원 확인 등의 파악을 위하여 직원 출근부, 급여 지급내역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요구를 받은 보조기업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18조(보조금 신청) ① 도지사는 매 분기 투자협의회 개최 1개월 이전에 시장·군수에게 보조금을 신청하도록 통보해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보조기업이 개시신고서를 제출한 후 3년 동안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

③ 시장·군수는 제2항에 따라 보조금 신청을 받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전라남도 지식정보문화 기업유치 보조금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1. 법인 등기부등본(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2. 4대 보험료 완납 증명서
3.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4. 근로자고용정보현황(1년간 월별 피보험자수 포함)
5. 국세·지방세 납세 증명서
6.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7. 법인명의 통장(사본)

④ 시장·군수는 별지 제9호서식의 전라남도 지식정보문화 기업유치 보조금 신청 검토의견서(이하 “검토의견서” 라 한다) 및 보조금 신청서류 등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보조금을 신청해야 한다.

제19조(보조금 심의) ① 도지사는 제18조에 따라 보조금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투자협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도지사는 보조금 신청에 대한 서류심사와 보조금 지원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투자협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20조(집행계획 확정) 도지사는 투자협회의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보조금 집행계획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21조(보조금 교부신청) 집행계획을 통보받은 시장·군수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도비보조금 교부신청서(이하 “교부신청서”라 한다)를 5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2조(보조금 교부) 도지사는 교부신청서가 제출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일 이내에 보조금을 교부해야 한다.

제23조(보조금 지급) ① 보조금을 교부 받은 시장·군수는 보조기업으로부터 3년간 매년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접수한 후 보조기업 법인 명의의 통장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지급한다.

② 보조금은 개시신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30%, 2년이 되는 시점에 30%, 3년이 되는 시점에 40%로 분할하여 지급한다.

제24조(보조금 지급제한)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일체 지급하지 않으며, 보조금 지원사업을 정당하게 이행한 기간에 대해서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1. 개시신고 이후 최소 1년의 사업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2. 기업이 부도 또는 휴·폐업 상태로 지속적인 사업이 불가능한 경우
3. 개시신고서상 인원보다 적은 고용인원으로 금액 지원을 1회 받은 기업이 차기 지원 시점에서 개시신고서상 인원 이상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4. 사업신청일 이전 1년 이내에 정리해고 등 사업주의 인위적 감원 사실이 있으며, 특별한 사유 없이 감원한 인원을 보조금 지원사업 기간 내에 재고용하여 근무인원에 포함한 경우
5. 지식정보문화산업 영역이 아닌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6. 부정수급 행위로 적발된 경우
7. 타 법령 위반으로 보조금 수급이 제한된 경우
8.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제25조(보조금 실적보고 및 정산) ① 시장·군수는 보조금 지원기간이 완료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전라남도 지식정보문화 기업유치 보조금 정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정산서를 바탕으로 보조금 지원사업의 정산검사를 시행하고, 그 보조금액을 확정해야 한다.

제26조(보조금 감독 등) ① 도지사는 보조금이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부당하게 지원되었을 경우 보조금을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보조금 지원사업에 관련 자료의 제출 및 열람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

며, 시장·군수는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제5장 보조금 지원사업 변경승인 등

제27조(실태점검에 따른 시정조치 등) ① 시장·군수는 실태점검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보조기업의 대표에게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보조기업은 1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증빙서류를 해당 시장·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군수는 보조금 지원사업 실태점검에 따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도지사는 시장·군수의 점검 결과를 검토하여 보조기업이 개시신고서상의 정상적인 사업 활동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조금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1회 이상 보조금을 지원받은 보조기업이 제4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명기하여 투자협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28조(개시신고서 변경) ① 보조기업이 개시신고서 제출 이후 실제 근무인원의 변동이 발생할 경우 보조금 신청 전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전라남도 지식정보문화 기업유치 보조금 지원사업 개시 변경신고서(이하 “변경신고서”라 한다)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할 수 있다. 근무인원 증가 시, 당해연도 상반기에 한하여 변경신고서 제출이 가능하며, 변경된 보조금은 다음 연도에 반영된다.

② 시장·군수는 변경신고서 관련 서류 확인 및 현장 점검을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보조금 지원사업의 개시 변경승인을 결정하며, 그 결과를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장·군수는 변경승인을 통보받은 후 해당 사실을 기업에 알려야 한다.

④ 보조금 지원사업 개시 변경에도 불구하고 지원 기간은 기존의 보조금 지원사업 개시 신고한 날부터 3년으로 하며, 보조금은 변경신고서상 근무인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한다.

⑤ 도지사는 1회 이상 보조금을 지원받은 보조기업이 근무인원 변동으로 보조금 지원사업 개시 변경이 승인된 경우 관련 사실을 투자협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29조(기간산정 일시중지) ① 보조기업이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인원을 유지하지 못하게 된 경우 고용 관계 종료 1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시장·군수에게 기간산정 일시중지(이하 “일시중지”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는 보조기업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보조금 지원기간 산정(이하 “기간산정”이라 한다)에 대한 일시중지를 승인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는 일시중지를 승인한 경우 해당 기업에 알려야 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일시중지 조치는 1회에 한하며 최장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⑤ 일시중지가 승인된 선정기업(이하 “일시중지 기업”이라 한다)은 빠른 시일 안에 당초 보조사업 개시신고서상의 근무인원 충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30조(기간산정 재개) ① 일시중지 기업이 신규 고용을 통해 당초 개시신고서상 근무인원을 충족할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변경신고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 기간산정 재개 신청(이하 “재개신청”이라 한다)을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개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고용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재개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기업에 재개 승인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일시중지 기간은 보조금 지급을 위한 기간 산정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로 인한 협약 기간은 별도의 서면 합의 없이도 관련 공문에 근거하여 연장됨을 원칙으로 한다.

④ 도지사는 1회 이상 보조금을 지원받은 보조기업이 일시중지 또는 재개신청이 승인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투자협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31조(근무인원 산정) ① 근무인원 산정은 보조금 지원사업을 개시신고한 날부터 매 1년마다 보조기업의 연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로 계산하며, 이때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② 기존기업의 경우에는 사업신청일 기준 1년 이전의 근무인원을 보조금 신청 시까지 유지해야 한다.

③ 근무인원은 도내에 실제 거주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산정한다.

④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1주간 40시간으로 한다. 다만, 1주간 근무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근무인원을 산정하며 이때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⑤ 시장·군수는 근로자의 실거주 증빙 등 근무인원 산정을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조기업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32조(특수관계인 근무인원 산정) ① 보조기업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근무하고 있음을 소명할 경우 근무인원에 포함할 수 있다.

② 보조기업 임원의 직계가족은 근무인원에서 제외한다.

제33조(근무인원 증감에 따른 보조금 지급기준) ① 제17조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 결과 보조기업의 근무인원이 감원된 경우, 개시신고서에 기재된 근무인원의 60% 이상을 유지하는 경우에만 별표 2의 보조금 지원기준에 따라 한 차례만 보조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 후 다음 번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보조기업의 근무인원이 별표 2에 따른 보조금 지원기준에 지속적으로 미달하는 경우에는 감원된 근무인원 수와 관계없이 보조금 지급을 중단한다.

③ 제17조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 결과 보조기업의 근무인원이 증원된 경우, 개시신고서에 기재된 근무인원의 150% 이내의 범위에서 별표 2의 보조금 지원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다.

④ 제17조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 결과 개시신고서에 기재된 근무인원 대비 실제 근무인원의 감원비율이 40% 이하이거나 증원비율이 15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제28조에 따른 보조금 개시 변경 신고 및 승인을 거쳐 근무인원을 재산정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조기업이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실제 근무인원의 비율이 60% 이상 유지되는 않을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은 중단되며, 근무인원의 비율이 150%를 초과하더라도 보조금 지급 상한액은 근무인원의 15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⑥ 유형별 보조금 증감 지급 예시는 별표 5와 같다.

⑦ 신고인원 대비 실제 근무인원별 지식정보문화 기업유치 보조금 산정표는 별표 6과 같다.

제6장 보조금 지원사업 사후관리 등

제34조(보조금의 환수) ① 시장·군수는 보조기업이 개시신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해야 한다.

1. 보조금 지급 당시의 근무 인원수를 유지하지 않은 경우
2. 사업을 축소 또는 휴·폐업한 경우
3. 사업장의 주소를 타 시·도로 이전한 경우
4.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② 보조금 환수비율은 별표 7과 같다.

제35조(이행확보 조치) ① 시장·군수는 보조기업의 투자계획이행 담보를 위해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제출받거나 저당권 등을 설정하여 보조금 환수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보조기업은 보조금을 지급받는 1년마다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시장·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이행보증보험증권의 보험기간 및 보험금액은 제23조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개시신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3년이 되는 시점에는 보험기간을 2년으로 한다.

제36조(지도 및 관리) 시장·군수는 보조기업이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사전 안내함으로써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7조(중복지원의 금지) ① 이 지침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은 「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또는 도와 시·군의 각종 시책사업으로 지원하는 고용 관련 보조금과 중복지원이 불가하며, 시장·군수가 사후 적발 시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은 환수한다.

② 「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을 받은 경우, 이 지침에 따라 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다.

제38조(회계관리) 시장·군수는 보조금 관련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10년간 보존해야 한다.

제39조(준용) 이 지침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종전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한 기업에 대한 보조사업 기간 및 고용유지 기간 적용은 신청 당시 기준으로 한다. 이에 따라 보조기업의 보조사업 기간 및 고용유지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018년 7월 1일부터 2020년 5월 6일 중에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 : 개시신고서 제출 후 3년
2. 2020년 5월 7일 이후에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 : 개시신고서 제출 후 5년

제3조(보조금 환수 및 이행확보에 대한 적용례) 제34조, 제35조, 별표 7의 개정 규정은 이 지침 발령 이후 보조금을 지급하는 모든 기업에 적용한다.

[별표 1]

지원대상사업 업종분류표(제2조 제1호 관련)

구분	산업코드	산업내용	비고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581			
	58112	(만화 출판업 중) 인터넷 웹툰 출판		
	58113	(일반서적 출판업 중) 인터넷 웹소설 출판		
	58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1	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2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9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91	영화, 비디오물,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		
	59111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2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3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4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5912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592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59201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620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62021	컴퓨터 시스템 통합 지원 및 구축 서비스업		
	62022	컴퓨터시설 관리업		
	62090	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 운영 관련 서비스업		
	631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63111	자료 처리업		
	63112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639	기타 정보 서비스업		
	63991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01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70111	물리, 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업	
		70112	농림수산업 및 수의학 연구개발업	
		70113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70119	기타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70121	전기·전자공학 연구개발업	
70129		기타 공학 연구개발업		
70130		자연과학 및 공학 융합 연구개발업		
702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70201		경제 및 경영학 연구개발업		
70209	기타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별표 2]

보조금 지원기준(제7조 제1항, 제33조 제1항, 제33조 2항, 제33조 3항 관련)

구 분	근무인원	지원한도	지원금액 증감	지원 중단	비 고 (1인 평균)
이전·창업 지사·지점 기업	3인	1억원	0.66~1.5억원	근무인원 2인 미만	3,333만원
	4~6인	1.9억원	근무인원에 따라 60~150% 범위 내 지급	근무인원 60% 미만	3,166만원
	7~10인	2.9억원	〃	〃	2,900만원
	11~15인	3.9억원	〃	〃	2,600만원
	16~23인	5억원	〃	〃	2,174만원
기존기업 (도내기업)	추가3인	45백만원	30~67.5백만원	추가고용 2인 미만	1,500만원
	추가3인 초과	5억원	고용실적에 따라 60~150% 범위 내 지급	추가고용 60% 미만	

- * 보조금 감액은 1회에 한해 근무인원의 비율대로 감액 지급
- * 보조금 증액은 추가 근무인원에 따라 개시신고 기준 150% 이내에서 지급
- * 도내 기존 지식정보문화 기업의 경우 협약체결 후 추가 고용을 3인 이상 확대 유지하는 경우 3년에 걸쳐 1인당 1,500만원 기준 지원

[별표 3]

보조금 산출기준(제7조 제2항 관련)

구 분	근무인원	지원한도	산 출 기 준	한도인원
이전·창업 지사·지점 기업	3인	1억원		
	4~6인	1.9억원	1.0억원(3인) + 추가 1인당 30백만원 × 3인	
	7~10인	2.9억원	1.9억원(6인) + 추가 1인당 25백만원 × 4인	
	11~15인	3.9억원	2.9억원(10인) + 추가 1인당 20백만원 × 5인	
	16~23인	5억원	3.9억원(15인) + 추가 1인당 15백만원(한도까지)	23인
기존기업 (도내기업)	추가고용 3~34인	5억원	추가 고용(3인 이상) × 1인당 15백만원(한도까지)	34인

[별표 4]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절차(제9조 관련)

추진 내용	주체
① 보조금 지원사업 공고	전라남도
↓	
②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서 제출	기업→사군
↓	
③ 보조사업 대상 기업 선정여부 통보	전라남도→사군→기업
↓	
④ 보조사업 선정기업 투자협약 체결	전라남도↔사군↔기업
↓	
⑤ 보조사업 개시신고서 제출	기업→사군
↓	
⑥ 보조사업 개시 통보	전라남도→사군→기업
↓	
⑦ 보조사업 실태 점검	사군→기업
↓	
⑧ 보조금 신청서 제출	기업→사군
↓	
⑨ 보조금 신청	사군→전라남도
↓	
⑩ 보조금 집행계획 수립	전라남도
↓	
⑪ 보조금 심의	전라남도투자유치협의회
↓	
⑫ 보조금 집행계획 확정 통보	전라남도→사군
↓	
⑬ 보조금 교부 신청	사군→전라남도
↓	
⑭ 보조금 교부	전라남도→사군
↓	
⑮ 보조금 지급	사군→기업
↓	
⑯ 보조금 지급결과 보고	사군→전라남도

[별표 5]

보조금 증감 지급 예시(제33조 제6항 관련)

- (예시 1) 당초 4명 근무 신고(지원금액 기준 1억 3,000만 원)
 - 1회 지급시점에 2명만 근무한 경우
 - (지급검토) 기준인원 대비 감원 50%(60% 미만)로 지원사업 중단
 - 1회 지급시점 3명, 2회 지급시점 3명 근무한 경우
 - (1회 지급검토) 기준인원 대비 75%(60% 이상)로 1회에 한해 지급 가능
 - ▶ 금액 산출 : 3인 지급기준인 1억 원의 30%(1회차)인 3,000만원 지원
 - (2회 지급검토) 기준인원 대비 2회 이상 감원이 발생되어 지급 중단
 - 1회 지급시점 3명, 2회 지급시점 4명, 3회 지급시점 3명 근무한 경우
 - (1회 지급시점) 기준인원 대비 75%(60% 이상)로 1회에 한해 지급 가능
 - ▶ 금액 산출 : 3인 지급기준인 1억 원의 30%(1회차)인 3,000만원 지원
 - (2회 지급시점) 기준인원 대비 100%로 기준금액 지급 가능
 - ▶ 금액 산출 : 4인 지급기준인 1억3,000만원의 30%(2회차)인 3,900만원 지원
 - (3회 지급시점) 기준인원 대비 2회 이상 감원이 발생되어 지급 중단
 - 1회 지급시점 3명, 2회 지급시점 4명, 3회 지급시점 5명 근무한 경우
 - (1회 지급시점) 기준인원 대비 75%(60% 이상)로 1회에 한해 지급 가능
 - ▶ 금액 산출 : 3인 지급기준인 1억 원의 30%(1회차)인 3,000만원 지원
 - (2회 지급시점) 기준인원 대비 100%로 기준금액 지급 가능
 - ▶ 금액 산출 : 4인 지급기준인 1억3,000만원의 30%(2회차)인 3,900만원 지원
 - (3회 지급시점) 기준인원 대비 125%(150% 이하)로 5인 기준 지원금액 지급 가능
 - ▶ 금액 산출 : 5인 지급기준인 1억6,000만원의 40%(3회차)인 6,400만원 지원
 - 1회, 2회, 3회 지급시점 모두 5명 근무한 경우
 - (지급검토) 기준인원 대비 125%(150% 이하)로 5인 기준 지원금액 지급 가능
 - ▶ 금액 산출 : 5인 지급기준인 1억6,000만원을 매회 지원비율로 지급(30-30-40%)
 - 1회, 2회 지급시점 6명, 3회 지급시점 7명 근무한 경우
 - (1, 2회 지급검토) 기준인원 대비 150%(150% 이하)로 6인 기준 지원금액 지급 가능
 - ▶ 금액 산출 : 6인 지급기준인 1억9,000만원의 1, 2회 지급비율(30%-30%) 지급
 - (3회 지급검토) 기준인원 대비 175%(150% 이상)로 6인 기준(150%) 지원금액 지급
 - ▶ 금액 산출 : 6인 지급기준인 1억9,000만원의 3회 지급비율(40%) 지급
 - 1회, 2회, 3회 지급시점 모두 7명 근무한 경우
 - (지급검토) 기준인원 대비 175%(150% 이상)로 6인 기준(150%) 지원금액 지급
 - ▶ 금액 산출 : 6인 지급기준인 1억9,000만원을 매회 지원비율로 지급(30-30-40%)

[별표 6]

지식정보문화 기업유치 보조금 산정표(제33조 제7항 관련)

구분	신고 인원(명)	실제 근무인원(명)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지원금액(억원)	3	0.66	1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4	중단	1	1.3	1.6	1.9	1.9	1.9	1.9	1.9	1.9	1.9	1.9	1.9	1.9	1.9	1.9	1.9	1.9	1.9	1.9	1.9	1.9
	5	중단	1	1.3	1.6	1.9	2.15	2.15	2.15	2.15	2.15	2.15	2.15	2.15	2.15	2.15	2.15	2.15	2.15	2.15	2.15	2.15	2.15
	6	중단	중단	1.3	1.6	1.9	2.15	2.4	2.65	2.65	2.65	2.65	2.65	2.65	2.65	2.65	2.65	2.65	2.65	2.65	2.65	2.65	2.65
	7	중단	중단	중단	1.6	1.9	2.15	2.4	2.65	2.9	3.1	3.1	3.1	3.1	3.1	3.1	3.1	3.1	3.1	3.1	3.1	3.1	3.1
	8	중단	중단	중단	1.6	1.9	2.15	2.4	2.65	2.9	3.1	3.3	3.3	3.3	3.3	3.3	3.3	3.3	3.3	3.3	3.3	3.3	3.3
	9	중단	중단	중단	중단	1.9	2.15	2.4	2.65	2.9	3.1	3.3	3.5	3.5	3.5	3.5	3.5	3.5	3.5	3.5	3.5	3.5	3.5
	10	중단	중단	중단	중단	1.9	2.15	2.4	2.65	2.9	3.1	3.3	3.5	3.7	3.9	3.9	3.9	3.9	3.9	3.9	3.9	3.9	3.9
	11	중단	중단	중단	중단	중단	2.15	2.4	2.65	2.9	3.1	3.3	3.5	3.7	3.9	4.05	4.05	4.05	4.05	4.05	4.05	4.05	4.05
	12	중단	중단	중단	중단	중단	중단	2.4	2.65	2.9	3.1	3.3	3.5	3.7	3.9	4.05	4.2	4.35	4.35	4.35	4.35	4.35	4.35
	13	중단	중단	중단	중단	중단	중단	2.4	2.65	2.9	3.1	3.3	3.5	3.7	3.9	4.05	4.2	4.35	4.5	4.5	4.5	4.5	4.5
	14	중단	중단	중단	중단	중단	중단	중단	2.65	2.9	3.1	3.3	3.5	3.7	3.9	4.05	4.2	4.35	4.5	4.65	4.8	4.8	4.8
	15	중단	중단	중단	중단	중단	중단	중단	2.65	2.9	3.1	3.3	3.5	3.7	3.9	4.05	4.2	4.35	4.5	4.65	4.8	4.95	4.95
	16	중단	중단	중단	중단	중단	중단	중단	중단	2.9	3.1	3.3	3.5	3.7	3.9	4.05	4.2	4.35	4.5	4.65	4.8	4.95	5
	17	중단	중단	중단	중단	중단	중단	중단	중단	중단	3.1	3.3	3.5	3.7	3.9	4.05	4.2	4.35	4.5	4.65	4.8	4.95	5
	18	중단	중단	중단	중단	중단	중단	중단	중단	중단	3.1	3.3	3.5	3.7	3.9	4.05	4.2	4.35	4.5	4.65	4.8	4.95	5
	19	중단	중단	중단	중단	중단	중단	중단	중단	중단	중단	3.3	3.5	3.7	3.9	4.05	4.2	4.35	4.5	4.65	4.8	4.95	5
	20	중단	중단	중단	중단	중단	중단	중단	중단	중단	중단	3.3	3.5	3.7	3.9	4.05	4.2	4.35	4.5	4.65	4.8	4.95	5
	21	중단	중단	중단	중단	중단	중단	중단	중단	중단	중단	중단	3.5	3.7	3.9	4.05	4.2	4.35	4.5	4.65	4.8	4.95	5
	22	중단	중단	중단	중단	중단	중단	중단	중단	중단	중단	중단	중단	3.7	3.9	4.05	4.2	4.35	4.5	4.65	4.8	4.95	5
	23	중단	중단	중단	중단	중단	중단	중단	중단	중단	중단	중단	중단	3.7	3.9	4.05	4.2	4.35	4.5	4.65	4.8	4.95	5

[별표 7]

보조금 환수비율(제34조 제2항 관련)

A. 실제 근무인원 미달시 보조금 환수비율

보조금 지원받은 인원대비 실제 근무인원 비율 (보조금 개시신청한 날부터)	환 수 비 율
20% 미만	전액
20% 이상 ~ 40% 미만	80%
40% 이상 ~ 60% 미만	70%
60% 이상 ~ 80% 미만	50%
80% 이상 ~ 100% 미만	30%

B. 사업기간 미달시 보조금 환수비율

사 업 기 간 (보조금 개시신청한 날부터)	환 수 비 율
3년 미만	전액
3년 이상 ~ 3년 6개월 미만	80%
3년 6개월 이상 ~ 4년 미만	70%
4년 이상 ~ 4년 6개월 미만	50%
4년 6개월 이상 ~ 5년 미만	30%

※ 근무인원(A)과 사업기간(B) 모두 환수조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둘 중 환수비율이 높은 경우를 적용함.

[별지 제2호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성 명 :

주민번호 : (전화번호 :)

주 소 :

1. 「전라남도 지식정보문화 기업유치 보조금 지원 사업」에 있어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지식정보문화 기업유치 보조금 지원금액 산정을 위한 근무인원 산정 및 중복참여 여부 등에 활용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고용보험 등 피보험자격취득 상실이력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서류,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2. 「전라남도 지식정보문화 기업유치 보조금 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필요하며, 전라남도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참여자로부터 제공받는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3. 전라남도는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하고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를 제공한 참여자는 언제나 자신이 입력한 개인정보의 열람수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그러나 신청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으며 만약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직접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본인은 위 1~3의 내용에 따른 「전라남도 지식정보문화 기업유치 보조금 지원사업」 참여·운영을 위해 개인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1. 법인개요

- 법 인 명 :
- 법인구성
 - 대표이사 :
 - 등기이사 :
 - 직원현황 :
- 주 소
 - 현 주 소 :
 - 이전주소 :
 - 이전계획 :
- 업 종 :

2. 연차별 사업추진 및 고용계획

추진시기	세부 사업내용	투자계획 (억원)	고용계 획(명)	비고
합 계				
1년차	○ - ○ -			
2년차	○ - ○ -			
3년차	○ - ○ -			

[별지 제4호서식]

전라남도 지식정보문화 기업유치 보조금 지원사업 적격여부 점검표

접수번호	20 - 호	기업유형	□이 전 □창업 □지사·지점 □기 존		
법 인 명			대 표 자		
업종 분류코드			사업자등록번호		
연 락 처	사무실	핸드폰		E-mail	
현 소재지					
이전예정지					
근무인원	명	보조사업 개사(예정)일			

점검사항				
연번	점검항목	점검내용	점검결과	비고
1	업종확인	법인 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이 실질적으로 지식정보문화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적합, 부적합)	
2	인원확인	상시근무인원이 3인 이상으로 근무인원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	(적합, 부적합)	
3	중복지원	· 「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또는 전라남도 및 시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지원사업에 따른 고용 관련 보조금 수급 여부	(적합, 부적합)	
4	체납확인	·국세, 지방세 등 각종 세금 및 4대 보험료 등 체납여부	(적합, 부적합)	
5	소재지 확인	·해당 기업의 법인 주소지가 전라남도 내에 있거나 이전 계획이 있는지 여부	(적합, 부적합)	
6	구비서류 확인	·소정의 제출 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신청하였는지 여부	(적합, 부적합)	
점검결과			(적합, 부적합)	

이상의 점검결과가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별지 제5호서식]

투자협약서

(기업명), 전라남도, (시·군명)은 다음과 같이 투자협약을 체결한다.

1. (기업명)은 (시·군명)에 투자한다.
2. 전라남도과 (시·군명)은 투자기업의 성공적 투자를 위하여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한다.
3. 투자기업은 지역인재 채용·지역생산품구매·지역기업 이용 등에 적극 참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 등에 최선을 다한다.
4. 본 투자협약서는 투자기업, 전라남도, (시·군명)이 서명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부를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기 업 명
 ○ ○ ○

 전라남도지사
 김 영 록

 시 장·군 수
 ○ ○ ○

[별지 제7호서식]

전라남도 지식정보문화 기업유치 보조금 지원사업 정기점검표

접수번호	20 - 호	기업유형	<input type="checkbox"/> 이 전 <input type="checkbox"/> 창업 <input type="checkbox"/> 지사·지점 <input type="checkbox"/> 기 존		
법 인 명			대 표 자		
업 종 (분류코드)			사 업 자 등록번호		
연 락 처	사무실	핸드폰		E-mail	
소 재 지					
근무인원	명	보조사업 개시일			

점검회차					
<input type="checkbox"/> 1년 차 <input type="checkbox"/> 2년 차 <input type="checkbox"/> 3년 차 <input type="checkbox"/> 4년 차 <input type="checkbox"/> 5년 차 (해당하는 곳에 √ 표시)					
<input type="checkbox"/> 정기 1회 <input type="checkbox"/> 정기 2회 (해당하는 곳에 √ 표시)					

점검사항			
연번	점검항목	점검내용	점검결과
1	업종확인	· 지식정보문화업종으로 실제 사업 영위	(적합, 부적합)
2	인원확인	· 개시신고서 상의 근무 인원 유지 및 도내 실질적 근무 확인 (근로자고용정보현황, 직원 출근부 등 확인)	(적합, 부적합)
3	소재지확인	· 해당 기업이 신고한 주소지에서 사업 활동 지속 여부	(적합, 부적합)

점검자 의견					
--------	--	--	--	--	--

이상의 점검결과가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별지 제8호서식]

전라남도 지식정보문화 기업유치 보조금 신청서

접수번호	20 - 호		기업유형	<input type="checkbox"/> 이 전 <input type="checkbox"/> 창업 <input type="checkbox"/> 지사·지점 <input type="checkbox"/> 기 존	
법 인 명			대 표 자		
사 업 자 등록번호			신청회차	<input type="checkbox"/> 1회차 <input type="checkbox"/> 2회차 <input type="checkbox"/> 3회차	
연 락 처	사무실		핸드폰		E-mail
주 소					
신고 근무인원	명		실제 근무인원	명	
지원금 신청 대 상 기 간	부터	지 원 금 신청금액(계)	금 원	
	까지		(₩)	
지급희망 은행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명
<p>위와 같이 「지식정보문화 기업유치 보조금 지원사업」의 보조금을 신청합니다.</p> <p>년 월 일</p> <p>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p> <p>(또는 대리인) (전화)</p>					
전 라 남 도 지 사 귀하					

[별지 제9호서식]

전라남도 지식정보문화 기업유치 보조금 신청 검토의견서

접수번호	20 - 호	기업유형	<input type="checkbox"/> 이 전 <input type="checkbox"/> 창업 <input type="checkbox"/> 지사·지점 <input type="checkbox"/> 기 존
법인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신청회차	<input type="checkbox"/> 1회차 <input type="checkbox"/> 2회차 <input type="checkbox"/> 3회차
주소			
신고 근무인원	명	실제 근무인원	명
지원금 신청 대상기간 ~	지원금 신청금액(계)	금 원 (₩)

검토사항				
연번	점검항목	점검내용	점검결과	비고
1	업종 확인	· 지식정보문화업종으로 실제 사업 영위	(적합, 부적합)	
1	인원 확인	· 도내 실질적 근무인원 확인	(적합, 부적합)	
2	소재지 확인	· 소재지 이전 유무	(적합, 부적합)	
4	구비서류 확인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일체 확인	(적합, 부적합)	
점검결과			(적합, 부적합)	

검토자 의견

이상의 검토 의견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0호서식]

도비보조금 교부신청서

사 업 명					
신 청 자	주 소				
	기 관 명				
	대표자명		전화번호		
교부신청금액	일금 원(₩)				
총 사업비 (단위: 백만원)	계	도비	사군비	자부담	기타
사업개요	○ 보조사업의 목적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				
전라남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도비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신 청 일 :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날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별지 제12호서식]

전라남도 지식정보문화 기업유치 보조금 정산서

1. 보조기업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사업자등록번호	
등록업종		사업개시일	

2. 사업 내용

사업기간	
보조금(총액)	

3. 보조금 집행실적

(단위: 천 원)

구분	집행(정산)액	잔 액	반납
1년 차 교부액			
2년 차 교부액			
3년 차 교부액			

4. 사업비 정산내역(사업 완료시) : 별첨

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사업비 정산 내역서

년 월 일

보조사업자 :

서명 또는 날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전라남도 공고 제2021-798호

발굴 매장문화재 소유자 유·무 확인 공고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전라남도 관내에서 발굴조사 하여 출토된 매장문화재의 소유자 유·무를 확인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8. 5.

전라남도지사

1. 소유자 유·무 확인 대상 발굴 매장문화재

연번	유 물 명	수량	조사지역(유적명)	조사기관, 보관처	조 사 기 간
1	청자대접 등	2점 (6상자)	신안군 입해면 학교리 509-1 (신안 보조축구장 조성부지 내 유적)	고대문화재연구원	2021.3.4-5.27
2	방추차 등	9점 (10상자)	무안군 망운면 피서리 388 일원 (무안 항공특화단지 부지 내 유적)	동서종합문화재연구원	2021.2.4.-5.28
3	동검 등	489점 (60상자)	강진군 성전면 명산리 일원 (광주-강진 고속국도 2공구 내 유적)	한빛문화재연구원	' 18.7.15-' 21.4.21
4	와형토제품	1점 (2상자)	나주시 다시면 동곡리 산63-10 (나주 동곡리 대곡 고분)	동신대문화박물관	' 20.8.13-' 21.3.20
5	청자대접 등	6점 (21상자)	곡성군 오신면 연화리 932 (곡성 남해골포장 부지 내 유적)	동북아지석묘연구소	2021.2.24-4.16
6	완 등	3점 (4상자)	무안군 몽탄면 양장리 11 (무안 양장리 축사부지 내 유적)	민족문화유산연구원	2021.3.24-4.27
7	백자	2점	여주시 관문동 290 (여수 원도심 하수관로 내 유적)	나라문화연구원	2021.4.19-4.23
8	벼루 등	54점 (30상자)	영광군 영광읍 백학리 320-2일원 (영광 백학리 공동주택 내 유적)	영해문화유산연구원	2021.2.15-4.30
9	암키와 등	6점 (1상자)	여주시 군지동 471 (여수 진남관 정비지 내 유적)	나라문화연구원	2021.5.3-5.27
10	호형토기 등	10점 (12상자)	여주시 주심동 435 일원 (여수 국가산단 녹지구간 내 유적)	동서종합문화재연구원	2021.3.25-6.4
11	청자 등	10점	해남군 산이면 구성리 449-1 (영암해남 기업도시 조성부지 내 유적)	나라문화연구원	' 19.4.22-' 21.6.21
12	분청완 등	26점 (19상자)	여주시 소리면 죽림리 570 (여수 죽림지구 아파트부지 내 유적)	나라문화연구원	' 18.4.3-' 19.2.21

2. 공고기간 : 2021. 8. 5 ~ 2021. 8. 13

3. 발굴매장문화재 열람 장소 : 전라남도 문화자원과

4. 소유권 주장 관련 자료제출

발굴 매장문화재의 소유권을 주장하고자 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 후 9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전라남도지사(참조 : 문화자원과장, 전화 061-286-5326, FAX 061-286-4771)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가.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정당한 근거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목포시 고시 제2021-131호

목포 도시계획시설(주차장 34호)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1. 목포시 옥암동 1216번지에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사업명 : 미래 주차타워 신축공사】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및 제97조, 및 제10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목포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1. 8. 5.

목포시장

■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내용

구분 항목	고시내용				비고
1. 사업시행 위치	○ 사업위치 : 목포시 옥암동 1216번지				
2. 사업종류 및 명칭	○ 사업종류 : 목포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 사업명칭 : 미래 주차타워 신축공사				
3. 사업면적 또는 규모	○ 대지면적 : 897.5㎡ ○ 주차대수 : 30대(일반 27대, 장애인전용주차 3대) ○ 구 조 : 철근콘크리트 구조				
	층 별	건축면적 (㎡)	연면적 (㎡)	용 도	비고
	지상1층	77.76	637.25	제1종근린생활시설 (소매점)	
		729.29	169.8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	
	지상2층	-	793.61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	
	지상3층	-	605.81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	
합 계	807.05	2,206.47			
4. 사업 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소 :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1775 ○ 성명 : 주식회사 미래종합건설(대표이사 김성호)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사업착수일 : 2021. 8. ○ 준공예정일 : 2023. 12. 25.				

구분 항목	고 시 내 용	비 고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등 세목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라남도 목포시 옥암동 1216번지 (지목: 주차장, 면적: 897.5㎡, 소유자 : 주식회사 미래종합건설) 	
7. 실시계획 관계도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 도서 : 게재 생략(목포시청 도시계획과 비치) 	
8. 실시계획 열람공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람 기간 : 2021. 07. 15. ~ 2021. 07. 29.(14일간) ○ 열람장소 : 목포시청 도시계획과 	
9. 기타 문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의 전화 : 061- 270 - 3447(목포시청 도시계획과)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등 세목조서

연번	토지조서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동	지번				성명	주소	성명	주소	
합계				897.50	897.50					
1	옥암	1216	주차장	897.50	897.50	주식회사 미래종합 건설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1775	주식회사 광주은행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225 (대인동)(하당지점)	

순천시 고시 제2021-158호

순천 도시계획시설(유수지)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순천시 도시계획시설(유수지)사업을 위한 실시계획인가 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8. 5.

순천시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순천시 장천동 44-5번지 일원
2. 도시계획시설(유수지) 실시계획 내용

명 칭	종류	규 모		사업시행자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시설명	면 적 (㎡)	주 소	성 명	
장천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유수지	15호	4,874	순천시 장명로 30	순천시장 (건설과장)	실시계획인가일 ~ 2022. 12. 31.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다음
4. 관계도서는 순천시 도시과(☎ 061-749-6315)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 권리자의 성명 · 주소 등의 세목조서

가. 토지 총괄조서

(단위 : 필지, m²)

구 분	합 계			국·공유지		사유지		비 고
	필지수	편입면적	구성비	필지수	편입면적	필지수	편입면적	
합 계	1	4,874	100	1	4,874	-	-	
대 지	1	4,874	100	1	4,874	-	-	

나. 토지세목조서

(단위 : 필지, m²)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²)		소유자 현황		이해관계인	비고
				공부상	편입	성 명	주 소		
		1필지		5,025	4,874				
1	순천시 장천동	44-5	대	5,025	4,874	순천시	순천시 장명로 30		

다. 지장물 세목조서

구분	수 용 할 건 물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소재지	지번	물건의종류	구조 및 규격	수 량	단위	성 명	주 소		
1	순천시 장천동	44-5	사무실 및 화장실	조적조 함석	20	m ²	순천시	순천시 장명로 30		
			컨테이너	9*3	1식	식				
			아스콘포장		105m ²	m ²				
			담장	조적 110*2.2	242m ²	m ²				
			화단		50m	m				
			사철나무 및 대나무 등 울타리	-	100m	m				

순천시 공고 제2021-1791호

순천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완료 공고

순천시 서면 선평리 73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완료 공고합니다.

2021. 8. 5.

순천시장

1. 위 치 : 순천시 서면 선평리 73번지 일원
2.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내용

명 칭	종류	규 모			비 고	사업시행자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
		시설명	면 적 (㎡)	연 장(m) (폭)		주 소	성 명	
도시계획도로 (중로1-14호, 소로1-106호, 소로1-500호) 개설공사	도로	중로 1-14호	13,206	L=648(20)	추후 준공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511, 4층 (삼성동, 골든플래워)	(주)코람코 자산신탁 대표 정준호	2020.6.30.~ 2022.5.31.
		소로 1-106호	인가: 2,705.8 준공: 1,252.9	인가: L=284(9~10) 준공: L=125(10)	금회 준공 (일부준공)			
		소로 1-500호	준공: 931	준공: L=91(10)	금회 준공 (전체준공)			

3. 관계도서는 순천시청 도시과(☎ 061-749-6315)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광양시 고시 제2021-300호

광양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사항과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광양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경미한 변경) 사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 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 8. 5.

광양시장

I.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1.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종류	위 치	면적(m ²)			최 초 결정일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5	공공청사	경제자유구역청	광양읍 칠성리 70	16,418			1986. 7. 5.
변경	15	공공청사	경제자유구역청	광양읍 칠성리 70		증 109	16,527	

2.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 사유
15	공공청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면적 변경 기정 16,418㎡ ⇒ 변경 16,527㎡ (증 1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 정정

II. 실시계획인가 사항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3. 사업시행 면적 또는 규모(변경)

○ 대지면적: 16,418㎡ → 16,527㎡

○ 건축규모

- 건축면적: 기정: 3,587.69㎡ → 4,634.91㎡, 변경: 3,587.69㎡ → 4,550.55㎡

- 연 면 적: 기정: 9,579.68㎡ → 12,091.31㎡, 변경: 9,579.68㎡ → 12,841.73㎡

- 건 폐 율: 기정: 21.85% → 28.23%, 변경: 21.85% → 27.53%

- 용 적 률: 기정: 55.28% → 74.65%

변경: 55.28% → 73.13% (※용적률산정면적: 12,086.51㎡)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5. 사업 착수 및 준공 예정일(변경)
 - 당 초: 2020. 8. 13. ~ 2021. 6. 30.
 - 변 경: 2020. 8. 13. ~ 2021. 12. 31.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조서 : 게재생략
7. 관계도서 : 게재 생략(광양시청 보건행정과 및 도시재생과 비치)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보건위생과(☎061-797-4051) 및 도시재생과(☎061-797-28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양시 고시 제2021-304호

광양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제101호)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광양시 태인동 125-23번지 일원에 광양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제101호)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제91조, 같은 법률 시행령 제97조 및 제100조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8. 5.

광양시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광양시 태인동 125-23번지 외 1필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 류 : 광양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제101호) 사업
 - 명 칭 : 태인동 열린주차장 및 가온카페 조성공사
3. 사업시행 면적 또는 규모(변경)
 - 면 적 : 625㎡
 - 규 모
 - 건축면적: 95.89㎡
 - 연 면 적: 92.35㎡
 - 건폐율 / 용적률: 15.34% / 14.78%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성 명 : 광양시장(도시재생과장)
 - 주 소 : 광양시 시청로 33(중동)
5. 사업 착수 및 준공 예정일: 2020. 6. 18. ~ 2021. 8. 31.(변경없음)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조서

연번	지번	지목	편입면적 (㎡)	지적/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주차장	건축	조경	성명	주소	
합 계			625	490.11	95.89	39			
1	125-23	대	553	418.11	95.89	39	광양시		
2	125-48	답	72	72			광양시		

7. 관계도서 : 게재 생략(광양시 도시재생과 비치)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도시재생과(☎061-797-2843, 28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양시 고시 제2021-305호

광양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제211호)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광양시 광영동 790-1번지 외 9필지에 광양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제211호)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제91조, 같은 법률 시행령 제97조 및 제100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8. 5.

광양시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광양시 광영동 790-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 류 : 광양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제211호) 사업
 - 명 칭 : 광영동 시민광장 조성사업
3. 사업시행 면적 또는 규모(변경)
 - 시행면적 : 2,067.6㎡
 - 규 모
 - 건축면적: 526.18㎡
 - 연 면 적: 2,175.12㎡
 - 건 폐 율: 25.45%
 - 용 적 률: 26.63%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성 명 : 광양시장(도시재생과장)
 - 주 소 : 전라남도 광양시 시청로 33(중동)
5. 사업 착수 및 준공 예정일(변경)
 - 당 초 : 2020. 4. 2. ~ 2021. 3. 31.
 - 변 경 : 2020. 4. 2. ~ 2022. 12. 31.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조서 : 다음
7. 관계도서 : 게재 생략(광양시청 도시재생과 비치)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도시재생과(☎061-797-2850, 28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구분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비고
						주소	성명	
합 계			2,067.6	2,067.6				
1	790-1	대	204.4	204.4	광양시			
2	790-2	대	210.8	210.8	광양시			
3	790-3	대	210.9	210.9	광양시			
4	790-4	대	211	211	광양시			
5	790-5	대	196.8	196.8	광양시			
6	790-6	대	196.1	196.1	광양시			
7	790-7	대	211	211	광양시			
8	790-8	대	211.1	211.1	광양시			
9	790-9	대	210.9	210.9	광양시			
10	790-10	대	204.6	204.6	광양시			

고흥군 고시 제2021-109호

고흥 군계획시설(소공원, 도로, 주차장)사업 토지 세목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흥군 고시 제2019-89호 (2019.11.15.) 및 제2021-99호(2021.07.08.)호로 승인된 고흥만 지구 일원 관광 시설사업 확충을 위한 고흥 군계획시설(소공원, 도로, 주차장)사업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세목 고시합니다.

2021. 8. 5.

고흥군수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전남 고흥군 도덕면 용동리 산9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사업의 종류 : 고흥 군계획시설(소공원, 도로, 주차장) 사업
 - 나. 사업의 명칭 : 고흥지구 관광지조성사업 부대시설공사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가. 사업시행면적
 - 소공원 : 6,973㎡
 - 도 로 : 670㎡
 - 주차장 : 7,776㎡
 - 나. 사업시행규모

규 모				기능	연장 (m)	시점	종점	사용형태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소로	1	4	10	국지도로	67	용동리 산6-1	용동리 산9	일반도로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 고흥군수
 - 나. 주 소 :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고흥군청로 1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변경)
 - 가. 착수예정일 : 2018. 01. 18.
 - 나. 준공예정일 : 2022.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관리자의 성명·주소 : 다음

7. 관계도서 열람장소 : 고흥군 관광정책실 시설운영팀(☎061-830-5696)
8. 열람기간 : 게재일로부터 15일간

고흥지구 관광지 부대시설 조성사업 세목고시 토지조사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당초지번)	지목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편입면적 (㎡)	지분	성명 또는 명칭	등기부상 주소	등기 송달 주소	성명또는 명 칭	주 소		권리종류 및내용
1	고흥군 도덕면 용동리	산6-3 (산6)	임	384	1/1	한국 농어촌 공사	전남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전남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2	고흥군 도덕면 용동리	산5 (산5)	임	417	1/1	주식회사 동광개발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순포로 188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순포로 188	(주)우리 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회현동1가) (발산역지점)	근저당권	
3	고흥군 도덕면 용동리	산8-4 (산8-4)	임	296	1/1	한국 농어촌 공사	전남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전남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4	고흥군 도덕면 용동리	산9 (산9)	임	3,574	1/1	고흥군	전남 고흥군 고흥읍 고흥군청로 1	전남 고흥군 고흥읍 고흥군청로 1				
5	고흥군 도덕면 용동리	산12 (산12)	임	3,216	1/1	고흥군	전남 고흥군 고흥읍 고흥군청로 1	전남 고흥군 고흥읍 고흥군청로 1				
6	고흥군 도덕면 용동리	산12-5 (산12-5)	임	2,189	1/1	고흥군	전남 고흥군 고흥읍 고흥군청로 1	전남 고흥군 고흥읍 고흥군청로 1				
7	고흥군 도덕면 용동리	30-10 (30-10)	과	1,174	1/1	고흥군	전남 고흥군 고흥읍 고흥군청로 1	전남 고흥군 고흥읍 고흥군청로 1				
8	고흥군 도덕면 용동리	산6-1 (산6-1)	임	354	1/1	한국 농어촌 공사	전남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전남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소 계	8 필지		11,604	-	11명			1명			

고흥지구 관광지 조성사업 부대시설공사 세목고시 지장물 조서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및 규 격	수 량	단 위	소유자		관계인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관리 종류
고흥 도덕 용동	산9	산벚나무	-	50	주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도면 중앙로 994번길 2-5	신정두			
		산벚나무		130	주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도면 중앙로 994번길 2-5	신정두			
		산벚나무		21	주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도면 중앙로 994번길 2-5	신정두			
고흥 도덕 용동	산12	후박나무		1	주	전라남도 고흥군 도덕면 금호길 200-2	신연수			
		관정		1	식	전라남도 고흥군 도덕면 금호길 200-2	신연수			
고흥 도덕 용동	산12-5	콘테이너		2	개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시장길 28-7	류경순			
		울타리		1	식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시장길 28-7	류경순			
고흥 도덕 용동	30-10	매실나무		40	주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시장길 28-7	류경순			
		매실나무		124	주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시장길 28-7	류경순			
		PP물탱크		1	식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시장길 28-7	류경순			
소 계	10 건					3명				

고흥군 공고 제2021-1482호

고흥 군관리계획(광장) 결정(변경)(안) 주민 공람 공고

고흥군 풍양면 한동리 701-8번지 일원에 풍양 유자석류 축제장 조성을 위한 군관리계획(광장)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 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8. 5.

고흥군수

1.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가. 공간시설 결정(변경) 조서

광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A	광장	일반 광장	풍양면 한동리 701-8번지	-	증)27,694	27,694	-	

광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A	광장	□일반광장 신설 □면적 : 27,694㎡	□풍양 유자·석류 축제장 효율적인 개발 및 관리를 위한 일반 광장 결정을 통해 여가 공간 조성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 상에 기여

2. 공람기간 : 게재일로부터 14일간
3. 관계도서 : 게재생략(공람장소비치)
4. 공람장소 : 고흥군청 건설과, 관광정책실, 풍양면사무소
5. 관계도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니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흥군청 건설과(☎061-830-54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순군 고시 제2021-100호

화순 군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화순 군계획시설(도로)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및 제100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아래와 같이 인가하고 고시합니다.

2021. 8. 5.

화순군수

-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전남 화순군 화순읍 교리 103-2번지 일원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화순 군계획시설사업(도로)
 - 명 칭 : 화순읍 선거관리위원회~화순초등학교 도시계획도로(소로2-44호선)개설공사
- 3. 면적 및 규모 : 3,244㎡

노 선 명	연장(m)	폭원(m)	면적(㎡)	비고
소로 2-44	197	10	3,244	

-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 전남 화순군 화순읍 동헌길 23
 - 성 명 : 화 순 군 수
-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 인가일 ~ 2022. 06. 31
-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다음
-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 도시과(☎061-379-38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조서

연번	토지조서		지목	지적면적 (㎡)	편입예정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소재지	지번				주소	성명	주소	성명	
1	화순읍 교리	193-2	도	288	288		화순군			
2	화순읍 교리	193-1	대	180	180		화순군			
3	화순읍 교리	196-2	도	202	202	화순군 화순읍 만연리	박*경			미등기
4	화순읍 교리	193-8	도	68	68		화순군			
5	화순읍 교리	196-1	대	46	46		화순군			
6	화순읍 교리	196-5	대	34	34		화순군			
7	화순읍 교리	145-8	도	276	276		화순군			
8	화순읍 교리	95-3	도	3,401	79		화순군			
9	화순읍 교리	106-1	도	40	40	화순군 화순읍 향청리 132	김*선			미등기
10	화순읍 교리	107-2	도	278	278	화순군 화순읍 훈리 37	박*석			미등기
11	화순읍 교리	358	구	1,289	249		농수산부			
12	화순읍 교리	372	도	8,829	126		건설부			
13	화순읍 교리	154-1	대	28	28		화순군			
14	화순읍 교리	153-1	대	10	10		화순군			
15	화순읍 교리	109-2	도	228	228	화순군 화순읍 만연리	윤*은			미등기
16	화순읍 교리	150-3	대	48	48		화순군			
17	화순읍 교리	150-2	도	3	3	화순군 화순읍 교리	조*선			미등기
18	화순읍 교리	149-1	대	53	53		화순군			
19	화순읍 교리	368	도	141	141		기획재정부			
20	화순읍 교리	127-2	도	337	337		기획재정부			
21	화순읍 교리	133-1	대	31	31	화순군 화순읍 교리 133	박*근			등기

연번	토지조서		지목	지적면적 (㎡)	편입예정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소재지	지번				주소	성명	주소	성명	
22	화순읍 교리	367	도	69	69		건설부			
23	화순읍 교리	130-3	차	202	202		화순군			
24	화순읍 교리	193-1	대	180	180		화순군			
25	화순읍 교리	195	도	24	24		화순군			
26	화순읍 교리	195-1	도	6	6		화순군			
27	화순읍 교리	156-2	대	9	9		화순군			
28	화순읍 교리	151-2	대	5	5		화순군			
29	화순읍 교리	132-3	대	3	3		화순군			
30	화순읍 교리	132-4	대	1	1		화순군			

해남군 고시 제2021-132호

**해남 화원농협 체험·판매장 설치를 위한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해남군 화원면 청용리 일원의 화원농협 부지 내 체험·판매장 설치를 위한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동법 제32조,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합니다.

2021. 8. 5.

해남군수

1. 해남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조서
2. 해남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도
3. 해남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지형도면고시도
4. 관계도서를 해남군청 안전도시과(061-530-544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1. 해남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 변경 조서 : 변경없음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m ²)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관 리 지 역	34,172	-	34,172	100.0	
계획관리지역	33,904	-	33,904	99.2	
생산관리지역	268	-	268	0.8	

나.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

도면표시 번 호	지구명	지구의 세 분	위 치	제한 내용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계			-	-	34,172	-	34,172		
11	청 용 지 구	산업유통 개발진흥지구	회원면 청용리 607번지 일원	층수:3층이하 높이:20m이하	34,172	-	34,172	2009.1	

다.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도면표시 번 호	구역명	위 치	제한 내용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계		-	-	34,172	-	34,172		
14	지구단위 계획구역	회원면 청용리 607번지 일원	-	34,172	-	34,172	2009.1	

라.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 도로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 용 형 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1	1	11	국지 도로	23	국도77호선	김치공장 구역내	일반 도로	-	2009.1	진입 도로

나) 공간시설

■ 녹지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기정	녹지 ①	완충녹지	회원면 청용리 789임 일원	4,047.1	-	4,047.1	2009.1	완충 녹지

2)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총괄조서 : 변경

구분	가구번호	획지 번호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		34,172	-	34,172	
폐지	1	1-1	해남군 화원면 청용리 607번지 일원	244.3	감)244.3	-	경비실
기정		1-3	해남군 화원면 청용리 607번지 일원	263	-	263	진입도로
기정		1-4	해남군 화원면 청용리 609번지 일원	277	-	277	진입도로
기정	2	2-1	해남군 화원면 청용리 607번지 일원	690.8	-	690.8	기숙사
변경	3	3-1	해남군 화원면 청용리 607번지 일원	20,115.6	감)497.2	19,618.4	공장 및 부대시설
기정	4	4-1	해남군 화원면 청용리 789번지 일원	4,047.1	-	4,047.1	완충녹지
기정		4-2	해남군 화원면 청용리 609번지 일원	3,198.8	-	3,198.8	조성녹지
기정	5	5-1	해남군 화원면 청용리 609번지 일원	5,335.4	-	5,335.4	주유소
변경 (신설)		5-2	해남군 화원면 청용리 607번지 일원	-	증)741.5	741.5	경비실 및 체험·판매장

3-1 공장 및 부대시설 변경면적은 유통용지 변경을 반영한 면적임

3) 건축물에 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공공시설용지 : 변경

구분	가구 번호	획지 번호	구분	계 획 내 용
폐지	1	1-1	용 도	• 지정용도 : 공장 안내 및 경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150% 이하
			높 이	• 1층 이하
			배 치	• 지형 및 방문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동향 배치
			형 태	• 기능에 적합한 조형적 형태 권장
			색 채	• 구조색 : 주변 경관과 조화되는 색 선정(백색) • 부채색 : 구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 선정(청색)

○ 변경 사유서

-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건폐율·높이에 관한 사항을 폐지함

■ 주거용지 : 변경없음

구분	가구 번호	획지 번호	구분	계 획 내 용
기정	2	2-1	용 도	• 지정용도 : 공장 주거시설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150% 이하
			높 이	• 1층 이하
			배 치	• 주변시설과 유기적 관계를 감안한 남향 배치
			형 태	•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조형적 형태 권장
			색 채	• 주소색 : 주변 경관과 조화되는 색 선정(백색) • 부채색 : 주소색과 같은 계통의 색 선정(청색)

■ 공업용지 : 변경없음

구분	가구 번호	획지 번호	구분	계 획 내 용
기정	3	3-1	용 도	• 지정용도 : 공장 공업시설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150% 이하
			높 이	• 3층 이하
			배 치	• 주변시설과 유기적 관계를 감안한 동향 배치
			형 태	•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조형적 형태 권장
			색 채	• 주소색 : 주변 경관과 조화되는 색 선정(백색) • 부채색 : 주소색과 같은 계통의 색 선정(청색)

■ 유통용지 : 변경

구분	가구 번호	획지 번호	구분	계 획 내 용
기정	5	5-1	용 도	• 지정용도 : 주유소 및 부대시설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150% 이하
			높 이	-
			배 치	• 주변시설과 유기적 관계를 감안한 동향 배치
			형 태	•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조형적 형태 권장
			색 채	• 주소색 : 주변 경관과 조화되는 색 선정(백색) • 부채색 : 주소색과 같은 계통의 색 선정(청색, 녹색)

구분	가구 번호	획지 번호	구분	계 획 내 용
변경 (신설)	5	5-2	용 도	• 불허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제6호, 제8호, 제9호, 제12호, 제16호, 제21호, 제23호, 제26호, 제28호, 제29호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150% 이하
			높 이	• 2층 이하
			배 치	• 방문객 편의 도모 및 유기적 관계를 감안한 동향 배치
			형 태	•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조형적 형태 권장
			색 채	• 구조색 : 주변 경관과 조화되는 색 선정(백색) • 부채색 : 구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 선정(청색, 녹색)

마. 군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1) 교통시설

■도로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1	7	국지도 로	45	면도 10호선	김치공장 구역 내	일반 도로	-	2019. 10.31	진입 도로

2. 해남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별첨1)

3. 해남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고시도(별첨2)

무안군 고시 제2021-145호

무안 군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무안 군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전라남도 고시 제2021-333(2021.07.22.)호로 결정(변경)되었기에,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 8. 5.

무안군수

1. 무안 군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결정(변경) 조서 : 다음
2. 무안 군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지형도면고시도(1/5,000) : 게재 생략
3. 관계도서는 무안군청 지역개발과(061-450-5767)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1. 무안 군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485,153,836	-	485,153,836	100.00		
도시지역	31,069,640	-	31,069,640	6.40		
주거 지역	소 계	7,485,492	-	7,485,492	1.54	
	제1종전용주거지역	164,269	-	164,269	0.03	
	제2종전용주거지역	85,833	-	85,833	0.02	
	제1종일반주거지역	2,819,656	-	2,819,656	0.58	
	제2종일반주거지역	1,925,514	-	1,925,514	0.40	
	제3종일반주거지역	1,423,600	-	1,423,600	0.29	
	준주거지역	1,066,620	-	1,066,620	0.22	
상업 지역	소 계	1,042,947	-	1,042,947	0.22	
	중심상업지역	290,376	-	290,376	0.06	
	일반상업지역	752,571	-	752,571	0.16	
	근린상업지역	-	-	-		
	유통상업지역	-	-	-		
공업 지역	소 계	576,412	-	576,412	0.11	
	전용공업지역	-	-	-		
	일반공업지역	407,656	-	407,656	0.08	
	준공업지역	168,756	-	168,756	0.03	
녹지 지역	소 계	21,964,789	-	21,964,789	4.53	
	보전녹지지역	245,410	-	245,410	0.05	
	생산녹지지역	2,412,282	-	2,412,282	0.50	
	자연녹지지역	19,307,097	-	19,307,097	3.98	
관리 지역	소 계	174,301,501	증 1,701,612	176,003,113	36.28	154개소
	보전관리지역	48,304,464	증 105,495	48,409,959	9.98	10개소
	생산관리지역	36,516,742	증 1,422,687	37,939,429	7.82	52개소
	계획관리지역	89,480,295	증 173,430	89,653,725	18.48	92개소
농림지역	196,711,090	감 1,701,612	195,009,478	40.20		
자연환경보전지역	83,071,605	-	83,071,605	17.12		

※ 기정면적은 2025 무안 군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무안군 고시 제2018-177호)에 전라남도 고시 제 2020-312호(2020.06.30.), 무안군 고시 제2021-111호(2021.06.10.) 반영 기준

○ 용도지역 변경사유서

① 농림지역 → 계획관리지역

블록 번호	위 치	변경 내역		면 적 (㎡)	용적률 (%)	변경 사유
		기 정	변 경			
무안05	무안읍 고절리 515-1번지 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 지역	2,668	100% 이하	○취락지구내 위치한 1만㎡ 미만의 소규모 토지인 경우로 주변 용도지역 및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계획관리지 역으로 변경
일로03	일로읍 의산리 620-1번지 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 지역	1,172	100% 이하	○취락지구내 위치한 1만㎡ 미만의 소규모 토지인 경우로 주변 용도지역 및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계획관리지 역으로 변경
일로06	일로읍 죽산리 914-1번지 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 지역	2,672	100% 이하	○취락지구내 위치한 1만㎡ 미만의 소규모 토지인 경우로 주변 용도지역 및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계획관리지 역으로 변경
일로08	일로읍 의산리 280-1번지 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 지역	6,077	100% 이하	○취락지구내 위치한 1만㎡ 미만의 소규모 토지인 경우로 주변 용도지역 및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계획관리지 역으로 변경
일로09	일로읍 산장리 58-1번지 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 지역	666	100% 이하	○취락지구내 위치한 1만㎡ 미만의 소규모 토지인 경우로 주변 용도지역 및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계획관리지 역으로 변경
일로13	일로읍 광암리 612-7번지 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 지역	321	100% 이하	○취락지구내 위치한 1만㎡ 미만의 소규모 토지인 경우로 주변 용도지역 및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계획관리지 역으로 변경
일로15	일로읍 상신거리 470-1번지 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 지역	600	100% 이하	○취락지구내 위치한 1만㎡ 미만의 소규모 토지인 경우로 주변 용도지역 및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계획관리지 역으로 변경
일로16	일로읍 상신거리 400-1번지 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 지역	750	100% 이하	○취락지구내 위치한 1만㎡ 미만의 소규모 토지인 경우로 주변 용도지역 및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계획관리지 역으로 변경
삼향01	삼향읍 지산리 1029-10번지 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 지역	3,167	100% 이하	○취락지구내 위치한 1만㎡ 미만의 소규모 토지인 경우로 주변 용도지역 및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계획관리지 역으로 변경
삼향02	삼향읍 지산리 859-13번지 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 지역	5,408	100% 이하	○취락지구내 위치한 1만㎡ 미만의 소규모 토지인 경우로 주변 용도지역 및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계획관리지 역으로 변경
삼향05	삼향읍 유교리 1055-1번지 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 지역	499	100% 이하	○취락지구내 위치한 1만㎡ 미만의 소규모 토지인 경우로 주변 용도지역 및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계획관리지 역으로 변경
삼향06	삼향읍 임상리 794-46번지 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 지역	291	100% 이하	○취락지구내 위치한 1만㎡ 미만의 소규모 토지인 경우로 주변 용도지역 및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계획관리지 역으로 변경
삼향07	삼향읍 임상리 867-1번지 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 지역	1,379	100% 이하	○취락지구내 위치한 1만㎡ 미만의 소규모 토지인 경우로 주변 용도지역 및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계획관리지 역으로 변경

블록 번호	위 치	변경 내역		면 적 (㎡)	용적률 (%)	변경 사유
		기 정	변 경			
삼항08	삼항읍 용포리 651-2번지 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 지역	441	100% 이하	○취락지구내 위치한 1만㎡ 미만의 소규모 토지인 경우로 주변 용도지역 및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계획관리지 역으로 변경
삼항12	삼항읍 맥포리 199-54번지 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 지역	2,573	100% 이하	○취락지구내 위치한 1만㎡ 미만의 소규모 토지인 경우로 주변 용도지역 및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계획관리지 역으로 변경
몽탄05	몽탄면 사천리 838-2번지 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 지역	211	100% 이하	○취락지구내 위치한 1만㎡ 미만의 소규모 토지인 경우로 주변 용도지역 및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계획관리지 역으로 변경
몽탄07	몽탄면 이산리 79번지 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 지역	4,583	100% 이하	○취락지구내 위치한 1만㎡ 미만의 소규모 토지인 경우로 주변 용도지역 및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계획관리지 역으로 변경
몽탄11	몽탄면 명산리 417-6번지 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 지역	48	100% 이하	○취락지구내 위치한 1만㎡ 미만의 소규모 토지인 경우로 주변 용도지역 및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계획관리지 역으로 변경
몽탄15	몽탄면 양장리 768번지 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 지역	3,203	100% 이하	○취락지구내 위치한 1만㎡ 미만의 소규모 토지인 경우로 주변 용도지역 및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계획관리지 역으로 변경
청계01	청계면 서호리 592-2번지 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 지역	813	100% 이하	○취락지구내 위치한 1만㎡ 미만의 소규모 토지인 경우로 주변 용도지역 및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계획관리지 역으로 변경
청계03	청계면 태봉리 532-1번지 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 지역	818	100% 이하	○취락지구내 위치한 1만㎡ 미만의 소규모 토지인 경우로 주변 용도지역 및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계획관리지 역으로 변경
청계04	청계면 태봉리 222번지 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 지역	3,879	100% 이하	○취락지구내 위치한 1만㎡ 미만의 소규모 토지인 경우로 주변 용도지역 및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계획관리지 역으로 변경
청계06	청계면 도대리 211번지 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 지역	245	100% 이하	○취락지구내 위치한 1만㎡ 미만의 소규모 토지인 경우로 주변 용도지역 및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계획관리지 역으로 변경
청계07	청계면 강정리 205번지 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 지역	666	100% 이하	○취락지구내 위치한 1만㎡ 미만의 소규모 토지인 경우로 주변 용도지역 및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계획관리지 역으로 변경
청계08	청계면 강정리 279번지 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 지역	328	100% 이하	○취락지구내 위치한 1만㎡ 미만의 소규모 토지인 경우로 주변 용도지역 및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계획관리지 역으로 변경
청계15	청계면 청계리 824-4번지 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 지역	8,967	100% 이하	○취락지구내 위치한 1만㎡ 미만의 소규모 토지인 경우로 주변 용도지역 및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계획관리지 역으로 변경

블록 번호	위 치	변경 내역		면 적 (㎡)	용적률 (%)	변경 사유
		기 정	변 경			
청계17	청계면 월선리 695-2번지 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 지역	10,646	100% 이하	○취락지구내 위치한 1만㎡ 이상의 대규모 토지인 경우로 토지적성평가결과 및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계획관리 지역으로 변경
청계19	청계면 도대리 284-1번지 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 지역	864	100% 이하	○취락지구내 위치한 1만㎡ 미만의 소규모 토지인 경우로 주변 용도지역 및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계획관리지 역으로 변경
현경02	현경면 마산리 535번지 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 지역	1,291	100% 이하	○취락지구내 위치한 1만㎡ 미만의 소규모 토지인 경우로 주변 용도지역 및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계획관리지 역으로 변경
현경03	현경면 오류리 905-6번지 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 지역	2,391	100% 이하	○취락지구내 위치한 1만㎡ 미만의 소규모 토지인 경우로 주변 용도지역 및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계획관리지 역으로 변경
현경04	현경면 오류리 908-4번지 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 지역	24	100% 이하	○취락지구내 위치한 1만㎡ 미만의 소규모 토지인 경우로 주변 용도지역 및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계획관리지 역으로 변경
현경06	현경면 오류리 916-28번지 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 지역	94	100% 이하	○취락지구내 위치한 1만㎡ 미만의 소규모 토지인 경우로 주변 용도지역 및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계획관리지 역으로 변경
현경08	현경면 마산리 206-27번지 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 지역	260	100% 이하	○취락지구내 위치한 1만㎡ 미만의 소규모 토지인 경우로 주변 용도지역 및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계획관리지 역으로 변경
현경09	현경면 마산리 206-26번지 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 지역	328	100% 이하	○취락지구내 위치한 1만㎡ 미만의 소규모 토지인 경우로 주변 용도지역 및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계획관리지 역으로 변경
현경10	현경면 오류리 1305-1번지 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 지역	1,108	100% 이하	○취락지구내 위치한 1만㎡ 미만의 소규모 토지인 경우로 주변 용도지역 및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계획관리지 역으로 변경
현경11	현경면 수양리 513-3번지 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 지역	2,400	100% 이하	○취락지구내 위치한 1만㎡ 미만의 소규모 토지인 경우로 주변 용도지역 및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계획관리지 역으로 변경
현경12	현경면 수양리 510-8번지 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 지역	1,351	100% 이하	○취락지구내 위치한 1만㎡ 미만의 소규모 토지인 경우로 주변 용도지역 및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계획관리지 역으로 변경
현경13	현경면 수양리 158-8번지 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 지역	619	100% 이하	○취락지구내 위치한 1만㎡ 미만의 소규모 토지인 경우로 주변 용도지역 및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계획관리지 역으로 변경
현경14	현경면 수양리 100-5번지 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 지역	1,604	100% 이하	○취락지구내 위치한 1만㎡ 미만의 소규모 토지인 경우로 주변 용도지역 및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계획관리지 역으로 변경

블록 번호	위 치	변경 내역		면 적 (㎡)	용적률 (%)	변경 사유
		기 정	변 경			
현경15	현경면 수왕리 121-1번지 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 지역	1,505	100% 이하	○취락지구내 위치한 1만㎡ 미만의 소규모 토지인 경우로 주변 용도지역 및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계획관리지 역으로 변경
현경16	현경면 수왕리 663-20번지 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 지역	1,841	100% 이하	○취락지구내 위치한 1만㎡ 미만의 소규모 토지인 경우로 주변 용도지역 및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계획관리지 역으로 변경
현경17	현경면 수왕리 801-2번지 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 지역	2,119	100% 이하	○취락지구내 위치한 1만㎡ 미만의 소규모 토지인 경우로 주변 용도지역 및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계획관리지 역으로 변경
현경18	현경면 송정리 172번지 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 지역	155	100% 이하	○취락지구내 위치한 1만㎡ 미만의 소규모 토지인 경우로 주변 용도지역 및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계획관리지 역으로 변경
현경19	현경면 송정리 212-5번지 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 지역	622	100% 이하	○취락지구내 위치한 1만㎡ 미만의 소규모 토지인 경우로 주변 용도지역 및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계획관리지 역으로 변경
현경23	현경면 평산리 902번지 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 지역	320	100% 이하	○취락지구내 위치한 1만㎡ 미만의 소규모 토지인 경우로 주변 용도지역 및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계획관리지 역으로 변경
현경24	현경면 평산리 911-5번지 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 지역	1,104	100% 이하	○취락지구내 위치한 1만㎡ 미만의 소규모 토지인 경우로 주변 용도지역 및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계획관리지 역으로 변경
현경25	현경면 평산리 822-20번지 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 지역	842	100% 이하	○취락지구내 위치한 1만㎡ 미만의 소규모 토지인 경우로 주변 용도지역 및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계획관리지 역으로 변경
현경30	현경면 현화리 943-18번지 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 지역	438	100% 이하	○취락지구내 위치한 1만㎡ 미만의 소규모 토지인 경우로 주변 용도지역 및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계획관리지 역으로 변경
현경31	현경면 현화리 480-2번지 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 지역	45	100% 이하	○취락지구내 위치한 1만㎡ 미만의 소규모 토지인 경우로 주변 용도지역 및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계획관리지 역으로 변경
현경32	현경면 현화리 208번지 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 지역	443	100% 이하	○취락지구내 위치한 1만㎡ 미만의 소규모 토지인 경우로 주변 용도지역 및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계획관리지 역으로 변경
망운01	망운면 목서리 397-5번지 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 지역	2,746	100% 이하	○취락지구내 위치한 1만㎡ 미만의 소규모 토지인 경우로 주변 용도지역 및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계획관리지 역으로 변경
망운06	망운면 목서리 716-28번지 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 지역	436	100% 이하	○취락지구내 위치한 1만㎡ 미만의 소규모 토지인 경우로 주변 용도지역 및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계획관리지 역으로 변경

블록 번호	위 치	변경 내역		면 적 (㎡)	용적률 (%)	변경 사유
		기 정	변 경			
해제02	해제면 학송리 193-3번지 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 지역	39	100% 이하	○취락지구내 위치한 1만㎡ 미만의 소규모 토지인 경우로 주변 용도지역 및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계획관리지 역으로 변경
해제03	해제면 학송리 186번지 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 지역	66	100% 이하	○취락지구내 위치한 1만㎡ 미만의 소규모 토지인 경우로 주변 용도지역 및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계획관리지 역으로 변경
해제04	해제면 학송리 181-2번지 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 지역	726	100% 이하	○취락지구내 위치한 1만㎡ 미만의 소규모 토지인 경우로 주변 용도지역 및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계획관리지 역으로 변경
해제05	해제면 학송리 178번지 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 지역	4,315	100% 이하	○취락지구내 위치한 1만㎡ 미만의 소규모 토지인 경우로 주변 용도지역 및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계획관리지 역으로 변경
해제06	해제면 학송리 227-3번지 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 지역	373	100% 이하	○취락지구내 위치한 1만㎡ 미만의 소규모 토지인 경우로 주변 용도지역 및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계획관리지 역으로 변경
해제07	해제면 학송리 509-1번지 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 지역	1,765	100% 이하	○취락지구내 위치한 1만㎡ 미만의 소규모 토지인 경우로 주변 용도지역 및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계획관리지 역으로 변경
해제08	해제면 학송리 487-2번지 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 지역	12	100% 이하	○취락지구내 위치한 1만㎡ 미만의 소규모 토지인 경우로 주변 용도지역 및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계획관리지 역으로 변경
해제09	해제면 석룡리 422-1번지 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 지역	462	100% 이하	○취락지구내 위치한 1만㎡ 미만의 소규모 토지인 경우로 주변 용도지역 및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계획관리지 역으로 변경
해제11	해제면 석룡리 162-1번지 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 지역	679	100% 이하	○취락지구내 위치한 1만㎡ 미만의 소규모 토지인 경우로 주변 용도지역 및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계획관리지 역으로 변경
해제12	해제면 신장리 1150번지 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 지역	1,284	100% 이하	○취락지구내 위치한 1만㎡ 미만의 소규모 토지인 경우로 주변 용도지역 및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계획관리지 역으로 변경
해제14	해제면 신장리 963번지 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 지역	1,014	100% 이하	○취락지구내 위치한 1만㎡ 미만의 소규모 토지인 경우로 주변 용도지역 및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계획관리지 역으로 변경
해제15	해제면 광산리 81-13번지 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 지역	286	100% 이하	○취락지구내 위치한 1만㎡ 미만의 소규모 토지인 경우로 주변 용도지역 및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계획관리지 역으로 변경
해제17	해제면 광산리 244-1번지 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 지역	495	100% 이하	○취락지구내 위치한 1만㎡ 미만의 소규모 토지인 경우로 주변 용도지역 및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계획관리지 역으로 변경

블록 번호	위 치	변경 내역		면 적 (㎡)	용적률 (%)	변경 사유
		기 정	변 경			
해제20	해제면 산길리 708-1번지 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 지역	4,323	100% 이하	○취락지구내 위치한 1만㎡ 미만의 소규모 토지인 경우로 주변 용도지역 및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해제21	해제면 산길리 308번지 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 지역	4,832	100% 이하	○취락지구내 위치한 1만㎡ 미만의 소규모 토지인 경우로 주변 용도지역 및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해제23	해제면 천장리 661-7번지 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 지역	1,483	100% 이하	○취락지구내 위치한 1만㎡ 미만의 소규모 토지인 경우로 주변 용도지역 및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해제24	해제면 산길리 17-3번지 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 지역	5,997	100% 이하	○취락지구내 위치한 1만㎡ 미만의 소규모 토지인 경우로 주변 용도지역 및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해제25	해제면 천장리 649-23번지 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 지역	2,256	100% 이하	○취락지구내 위치한 1만㎡ 미만의 소규모 토지인 경우로 주변 용도지역 및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해제27	해제면 천장리 517-1번지 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 지역	2,088	100% 이하	○취락지구내 위치한 1만㎡ 미만의 소규모 토지인 경우로 주변 용도지역 및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해제29	해제면 창매리 74번지 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 지역	6,669	100% 이하	○취락지구내 위치한 1만㎡ 미만의 소규모 토지인 경우로 주변 용도지역 및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해제30	해제면 양매리 400번지 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 지역	6,975	100% 이하	○취락지구내 위치한 1만㎡ 미만의 소규모 토지인 경우로 주변 용도지역 및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해제31	해제면 용학리 356-10번지 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 지역	1,309	100% 이하	○취락지구내 위치한 1만㎡ 미만의 소규모 토지인 경우로 주변 용도지역 및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해제32	해제면 용학리 397-3번지 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 지역	1,594	100% 이하	○취락지구내 위치한 1만㎡ 미만의 소규모 토지인 경우로 주변 용도지역 및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해제33	해제면 용학리 200-20번지 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 지역	66	100% 이하	○취락지구내 위치한 1만㎡ 미만의 소규모 토지인 경우로 주변 용도지역 및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해제34	해제면 용학리 37-1번지 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 지역	211	100% 이하	○취락지구내 위치한 1만㎡ 미만의 소규모 토지인 경우로 주변 용도지역 및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해제35	해제면 유월리 35-6번지 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 지역	277	100% 이하	○취락지구내 위치한 1만㎡ 미만의 소규모 토지인 경우로 주변 용도지역 및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해제36	해제면 유월리 45번지 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 지역	218	100% 이하	○취락지구내 위치한 1만㎡ 미만의 소규모 토지인 경우로 주변 용도지역 및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블록 번호	위 치	변경 내역		면 적 (㎡)	용적률 (%)	변경 사유
		기 정	변 경			
해제38	해제면 유월리 20-3번지 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 지역	1,900	100% 이하	○취락지구내 위치한 1만㎡ 미만의 소규모 토지인 경우로 주변 용도지역 및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계획관리지 역으로 변경
해제41	해제면 덕산리 390번지 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 지역	1,234	100% 이하	○취락지구내 위치한 1만㎡ 미만의 소규모 토지인 경우로 주변 용도지역 및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계획관리지 역으로 변경
해제 42-1	해제면 유월리 2-3번지 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 지역	3,348	100% 이하	○취락지구내 위치한 1만㎡ 미만의 소규모 토지인 경우로 주변 용도지역 및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계획관리지 역으로 변경
운남02	운남면 내리 341-6번지 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 지역	229	100% 이하	○취락지구내 위치한 1만㎡ 미만의 소규모 토지인 경우로 주변 용도지역 및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계획관리지 역으로 변경
운남04	운남면 성내리 675번지 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 지역	477	100% 이하	○취락지구내 위치한 1만㎡ 미만의 소규모 토지인 경우로 주변 용도지역 및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계획관리지 역으로 변경
운남05	운남면 연리 419번지 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 지역	184	100% 이하	○취락지구내 위치한 1만㎡ 미만의 소규모 토지인 경우로 주변 용도지역 및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계획관리지 역으로 변경
일로02	일로읍 의산리 732-6번지 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 지역	61	100% 이하	○취락지구내 위치한 1만㎡ 미만의 소규모 토지인 경우로 주변 용도지역 및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계획관리지 역으로 변경
일로10	일로읍 복룡리 422-56번지 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 지역	1,594	100% 이하	○1만㎡ 미만의 소규모 토지인 경우로 주변 용도지역 및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일로12	일로읍 상신기리 143-2번지 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 지역	6	100% 이하	○취락지구내 위치한 1만㎡ 미만의 소규모 토지인 경우로 주변 용도지역 및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계획관리지 역으로 변경
몽탄06	몽탄면 이산리 270번지 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 지역	16	100% 이하	○취락지구내 위치한 1만㎡ 미만의 소규모 토지인 경우로 주변 용도지역 및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계획관리지 역으로 변경
망운05	망운면 피서리 28-2번지 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 지역	26,278	100% 이하	○1만㎡ 이상의 대규모 토지인 경우로 토지적성평가결과 및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망운07	망운면 피서리 1045번지 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 지역	60	100% 이하	○1만㎡ 미만의 소규모 토지인 경우로 주변 용도지역 및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해제28	해제면 창매리 344-29번지 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 지역	188	100% 이하	○1만㎡ 미만의 소규모 토지인 경우로 주변 용도지역 및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② 농림지역 → 생산관리지역

블록 번호	위 치	변경 내역		면 적 (㎡)	용적률 (%)	변경 사유
		기 정	변 경			
무인01	무안을 고절리 1012-4번지 일원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39,753	80% 이하	○1만㎡ 이상의 대규모 토지인 경우로 토지적성평가결과 및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
무인02	무안을 교촌리 752-4번지 일원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18,891	80% 이하	○1만㎡ 이상의 대규모 토지인 경우로 토지적성평가결과 및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
무인04	무안을 성암리 76-2번지 일원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29,103	80% 이하	○1만㎡ 이상의 대규모 토지인 경우로 토지적성평가결과 및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
일로01	일로읍 지장리 763-2번지 일원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31,649	80% 이하	○1만㎡ 이상의 대규모 토지인 경우로 토지적성평가결과 및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
일로04	일로읍 구정리 305번지 일원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30,492	80% 이하	○1만㎡ 이상의 대규모 토지인 경우로 토지적성평가결과 및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
일로07	일로읍 망월리 2-8번지 일원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21,014	80% 이하	○1만㎡ 이상의 대규모 토지인 경우로 토지적성평가결과 및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
일로14	일로읍 상산기리 79-2번지 일원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27,720	80% 이하	○1만㎡ 이상의 대규모 토지인 경우로 토지적성평가결과 및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
일로17	일로읍 죽산리 569-1번지 일원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1,881	80% 이하	○1만㎡ 미만의 소규모 토지인 경우로 인접 용도지역 및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
삼향09	삼향읍 맥포리 1408번지 일원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25,250	80% 이하	○1만㎡ 이상의 대규모 토지인 경우로 토지적성평가결과 및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
삼향10	삼향읍 맥포리 1349번지 일원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13,156	80% 이하	○1만㎡ 이상의 대규모 토지인 경우로 토지적성평가결과 및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
삼향11	삼향읍 맥포리 1339번지 일원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21,640	80% 이하	○1만㎡ 이상의 대규모 토지인 경우로 토지적성평가결과 및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
삼향13	삼향읍 옹포리 709번지 일원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24,114	80% 이하	○1만㎡ 이상의 대규모 토지인 경우로 토지적성평가결과 및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
몽탄01	몽탄면 학산리 661번지 일원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6,906	80% 이하	○1만㎡ 미만의 소규모 토지인 경우로 인접 용도지역 및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
몽탄03	몽탄면 내리 464번지 일원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35,797	80% 이하	○1만㎡ 이상의 대규모 토지인 경우로 토지적성평가결과 및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
몽탄08	몽탄면 약곡리 535-7번지 일원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20,973	80% 이하	○1만㎡ 이상의 대규모 토지인 경우로 토지적성평가결과 및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
몽탄09	몽탄면 약곡리 533-3번지 일원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20,146	80% 이하	○1만㎡ 이상의 대규모 토지인 경우로 토지적성평가결과 및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
몽탄10	몽탄면 명산리 715-11번지 일원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31,103	80% 이하	○1만㎡ 이상의 대규모 토지인 경우로 토지적성평가결과 및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
몽탄13	몽탄면 사천리 322-3번지 일원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26,136	80% 이하	○1만㎡ 이상의 대규모 토지인 경우로 토지적성평가결과 및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

블록 번호	위 치	변경 내역		면 적 (㎡)	용적률 (%)	변경 사유
		기 정	변 경			
청계05	청계면 도대리 334-6번지 일원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478	80% 이하	○1만㎡ 미만의 소규모 토지인 경우로 인접 용도지역 및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
청계09	청계면 복룡리 591번지 일원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51,820	80% 이하	○1만㎡ 이상의 대규모 토지인 경우로 토지적성평가결과 및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
청계11	청계면 상마리 568번지 일원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35,743	80% 이하	○1만㎡ 이상의 대규모 토지인 경우로 토지적성평가결과 및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
청계12	청계면 남성리 640-4번지 일원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104,376	80% 이하	○1만㎡ 이상의 대규모 토지인 경우로 토지적성평가결과 및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
청계13	청계면 남성리 369번지 일원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33,267	80% 이하	○1만㎡ 이상의 대규모 토지인 경우로 토지적성평가결과 및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
청계14	청계면 복길리 288번지 일원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135,812	80% 이하	○1만㎡ 이상의 대규모 토지인 경우로 토지적성평가결과 및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
청계 15-1	청계면 청계리 656번지 일원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11,314	80% 이하	○1만㎡ 이상의 대규모 토지인 경우로 토지적성평가결과 및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
청계16	청계면 청계리 319번지 일원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75,052	80% 이하	○1만㎡ 이상의 대규모 토지인 경우로 토지적성평가결과 및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
청계18	청계면 월선리 203-6번지 일원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64,047	80% 이하	○1만㎡ 이상의 대규모 토지인 경우로 토지적성평가결과 및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
청계20	청계면 도대리 765번지 일원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16,915	80% 이하	○1만㎡ 이상의 대규모 토지인 경우로 토지적성평가결과 및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
청계21	청계면 송현리 120-39번지 일원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46,086	80% 이하	○1만㎡ 이상의 대규모 토지인 경우로 토지적성평가결과 및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
청계22	청계면 남성리 644번지 일원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85,385	80% 이하	○1만㎡ 이상의 대규모 토지인 경우로 토지적성평가결과 및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
현경01	현경면 기입리 산46-10번지 일원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160	80% 이하	○1만㎡ 미만의 소규모 토지인 경우로 인접 용도지역 및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
현경07	현경면 오류리 782번지 일원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3,769	80% 이하	○1만㎡ 미만의 소규모 토지인 경우로 인접 용도지역 및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
현경20	현경면 외반리 616-112번지 일원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1,577	80% 이하	○1만㎡ 미만의 소규모 토지인 경우로 인접 용도지역 및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
현경21	현경면 외반리 586-4번지 일원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882	80% 이하	○1만㎡ 미만의 소규모 토지인 경우로 인접 용도지역 및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
현경22	현경면 외반리 585-1번지 일원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1,324	80% 이하	○1만㎡ 미만의 소규모 토지인 경우로 인접 용도지역 및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
현경26	현경면 양하리 1087번지 일원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25,799	80% 이하	○1만㎡ 이상의 대규모 토지인 경우로 토지적성평가결과 및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

블록 번호	위 치	변경 내역		면 적 (㎡)	용적률 (%)	변경 사유
		기 정	변 경			
현경27	현경면 평산리 401-20번지 일원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3,345	80% 이하	○1만㎡ 미만의 소규모 토지인 경우로 인접 용도지역 및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
현경28	현경면 평산리 505번지 일원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7,210	80% 이하	○1만㎡ 미만의 소규모 토지인 경우로 인접 용도지역 및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
현경29	현경면 현화리 1012번지 일원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10,876	80% 이하	○1만㎡ 이상의 대규모 토지인 경우로 토지적성평가결과 및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
현경33	현경면 해운리 1153-4번지 일원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40,425	80% 이하	○1만㎡ 이상의 대규모 토지인 경우로 토지적성평가결과 및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
현경34	현경면 해운리 433번지 일원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11,929	80% 이하	○1만㎡ 이상의 대규모 토지인 경우로 토지적성평가결과 및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
망운02	망운면 목서리 340-1번지 일원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2,026	80% 이하	○1만㎡ 미만의 소규모 토지인 경우로 인접 용도지역 및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
망운03	망운면 목서리 377번지 일원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20,549	80% 이하	○1만㎡ 이상의 대규모 토지인 경우로 토지적성평가결과 및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
망운04	망운면 목서리 928번지 일원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62,477	80% 이하	○1만㎡ 이상의 대규모 토지인 경우로 토지적성평가결과 및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
해제13	해제면 신정리 829번지 일원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647	80% 이하	○1만㎡ 미만의 소규모 토지인 경우로 인접 용도지역 및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
해제26	해제면 천장리 70번지 일원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480	80% 이하	○1만㎡ 미만의 소규모 토지인 경우로 인접 용도지역 및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
해제39	해제면 만풍리 201-9번지 일원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19,367	80% 이하	○1만㎡ 이상의 대규모 토지인 경우로 토지적성평가결과 및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
해제40	해제면 학승리 172번지 일원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9,536	80% 이하	○1만㎡ 미만의 소규모 토지인 경우로 인접 용도지역 및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
해제42	해제면 유월리 12-2번지 일원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12,647	80% 이하	○1만㎡ 이상의 대규모 토지인 경우로 토지적성평가결과 및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
운남03	운남면 상내리 737번지 일원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25,665	80% 이하	○1만㎡ 이상의 대규모 토지인 경우로 토지적성평가결과 및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
운남06	운남면 연리 33-1번지 일원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20,753	80% 이하	○1만㎡ 이상의 대규모 토지인 경우로 토지적성평가결과 및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
운남07	운남면 동암리 377번지 일원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55,225	80% 이하	○1만㎡ 이상의 대규모 토지인 경우로 토지적성평가결과 및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

③ 농림지역 → 보전관리지역

블록 번호	위 치	변경 내역		면 적 (㎡)	용적률 (%)	변경 사유
		기 정	변 경			
일로05	일로읍 죽산리 1297번지 일원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687	80% 이하	○1만㎡ 미만의 소규모 토지인 경우로 인접 용도지역 및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
일로11	일로읍 복룡리 496-1번지 일원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94	80% 이하	○1만㎡ 미만의 소규모 토지인 경우로 인접 용도지역 및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
몽탄02	몽탄면 학산리 653번지 일원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1,371	80% 이하	○1만㎡ 미만의 소규모 토지인 경우로 인접 용도지역 및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
몽탄04	몽탄면 대치리 730-1번지 일원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527	80% 이하	○1만㎡ 미만의 소규모 토지인 경우로 인접 용도지역 및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
몽탄12	몽탄면 학산리 654번지 일원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1,466	80% 이하	○1만㎡ 미만의 소규모 토지인 경우로 인접 용도지역 및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
몽탄14	몽탄면 약곡리 628-14번지 일원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5,272	80% 이하	○1만㎡ 미만의 소규모 토지인 경우로 인접 용도지역 및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
해제01	해제면 대사리 산102번지 일원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615	80% 이하	○1만㎡ 미만의 소규모 토지인 경우로 인접 용도지역 및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
해제18	해제면 임수리 159-3번지 일원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3,281	80% 이하	○1만㎡ 미만의 소규모 토지인 경우로 인접 용도지역 및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
해제19	해제면 임수리 86-4번지 일원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91,663	80% 이하	○1만㎡ 이상의 대규모 토지인 경우로 토지이용 현황을 고려하여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
해제22	해제면 산길리 818번지 일원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519	80% 이하	○1만㎡ 미만의 소규모 토지인 경우로 인접 용도지역 및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

무안군 고시 제2021-147호

무안 군계획시설(근린광장)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무안 군계획시설(근린광장)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인가하고, 동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8. 5.

무안군수

1. 사업 시행지 :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2615-1번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군계획시설(근린광장)사업
 - 명칭 : 2021년 생태어린이 놀이터 조성사업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근린광장 2,768㎡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7조에 따른 군계획시설사업의 분할시행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무안군수
 - 주 소 : 전남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530(신도시사업소)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 예정일 : 실시계획 인가일 ~ 2021.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다음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 외의 권리		
						성명	주소	권리 구분	성명	주소
계				24,338.2	2,768					
1	삼향읍 남약리	2615-1	공	24,338.2	2,768	무안군	전남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530			

무안군 공고 제2021-788호

무안 군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무안군 청계면 서호리 836-1번지 일원 군계획시설(도로·주차장·오수처리장)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및 제90조,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주민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실시계획인가 사전 열람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8. 5.

무안군수

1. 사업시행지 : 무안군 청계면 서호리 836-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군 계획시설(도로·주차장·오수처리장)사업
 - 명 칭 : 무안CC리조트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반시설 조성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지구단위계획 구역 : 143,430㎡
 - 기반시설 면적 : 16,352㎡
 - 도로 13,776㎡, 주차장 1,888㎡, 오수처리장 688㎡
4. 사업시행자의 주소·성명
 - 주 소 : 전남 무안군 청계면 서호로 162
 - 성 명 : 남화산업(주) 대표이사 최 재 훈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년월일 : 실시계획인가일로 부터
 - 준공예정년월일 : 2023. 12. 31.
6. 관계도서 : 게재생략(열람장소에 비치)
7. 열람장소 : 무안군청 지역개발과
8. 열람기간 : 2021. 08. 5. ~ 2021. 08. 19.(14일간)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안군청 지역개발과 ☎ 061 - 450 - 5767)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순번	위치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지적면적	편입면적	기반시설		
1	청계면 서호리	934-2	잡	10,078.0	9,760.0	1,016.9	남화산업주식회사	
2	청계면 서호리	1001	천	60,110.0	260.0	193.8	국(농림축산식품부)	
3	청계면 서호리	934-3	잡	3,903.0	3,903.0	902.5	남화산업주식회사	
4	청계면 서호리	934-4	장	9,624.0	9,624.0		남화토건주식회사의 4인	
5	청계면 서호리	934-5	잡	1,519.0	1,157.0	60.6	남화토건주식회사	
6	청계면 서호리	934-7	잡	10,834.0	5,534.0	1,005.0	남화산업주식회사	
7	청계면 서호리	934-9	잡	181.0	8.0		무안군	
8	청계면 서호리	934-10	장	133.0	26.0		무안군	
9	청계면 서호리	934-13	잡	3,198.0	2,576.0	89.1	최상욱 외 3인	
10	청계면 서호리	934-14	잡	598.5	421.5		최상욱 외 3인	
11	청계면 서호리	934-15	잡	5,931.0	1,584.0	116.6	남화산업주식회사	
12	청계면 서호리	964	임	417.1	396.3		최상욱 외 3인	
13	청계면 서호리	834-6	임	9,025.0	8,868.0	598.9	남화산업주식회사	
14	청계면 서호리	834-4	임	5,268.0	4,949.0		남화산업주식회사	
15	청계면 서호리	834-3	임	7,274.0	7,110.0		남화산업주식회사	
16	청계면 서호리	836	답	535.0	535.0		최재훈	
17	청계면 서호리	836-7	임	18,053.0	18,053.0	368.7	남화토건주식회사	
18	청계면 서호리	836-1	전	11,892.3	11,553.3	2,322.2	최재훈	
19	청계면 서호리	836-4	잡	2,339.0	1,552.0	5.0	남화토건주식회사	
20	청계면 서호리	산136-2	임	1,298.0	1,298.0	281.0	남화산업주식회사	
21	청계면 서호리	836-5	임	11,567.0	11,567.0	1,189.6	남화개발주식회사	
22	청계면 서호리	836-6	임	8,928.4	8,770.4	3,445.1	남화개발주식회사	
23	청계면 서호리	산134-6	임	4,214.0	4,214.0	1,723.9	남화산업주식회사	
24	청계면 서호리	804-1	전	2,291.0	383.0		남화산업주식회사	
25	청계면 서호리	804-4	전	2,332.0	2,214.0	427.0	남화산업주식회사	
26	청계면 서호리	805-4	임	8,554.5	8,554.5	1,081.4	남화개발주식회사	
27	청계면 서호리	805-5	임	5,407.2	5,407.2	346.1	주식회사엔큐산업	
28	청계면 서호리	805-3	임	5,091.8	5,091.8		남화산업주식회사	
29	청계면 서호리	805-2	전	2,244.0	1,892.0		남화산업주식회사	
30	청계면 서호리	805	전	575.0	575.0		남화산업주식회사	
31	청계면 서호리	802-2	전	17,446.0	1,462.0		남화산업주식회사	

순번	위치	지번	지목	면적(m ²)			소유자	비고
				지적면적	편입면적	기반시설		
32	청계면 서호리	산134-1	임	12,418.0	3,481.0	1,178.6	남화산업주식회사	
33	청계면 서호리	837-12	전	1,745.0	650.0		남화산업주식회사	
총 33필지		합계		245,024.8	143,430.0	16,352.0		

함평군 공고 제2021-781호

함평 군계획시설(중로3-905호선)사업 실시계획인가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 청취 공고

전라남도 고시 제203호(1977. 1. 27.)에 의거 최초 결정 고시되고, 함평군 고시 제2019-97호 (2019. 7. 25)에 의거 변경결정된 함평군 군계획시설(도로: 중로3-905호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서류 열람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8. 5.

함평군수

-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함평군 함평읍 내교리 41-6번지 일원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함평 군계획시설(중로3-905호선)사업
 - 나. 명 칭 : 함평 내교지구 4단계 침수정비사업
- 3. 면적 또는 규모
 - 가. 규모

노 선 명	총연장	시 행	비 고
중로3-905호선	L=257m	L=152m	기 시행 L=105m

-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 함평군수
 - 나. 주 소 :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중앙길 200
-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가. 착 공 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나. 준공예정일 : 2022. 12. 31.
-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다음
- 7. 열람기간 및 장소
 - 가. 열람기간 : 2021. 8. 5. ~ 2021. 8. 16.(16일간)
 - 나. 열람장소 : 함평군청 미래전략실

- 다. 의견서 제출 : 열람 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
8. 관계도서는 함평군청 미래전략실(061-320-1588)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번호	읍면	리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합 계			21필지		14,112	1,797					
1	함평읍	내교리	41-2	도	549	90	함평군				
2	함평읍	내교리	41-4	종	7	7	함평군				
3	함평읍	내교리	41-6	답	228	228	함평군				
4	함평읍	내교리	42-10	도	7	7	함평군				
5	함평읍	내교리	43-20	종	26	26	함평군				
6	함평읍	내교리	43-21	대	216	216	함평군				
7	함평읍	내교리	43-22	대	7	7	함평군				
8	함평읍	내교리	43-23	대	1	1	함평군				
9	함평읍	내교리	43-24	대	205	205	함평군				
10	함평읍	내교리	43-25	대	7	7	김정*	함평군 영수길 6*-4*			
11	함평읍	내교리	43-26	도	57	57	함평군				
12	함평읍	내교리	43-28	대	199	199	함평군				
13	함평읍	내교리	43-29	답	497	497	함평군				
14	함평읍	내교리	45-11	대	7	7	함평군				
15	함평읍	내교리	45-2	도	139	20	함평군				
16	함평읍	내교리	575-4	답	94	94	강낙*	함평읍 서부길 4*-1*			
17	함평읍	내교리	575-5	답	1	1	강낙*	함평읍 서부길 4*-1*			
18	함평읍	내교리	575-6	답	13	13	강낙*	함평읍 서부길 4*-1*			
19	함평읍	내교리	576-1	전	106	10	함평군				
20	함평읍	내교리	804-12	도	9769	80	국(건설부)				
21	함평읍	내교리	813-4	구	1977	25	국(건설부)				

의 견 서

사업명	함평 내교지구 4단계 침수정비사업			
공람기간	공고제시일로부터 15일간			
대상 물건지	건물			
	토지			
의견 제출인	성명		주민등록 번호	-
	주소		전화번호	

(내 용)

영광군 고시 제2021-85호

**‘영광 이퍼스트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조성에 따른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녹사리 52-2번지 외 17필지 상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사항 등에 대하여 「주택법」 제19조제1항제5호 규정에 따라 의제 처리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군관리계획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21. 8. 5.

영광군수

1. 영광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 다음
2. 영광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등)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도면: 게재생략
3. 관계 도서는 영광군청 도시환경과(061-350-4764) 및 종합민원실(061-350-5475)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6	영광 녹사리 공동주택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녹사리 52-2번지 일원	-	증30,441	30,441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결정내용	비고
16	영광 녹사리 공동주택	· 신설 - 면적 : 30,441㎡	·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및 제19조 (다른법률에 의한 인허가등의 의제 등의 규정에 의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계획 적인 시가지 확산 및 도시관리를 유도하고 대상지의 미 관증진과 양호한 주거환경을 확보 하며, 공동주택건설규정에 의거하여 원활한 주택건설사업의 추진을 위해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지정 ·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도시계획시설과 지적 경계를 구역으로 설정하여 정형화

나.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 세분 및 변경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30,441	-	30,441	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	25,505	-	25,505	83.8	
자연녹지지역	4,936	-	4,936	16.2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도로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6	20	보조간선 도로	842	대로1-2	대로3-4	일반도로	전남고-21 (1992.3.5)	
변경	중로	1	6	20	보조간선 도로	842 (73)	대로1-2	대로3-4	일반도로	전남고-21 (1992.3.5)	

구분	구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1	20	10	국지 도로	225	대로3-4	소로1-44	일반도로	전남고-21 (1992.3.5)	
변경	소로	1	20	10	국지 도로	225 (31)	대로3-4	소로1-44	일반도로	전남고-21 (1992.3.5)	
기정	소로	1	34	10	국지 도로	91	소로1-44	소로2-76	일반도로	영광고-12 (2011.4.5)	
변경	소로	1	34	10	국지 도로	91 (32)	소로1-44	소로2-76	일반도로	영광고-12 (2011.4.5)	
기정	소로	1	44	10	국지 도로	113	소로1-34	중로2-8	일반도로	전남고-21 (1992.3.5)	
변경	소로	1	44	10	국지 도로	116 (3)	소로1-34	중로2-8	일반도로	전남고-21 (1992.3.5)	

※ 0는 사업대상지 내 연장임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중로 1-6	중로 1-6	·노선 폭원 확장 및 가각부 일부 변경 - 폭 : 20m → 23m, 증 3m - 연장 : 73m(부분)	·공동주택의 진·출입 확보 및 교차로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일부 구간 도로 폭원 확장 및 가속차로 확보
변경	소로 1-20	소로 1-20	·노선 폭원 확장 - 폭 : 10m → 13m, 증 3m - 연장 : 31m(부분)	·공동주택의 원활한 진·출입 확보를 위한 일부 구간 도로 폭원 확장
변경	소로 1-34	소로 1-34	·노선 폭원 확장 - 폭 : 10m → 13m, 증 3m - 연장 : 32m(부분)	·공동주택의 원활한 진·출입 확보를 위한 일부 구간 도로 폭원 확장
변경	소로 1-44	소로 1-44	·노선 확장 - 폭 : 10m - 연장 : 113m → 116m, 증 3m	·공동주택의 원활한 진·출입 확보를 위한 일부 구간 도로 확장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도면표시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비고	
			위치	면 적(㎡)			
				기정	변경		변경후
-	공동 1	20,831	영광군 영광읍 녹사리 52-2번지 일원	-	증 20,831	20,831	

4)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도면 표시 번호	가구 번호	구분	계 획 내 용	비고
-	공동1	용도	○ 허용용도 : 주택법에 의한 APT 및 부대 복리시설	
		건폐율	○ 30% 이하	법정 60% 이하
		용적률	○ 220% 이하	법정 250% 이하
		높 이	○ APT : 25층 이하	
		배 치	○ 주민 커뮤니티 공간 및 바람길 확보, 채광 고려 배치	
		형 태	○ 지붕(상층부) :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되도록 옥탑높이 및 지붕구조를 최소화 하여 모던하고 경제적인 디자인 계획 ○ 담장 : 가로경관 향상을 위하여 높이 1.2m 이하 생울타리 투시형 담장으로 지형에 따른 접근성이 용이하게 계획	

다. 영광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도면 : 별첨(생략)

신안군 고시 제2021-59호

신안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전라남도 고시 제2021-250호로 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인가 고시된 신안군 압해읍 송공리 875번지 일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용도지역을 결정(변경)하고 이에 따른 지형도면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신안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2021. 8. 5.

신안군수

1. 신안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조서 : 다음
2. 신안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면 : 게재 생략
3. 관계 도서는 신안군 경제에너지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안군청 경제에너지과(T.061-240-84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안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조서

1.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655,568,755	증)57,309	655,626,064	100.00	
도시지역	3,725,281	-	3,725,281	0.57	
주거지역	293,303	-	293,303	0.04	
제1종일반주거지역	109,121	-	109,121	0.02	
제2종일반주거지역	154,302	-	154,302	0.02	
제3종일반주거지역	-	-	-	-	
준주거지역	29,880	-	29,880	-	
상업지역	62,190	-	62,190	0.01	
일반상업지역	62,190	-	62,190	0.01	
근린상업지역	-	-	-	-	
공업지역	53,500	-	53,500	0.01	
일반공업지역	-	-	-	-	
준공업지역	53,500	-	53,500	0.01	
녹지지역	3,316,288	-	3,316,288	0.51	
보전녹지지역	139,700	-	139,700	0.02	
생산녹지지역	376,319	-	376,319	0.06	
자연녹지지역	2,800,269	-	2,800,269	0.43	
비도시지역	651,843,474	증)57,309	651,900,783	99.43	
관리지역	366,397,361	증)57,309	366,454,670	55.89	
보전관리지역	108,750,876	-	108,750,876	16.59	
생산관리지역	107,495,307	-	107,495,307	16.40	
계획관리지역	150,151,178	증)57,309	150,208,487	22.90	
농림지역	224,404,285	-	224,404,285	34.23	
자연환경보전지역	61,041,828	-	61,041,828	9.31	

주) 기정 : 신안군 고시 제2021-51호(2021. 07. 01.) 기준

○ 용도지역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 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	압해읍 송공리 875잡	-	계획관리지역	52,255.7	100	기타시설용지의 매립목적으로 준공된 공유수면에 대 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용도지역 부여
	압해읍 송공리 876도	-	계획관리지역	4,075.0	100	
	압해읍 송공리 877제	-	계획관리지역	978.3	100	